

그 성격은 매우 온후한데 무학무능하여 도박광이었다. 문과 등제 출신으로 가문과 순번에 의해 출세한 인물이다.

1885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주서(假注書)를 명받는 것을 시작으로 부수찬(副修撰), 병조좌랑친군전영군사마(兵曹佐郎親軍前營軍司馬), 양성현감(陽城), 용인현령, 부교리(副校理), 직각권(直閣圈), 병조정랑겸필선(兵曹正郎兼弼善), 응교(應敎), 대사성(大司成), 도정동부승지(都政同副承旨), 형조참의(刑曹參議), 우부승지(右副承旨), 공조참의, 호조참의(戶曹參議), 돈녕부도정(政敦寧府都正), 봉산군수, 병조참의(政兵曹參) 등을 순차로 역임하고 1895년 장단(長湍) 부사로 임명받았는데 사퇴하였다. 중추원의관에 임명된 후 관세사장(關稅司長), 전주관찰사, 시종(侍從), 봉상사장(奉常司長), 비서원승겸예, 평남평북 관찰사, 부참사, 평안북도 관찰사, 궁내부특진관, 법부협판(法部協辦) 등을 거쳐 1901년 군부협판에서 프랑스주차(駐箚) 특명전권공사에 임명되어 미국을 거쳐 근무지에 부임하였다.

1904년 일본주차특명전권공사로 전임되고 다음해 귀국 후 육군참령(陸軍參領)이 되어 일본국 훈3등 서보장을 수여받고 1906년 부령(副領)에 올랐다가 얼마 후 경상남도 관찰사, 비서감경, 평리원재판장이 되었다.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단행한 아래 덕수궁 경계에 불안을 느껴 이완용 씨와 친척관계라는 이유로 추천되어 승녕부 시종장(承寧府 侍從長)에 올라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승녕부시종장을 승녕부총관으로 이름을 고쳐 친임관(親任官)이 되어 궁내대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덕수궁 전반에 걸친 권리를 장악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완용 씨 자신이 덕수궁 일에 대해 직접 관여해야 했기 때문에 조민희를 공석에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10년 종1품에 승진하고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자산은 50, 60만 원이 있는데 도박으로 탕진하고 현재는 의식이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박현행법으로 여러 번 검거되었지만 귀족이라는 것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렸었는데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는 판아, 역소 등의 출근 중에도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밤을 새기도 한다고 한다. 이완용 씨의 부인으로부터 매월 50원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세간에는 한 사람도 동정하는 자가 없었다.

이왕부 무관, 종3위 훈1등 자작 이병무(李秉武) (본관 전주)

씨는 충청남도 공주군 출생으로 이조의 태조 이전에 분파된 실로 가난한 가문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반이라고 칭하였다. 세 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병량

(李秉兩)으로 이왕 전하의 시종이었는데 일찍 죽었고, 둘째가 이병무(李秉武)였다. 셋째는 원래 이왕부무관(李王附武官)으로 근무하고 만기 후에는 중좌(中佐)가 된 이병규(李秉規)이다. 이병규 씨가 일찍이 조선 무가의 양자가 된 인연으로 그 둘째 형인 이병무 씨도 크게 출세하였다. 즉 친동생의 가문의 힘을 빌려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84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8년에 참하선전관(參下宣傳官)에 임명되고 그 후 학련무공학원술(學鍊武公學院術: 무관학교로 미국식을 따랐음)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학교가 폐교하여 후에 친군통위영대장(親軍統衛營隊官)이 되었다. 1893년 훈련원주부(訓練院主簿)에 전임되어 참상선전관(參上宣傳官), 승전선전관(承傳宣傳官), 친군장위영우대부령관(親軍壯衛營右隊副領官)을 거쳐 1894년 한일양국의 국교수정 보빙(報聘)대사의화궁(大使義和宮)전하의 수행원으로서 도일하였다.

그 후 육군교도단(陸軍敎導團)에 들어가 견학하고 나중에 육군사관학교에 전교하여 이강공 전하와 병술훈련을 함께하였고 초급사관인 학술 초보를 위한 특별과정을 수학하여 1896년 귀국하자마자 군제개혁을 실시하여 육군보병대위(陸軍步兵大尉)에 올랐다. 그 후 육군무관이 되고 같은 해 육군보병참령(陸軍步兵參領)에 올랐다.

그 후 육군무관학교교두겸임(陸軍武官學校敎頭兼任)에 오르고, 북청(北青)지방대대장, 북청진위대대(鎮衛大隊) 대대장, 진위제오연대제이대대장(鎮衛第五聯隊第二大隊長)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였다. 1900년 10월 일본에 망명한 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아 파직당하고 2년 이상 감옥소에서 미결수로서 구금되었다가 1902년 1월 군산에 유배되었다. 1904년 2월에 유배가 해지되어 당시의 공사관부 무관 노즈(野津) 중좌의 알선으로 육군보병참령으로 복귀하였고, 육군무관학교교관, 군제의정관(軍制議定官), 육군보병부령, 육군무관학교교장, 유년학교교장(幼年學校校長) 등을 거쳐 육군보병정령(陸軍步兵正領)으로 승급하였다. 이상은 모두 노즈 중좌의 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본유학 출신이라는 특별대우 때문이라고 한다.

1906년 2월에 훈3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대사 완순군 이재완 씨를 수행하여 도일하여 일본국 훈2등 서보장을 수여받고, 귀국 후 1907년 이완용 내각을 조직하자 육군부장에 승진 입각하여 군부대신이 되고, 시종무관장을 겸임하여 군부협판 육군소장 이희斗(李熙斗)를 잡아들여 육군법원(육군감옥)에 투옥시켜 시종무관 육군정령 어담(魚潭)을 정직(停職)시켰다. 이 사람도 또한 육군법원에 투옥시켰는데 이 두 사람은 군대해산 후 당시의 군사령관장 하세카와(長谷川) 대장으로부터 군사령부군법회의의 판사를 파견하여 감시아래 재판을 진행하고 심사한 결과 무죄 방면(放免)이 되었다. 따라서 군부대신을 설득하여 두 사람 모두 복직되었다.

1906년 군대 해산에 대해 대신으로서 그 조치가 적절하지 못해 부하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즉 조선 전국의 모든 부대가 해산(궁성수비로서의 일개 대대, 의식용으로서의 기병 일개 중대를 제외하고)하게 되자, 군부대신으로서 하나의 입안도 내세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령관 관저(대관정)에서 각 대대의 대대장을 집합시켰을 때 여단장 양성환(梁性煥) 참장(參將)에게 비밀리에 말하기를 실로 군대해산은 본 대신은 모르는 일이며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하였다. 양성환은 이에 답하기를 해산 조칙(詔勅)은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 소관인가를 대신(大臣) 각하가 알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라도 폐하의 확실한 표(군을 지휘하는 데에 있어서 황제가 사용하는 신호)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말하기를 군사령부와 내각이 협의한 결과 각 부대의 군사교관은 모두 알고 있으며 충분한 준비가 있었다. 또한 이것은 송병준 대신이 주장한 것이며 또한 이 토 통감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각별히 주의하라고 하였다. 해산하도록 명받은 상황에서 군참모장(軍參謀長)의 재촉에 의해 칙서가 있었음을 훈시하고, 각 부대의 무장해제 및 훈련원의 연병장에 집합하라는 명령을 각 대장에게 하달하였다. 해산에 즈음해서는 장교, 하사, 졸병에 이르기까지 배상(賠償)이 하사될 것이라고 하며 집으로 귀가시켰다.

당시의 상황 또는 이것을 볼 때 해산 단행에 전 책임을 가진 군부대신이 그 부하를 회합한 석상에서 실은 본인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이 있는 자라면 그 심리를 알기가 어렵다.

조선인에게는 큰 비난을 받았지만 조정으로부터 정2품에 특훈을 받고 군법회의 판사장을 겸임하고 정1품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훈1등 육일대수장을 받았다. 그리고 조선의 대훈위이화대수장을 수여받고 후에 군부를 폐지하고 친위부라 개칭하여 시종무관장을 맡고 친위부장관을 겸임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고 이왕부무관(李王附武官)을 받아 현재 현역 중장이 되었다. 1920년 조선군인 대우개정 칙령에 의해 부장(副長)을 고쳐 중장(中將)으로 임명되었다. 자산은 30, 40만 원 내외라 한다.

종4위 자작 이근명(李根命) (본관 전의, 노론,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판서(判書) 효경공(孝敬公) 이시민(李時敏)의 아들이다. 성격이 온후하고 학문에 정진하며 선비의 지조를 지키는 명문의 후예로서 문과 진사급제

출신이다. 1897년 문과에 급제하여 다음해 한림(翰林)을 받고 통정(通政)에 의해 대사성 가선(嘉善)에 오르고, 이조참판, 의주부윤(義州府尹), 좌승선, 궁내부특진관(宮內府特進官), 춘천부관찰사, 평안남도 관찰사, 영선사장, 비서원경, 의정부찬정, 시종원경, 장례원 경 등을 거쳐 정현 품계(正憲階)에 올라 홍문관학사에 임명되었다. 1901년 태의원경이 되었다가 얼마 후에 경기도관찰사에 전임되어 1903년에 대광보국승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특진하였다.

나아가 의정부의정에 임명되고 태의원경 도제조를 겸임하였다. 당시 관제상 내각은 참정대신에게 맡겨졌다. 정치에 종사하면서도 황태자 전하(이왕 전하)는 결혼에 즈음하여 고전(古典)에서도 말하는 세 대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임시로 두 명의 대신을 보궐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래(在來)의 의정대신인 조병세 씨이며 또 보필자로서의 두 명은 이근명(李根命), 민영규(閔泳奎)였고 이들을 가례¹⁷⁾대신(嘉禮大臣)이라 칭하여 이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후에 영돈녕원주사(領敦寧院主事)에 임명되었고, 이왕 전하가 결혼한 후에 의정을 그만두었는데 1905년 을사늑약에 즈음하여 민영환 씨의 순직에 의해 이후 계속해서 당시의 내각에 찬성하는 자 모두를 탄핵하여 상소하여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조약이 무효라는 운동에 노력하였는데 이미 그 당시는 경성 치안이 하세카와(長谷川) 군사령관에게 위임된 후였으므로 군사령관은 치안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씨를 현병대에 불러들여 설교를 한 후 해산을 명하였다. 이에 따라 상소에 연명하는 다수의 민중도 이근명의 퇴직에 의해 무관장군의 통솔이라 하여 사분오열하였다. 그러나 잠시 소요를 일으킨 것으로 진압되었다.

후에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다음해 봉상사도제조(奉常司都提調)에 임명되고 또 한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에 전임되고, 1907년 대훈위에 오르고 이화대수장을 수여받았으며, 규장각 지후관(奎章閣 祇候官)에 임명되는 등 조선 원로의 대우를 허다히 받은 것은 재직 중 폭정을 휘두르지 않았고, 청렴한 선비로서 명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3년 자택에서 노령 81세에 달해 병으로 사망하였다. 자산은 원래 빈곤했는데 작위를 받은 후 하사금에 의해 그에 맞는 생활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곤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장손 이충세(李忠世)가 상속하고 작위를 세습했다.

17) 왕의 성혼이나 즉위, 세자·세손·태자·태손의 성혼이나 책봉 따위의 예식.

정4위 자작 민영규(閔泳奎) (본관 여흥(驪興), 노론,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贈)의정대신(議政大臣) 민경호(閔璟鎬) 씨의 아들이다. 성격이 온후하고 근면정직하며 학문에 힘쓰고 수련하는 선비로서 민씨 집안에서도 청렴 결백함으로 명성이 높지만 이것은 민영규 씨에 한해서이다. 그 인격과 가문의 내력에 의해 관력은 매우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의 관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로서 순서를 거쳐 지나가는 것이었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注書), 설서(說書), 전적(典籍)에서 병조정랑(兵曹正郎)이 되어 수찬(修撰), 문겸(文兼)을 거쳐 금위종사관(禁衛從事官)에 오르고 부응교(副應敎), 응교(應敎), 통정동부승지(通政同副承旨), 좌우부승지, 돈녕도정, 병조참지, 이조참의에 임명되었으며 가선(嘉善)에 오른 뒤 형조참판, 예조참판, 부총감(副總監)을 거쳐 경주부윤 시절 치적을 쌓아 영변 부사로 전임하였고 강화유수(江華留守), 협판내무부사를 거쳐 자현(資憲) 승서하고, 형조판서에 오른 후에 예조판서, 한성판윤, 관상감제조, 경기감사, 수원유수, 독판내무부사, 태의원경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였다. 1897년 궁내부대신에 영전하여 숭록(崇祿)에 오르고 다음해 규장각학사를 명받고 시종원경, 양지아문총재(量地衙門總裁),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중추원찬의 등을 거쳐 1906년 대광보국승록 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올라 의정대신에 임명받고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황태자 전하(창덕궁 이태왕 전하) 결혼식의 가례도감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를 명받았다. 1907년 영돈녕사사에 전임되고 대훈위이화대수장을 수여받고 규장각 지후관(祇侯官)을 명받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5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가계(家系)는 원래부터 빈곤했고 아들 민봉식(閔鳳植)이 상속, 습작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손자 민병삼(閔丙三)이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너무 방탕하여 지위를 보전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종4위 자작 민영소(閔泳韶) (본관 여흥, 노론, 사망)

씨는 충청남도 강경군(江景郡)에 태어났으며 평민의 집안이었다. 보국(輔國)¹⁸⁾ 민규호(閔奎鎬) 씨의 양자가 되어 이왕비 전하(앞의 민비)의 사촌에 해당하여 크게 출세하여

18) 조선 때 정1품하의 문무관 품계.

세력을 얻었다. 성품은 교만하며 명성과 이익을 탐내는 야심가였지만 내실이 없고 무학이었다.

1878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881년 규장각시교(奎章閣侍敎)를 명받았다. 시종, 홍문관 정자겸설서, 주서, 부교리, 부응교, 남학교수, 호조참의, 좌우부승지, 이조참의, 시강원겸 보덕, 돈녕도정, 병조참지, 춘천부사, 가선계(嘉善階), 예조참판, 이조참판, 홍문관부제학, 도승지, 우윤, 공조참판, 궁내부특진관, 호조참판, 직제학, 자현계(資憲階), 형조판서, 광주유수, 내무협판 등을 거쳐 1890년 정헌(正憲)에 오르고 이조판서, 지춘추전의제조, 지돈녕, 예조판서, 우참찬, 의금부, 독판내무부사, 병조판서, 홍문제학, 우부빈객(右副賓客) 등을 역임하고 1893년 숭정(崇正)에 특진하고 후에 공조판서를 지내고 경연원시강(經筵院侍講)이 되었다. 1894년 청일전쟁 후 재야에서 약 3년 정도 침거했다. 여기에 이르기 까지 관직경력 중 행정관으로서 밖으로는 인민의 피를 짜서 묘당(廟堂)을 세우고 안으로는 매관 매작하여 횡포가 심한 잡배였다.

1898년 다시 태의원경이 되고 정1품 보국승록(正一品 輔國崇祿)에 오르고 규장각학사(奎章閣學士) 겸 일강관(日講官)에 임명받았다. 1900년 양지아문총재(量地衙門總裁)가 되고 다음해 판돈녕이 되어 학부대신에 오르고 궁내대신에 전임하였다. 1904년 농상공부대신이 되고 얼마 후 중추원의장으로 옮겼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여전히 종래의 악습을 고치지 못하고 매관을 일삼았다. 1907년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이어서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규장각 지후관(祇侯官)을 임명받았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6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민충식(閔忠植)이 1917년 5월에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이 또한 방탕하여 자산을 거의 탕진했다고 한다.

정4위 자작 민영휘(閔泳徽) (본관 여흥, 노론)

씨는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태어났으며, 그 아버지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민두호(閔斗鎬) 씨가 대원(大院)왕비전하의 친형에 해당하는 민치록(閔致祿) 씨 조카의 양자라는 관계로 고(故) 이태왕 전하의 왕비인 명성 황후 집안이다.

크게 출세하여 세력을 떨치고 후에 전 민씨 집안 중에서 제일가는 세력을 가진 민비의 조카 민영익(閔泳翊) 씨가 상해로 전임된 것은 씨의 발호(跋扈)에 의한 폭정에 대한 불평을 논했기 때문이다. 당시는 민영준(閔泳駿)이라 칭하고 기략이 있고 문필에 뛰어났

으며 사람을 조종하는 수완이 있어 정권을 주무를 정도였으며 자신의 사유인 것처럼 흥포했다. 성격이 치밀하고 용의주도하며 임기응변에 능하고, 재화를 불리는 방법이 뛰어나 현재 조선의 제일가는 부호였다.

1877년 문과에 급제하여 겸열주서겸설서(檢閱注書兼說書), 정언(正言), 중학교수(中學教授), 수찬(修撰), 교리(敎理), 금위영종사관(禁衛營從事官), 사서(司書), 참의, 돈녕도정(敦寧都正), 이호형공조참의(吏戶刑工曹參議), 대사성, 영변부사(寧邊府使), 가선계, 이호형공조참판(吏工刑工曹參判), 돈녕부사, 한성부좌우윤, 예겸약원부제조(例兼藥院副提調), 주차일본판리대신(일본공사로서 동경에 주재함), 규장각직제학, 평안감사, 자헌계(資憲階), 예형공삼조판서, 홍문예문양관제학, 한성부판윤, 강화부유수, 친군경리사(親軍經理使), 독판내무부사(督辦內務府事), 이병공삼조겸판서,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연무공원변리(鍊武公院辦理), 시강원좌우부빈객(侍講院左右副賓客), 내각제학(內閣提學), 승문원제조(承文院提調), 총어영사(摠禦營使) 등을 역임했다. 이것은 1905년 청일전쟁 이전의 경력으로 대원군과 민비의 권력쟁탈의 중간에서 민비 전하의 참모로서 활동했다. 임오(1883년)변란 후 민비 복위 때에 그 계략을 세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즉 대원군을 중국에 구금시키고 이태왕 전하에게 모든 권한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공로라고 한다.

씨는 또한 당시 내한 중인 청군의 제독 우창징(吳長慶)의 시종관 위안 스카이(袁世凱)와 결탁하여 조선의 국권을 좌우했다. 청일전쟁 이전 씨의 전성시대는 실로 26개의 관직을 겸임하며 문무의 실권을 장악하여 왕위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1893년 동학도의 궐기에 의해 위안 스카이와 결탁하여 동학도 토벌이라는 명분으로 청나라 군사들을 불러들였는데, 섭사성(攝士成) 제독이 이끄는 청나라 군사들이 도한(渡韓)하여 아산에 주둔한 것도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 즉 청일전쟁의 원인도 이것 때문인 것이다. 청일전쟁 후 떠도는 말에 의하면 위안 스카이는 청군을 이끌고 동학도를 토벌하고 그 공을 내세워 자신이 조선의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고 이때 민영준(閔泳駿)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씨는 기회를 보아 관을 빠져나와 중국으로 탈주하려고 꾀하여 청국을 향해 밀행하던 중 평안도 안주(安州)에서 조선인에게 포로로 잡혀 평양에 주둔 중인 일본 군대장 사후쿠(佐福)에게 송환된다. 이때 평안도 감사는 민병석(閔丙奭)으로 민병석 씨의 도움으로 석방되고 민병석 씨와 함께 청국으로 탈주하려고 하였으나 평양도 일본군에게 점령되어 두 사람은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경성으로 호송되었다. 당시 조정은 민영준을 재판소에서 고문했지만 민비전하의 조언과 당시의 법무대신 장박(張博: 남작 장석주(張錫周))의 매수에 의해 법을 거슬러 형도 감하여 고군도(古羣島)에

유배되었다.

김홍집 내각 와해 후에는 다시 세상에 나와 중추원의장, 장례원경, 규장각학사, 겸임 시강원일강관, 태의원경, 육군부장, 헌병대사령관, 원수부군무국총장, 시종원경 겸임 내대신, 표훈원총재, 상방사제조, 규장각제학, 규장각지후관 등에 순차로 역임하고 훈1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태극장에 올라 정1품 보국승록대부가 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 즈음하여 민영환이 보호불가를 주장하여 상소하며 연명을 권유하자 자신은 타인과 연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하였다. 그 후 시국이 변화함에 따라 민씨의 자산은 모두 인민의 피라며 민중의 원성이 높아진 결과 자위책으로 50만 원을 출자하여 사립 휘문의숙(徽文義塾)을 세우고 스스로가 교장이 되어 교육에 종사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그 후 휘문학교의 기본금을 50만 원 증가하여 100만 원의 재단법인이 되고 현재 조선의 사립학교 중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장래는 대학을 경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한다.

왕실의 외척으로 금력이 있으며 지위를 얻은 재략이 있어 명성은 있었는데 크게 인심은 돌아와서 윤덕영(尹德榮), 이재곤(李載崑)과 연락하여 보종당 일파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현재 74세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은행을 세워 한일은행이라 칭하고 자신은 은행장이 되었다. 자산은 6,000만 원 이상으로 조선 제일의 부자이다.

종4위 자작 김성근(金聲根) (본관 안동, 노론,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판서 간송(澗松)의 둘째 아들로 호를 해사(海士)라 칭했다. 학자로 유명하며 조선의 명문 집안이다.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어 유생(儒生)들로부터 다소 중시를 받지 못했다. 1861년에 문과에 등제하여 다음해 한권(翰圈)에 오르고 1866년에 순무종사관(巡撫從事官)에 전임하고 통정계(通政階)에 특진하여 승정원우부승지, 성균관대사성, 승정원도승지, 홍문관부제학 등을 거쳐 가선계(嘉善階)에 올라 전라감사가 되었다. 정치 치업(治業)을 인정받아 이조참판에 오르고 후에 승정원도승지, 시강원보덕(侍講院輔德), 내무부협변, 규장각직제학, 자현에 올라 도승지를 겸직하고, 보덕 내무부독변(輔德內務部督辨), 약원제조(藥院提調), 이조판서 등을 거쳐 정현에 오르고 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때 궁녀와 관계를 맺어 첨으로 삼고 민비 전하의 심부름꾼으로 두어 내외의 연락을 담당케 했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의 빙축을 샀다. 이후 승정계(崇正

階)에 올랐다. 1897년 중추원 일등의관에 임명되어 궁내부특진관, 의정부찬정이 되고 승록계(崇祿階)에 올랐다.

이후 법규교정소의정관, 임시서리법부대신에 임명되고 홍문관학사, 장례원경, 규장각학사, 시강원 일강관등을 역임하고 1902년 임시서리궁내부대신사무, 궁내부특진관탁지부대신을 역임하였다. 1904년 의정부참정에 임명되고 기사(耆社)¹⁹⁾에 들어가 점차적으로 태의원경이 되고 1907년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정1품 보국승록대부에 오르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자작을 수여받았다.

1915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이 일찍 죽어 손자에게 자작을 세습하였다.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여서 자산은 첨의 횡포에 의해 가정 소란이 일어나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씨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출세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았고 자신의 길을 걸어 불교를 숭배하고 궁녀와 관계를 맺는 등 궁중의 신성함을 더럽혔다. 그 첨인 궁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종4위 남작 윤용구(尹用求) (본관 해평, 노론, 작위를 사양하여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남녕위(南寧尉)의 아들인 순조 숙황제(純祖 肅皇帝)의 외손에 해당하며 참판 김익현(金益鉉)의 사위이다. 성격은 온화하고 학문을 열심히 수행했으나 조금 완고했다. 가문은 현요(顯要)일 뿐만 아니라 수차례 요직의 명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세상의 평판은 매우 좋았다. 그러나 그 실력 여하는 의심스러워 단순하게 유학자로서 호탕하고 한가로이 구름과 새를 벗 삼아 일생을 한가로이 보내는 무위의 선비에 지나지 않았다.

항상 서책을 소지하였다. 1867년 15세에 돈녕부직장(敦寧府直長)을 명받고 다음해 문과에 급제하여 이래 규장각에 들어가 상대(常帶), 한림, 대교(待敎), 직각(直閣), 옥당(玉堂), 사인(舍人), 부제학, 직제학, 이조참의, 대사성, 도승지(都承旨) 등의 여러 관직을 거쳐 38세 때에 정경(正卿)에 오르고 예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는데 항상 병약하다며 명에 응하지 않고 은둔을 정했다. 마침 당시의 세상일에 여러 변란이 있기도 하여 일신의 위기를 고려하여 염세의 선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설도 사실에 가깝지 않다고 한다.

19) 조선시대의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기구.

1895년 법무대신에 오르고 다음해 탁지부대신을 명받고 그 후 여러 번 궁내대신의 친임을 명받았지만 그 직에 오르지 않고 두문불출(杜門不出)하여 손님을 사절하고 책과 그림, 가야금, 바둑 등의 오락으로 세월을 보내고 초연히 지내는 등 이채를 띠었고 실제로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아무런 경륜도 없는 무능한 선비였다고 한다.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스스로 완(頑) 씨라 칭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여 남작을 수여받지 않았다.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방탕하여 아버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윤덕영 자작과 근친관계로 보종당의 일파인 박영효와 가장 친한 친구로 교제했다.

정5위 남작 흥순형(洪淳馨) (본관 남양, 노론,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현종(憲宗) 대왕비 전하의 친동생이다. 고(故) 이준공은 그 사위에 해당한다. 명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은 매우 천박했고 무위무학(無爲無學)하고 주색에 탐닉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70세 이상인데도 칩이 8명이 있다고 한다.

그 성격이 방탕하여 금전에 욕심이 강하고 거액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익사업 혹은 자선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없는 사람들과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뿐더러 의협심이 있는 자를 반대로 조소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 친척 간에도 외톨이가 되었다.

가문 덕분에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한림, 대교, 직각(直閣), 옥당(玉堂), 부제학(副提學), 대사성(大司成), 좌우부승지, 이조참판, 예조참판, 형조참판, 예조판서, 병조판서, 공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송도유수(松都留守), 한성부판윤, 전라감사 등을 거쳐 궁내부특진관, 규장각제학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 수여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용구(尹用求) 씨의 거절에 의해 수여받지 못했다.

현재 동대문 바깥의 안암리(安岩里) 자택에서 하루 종일 주색에 빠져 지낸다. 그 가정은 매우 혼란스러워 칩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 자식 형제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방탕하여 그 많은 자산도 거의 탕진하여 장래의 생활도 곤란한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정5위 남작 김석진(金奭鎮) (본관 안동, 노론, 작위를 받지 않음, 자살)

씨는 경성 출생으로 할아버지는 순조대왕의 사위인 창녕위의 손자이다. 명문의 후예로 그 성품은 매우 완고하였다. 청년시대에는 학문과 덕을 구비했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출세 후에는 그 품행이 매우 부정하여 탐관오리라 불리기도 했다.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교리, 한림, 시교, 이조참의, 대사성승지, 참판, 유수, 감사 등을 거쳐 판서에 올랐는데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어 정계에 마음을 접고, 20년 전부터 관직을 사퇴하고 동대문 밖의 별장에 은거하며 두문불출하고 시와 술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을 예정이었는데 사양하고 작위를 받지 않았다. 망국을 매우 개탄하고 자살했다. 자산은 상당히 있었는데 그 아들 김영한(金榮漢)은 문학의 선비이며 매우 완고하다고 한다.

이왕직 찬시(贊侍), 정4위 훈2등 남작 한창수(韓昌洙) (본관 청주, 노론)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대제학 고(故) 한장석(韓章錫) 씨의 둘째 아들이다. 그 성품이 조용하며 학문을 좋아한 선비였다.

1888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 가주서에 임명되고 권지승문원부정자, 예문관검열가주사, 예조참의, 우부승지, 좌부승지, 한성재판소판사, 학부학무국장, 학부참서관, 한성사범학교장, 외국어학교교장 등을 거쳐 1898년 주차영국(駐箚英國), 독일, 이탈리아 공사관이등참서관에 임명되어 해외에서 지낸 것이 약 1년, 1899년에 외부참서관에 전임하고 같은 해 6월 주차영국, 독일, 이탈리아공사관 일등참서관겸임이 되어 다시 해외로 임명 받아 약 1년을 지냈다.

1900년 5월에 창원감리 겸 부윤에 오르고 창원항(昌原港)재판소판사를 겸임하고 1906년 1월에 보빙대사 완순군(報聘大使 完順君) 이재완 씨의 도일 당시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갔으며 같은 해 같은 달 의정부 외사국장에 오르고 훈3등 육일증수장(中綏章)을 수여받았다.

귀국 후에는 의정부참찬을 거쳐 이완용 내각에 들어가 내각서기관장에 올랐다. 1907년 일본황태자 전하(지금의 폐하)가 도한(渡韓)했을 때 봉영위원을 맡았고 같은 달 훈2등 서보장을 수여받았다. 같은 달 훈2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1910년 가타세(片瀬)에서 요양 중인 소네(曾彌) 자작의 위문특사로 칙명을 받아 일본에 갔다. 같은 해 8월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을 수여받고 총독부 중추원찬의가 되었는데, 1919년 윤덕영 자작을 대신하여 이왕직 장시사장으로 전임하여 1920년 훈2등 옥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현재 이왕직은 현직에 있다. 씨는 항상 편중되지 않고 당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윤덕영 자작 형제와 친척관계상 동일한 이념 아래에서 행동하였으나 이완용과는 인척 관계에 있어도 근래에는 소원해져 연락을 끊었다. 이전에 외국을 다녀서 견문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이 있어 교제 중 사람에게 접할 때 예의를 갖추었다. 조선 명문의 선비로서 일찍부터 외국통이라고 알려졌다. 자산은 50, 60만 원 이내라고 한다.

정4위 훈2등 남작 이근상(李根湘) (본관 전주, 노론, 무가,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고(故) 찬정(贊政) 이민승(李敏承) 씨의 사남이다. 즉 구한국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씨의 동생이다. 성격이 매우 민첩하며 어릴 때부터 권모술수에 능한데, 특히 관직을 얻으려는 술수에 능해 괴상한 수완을 가져 이조 말년에는 잡배라 불리기도 했다.

1892년 성균관진사에 올라 같은 해 일본어학교 속성과를 졸업하고 1894년 군부주사판 임관육 등에 임명되고 이후 궁내부참서관, 시종원시종, 포천군수, 옥과(玉果)군수, 임실군수, 궁내부비서관, 문서과장, 궁내부비서원(宮內府秘書院), 비서승(秘書丞), 중추원의관, 외부교섭국장, 법부법무국장, 박문원부장, 궁내부협판, 예식원부경 등에 순차로 역임하여 1904년 1월에 특명전권대사가 되어 이태리주차의 명을 받들어 부임하였다.

그 후 내장원감독예무원부장, 농상공부협판, 한미전기회사검찰장, 농상공부서리대신, 제실제도정리국평정관, 법부협판, 법관양성소장 등을 거쳐 1905년 3월 가의계(嘉義階)에 오르고, 특파일본대사 완순군 이재완의 수행원으로 명받아 일본에 건너갔다가 훈3등 팔괘장에 특진하고 4월 훈2등 서보장을 수여받고 귀국하여 시종원부경서리를 명받고 학부협판을 거쳐 중추원찬의에 오르고 9월 7일 정2품 자현계로 특별 승진하였다. 이것은 모두 일본공사관 일등서기관 하기하라(萩原) 씨와 궁내부의 고문관 가토 마시오(加藤增雄) 씨의 알선에 의해 출세한 것으로 일본어를 해독할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매개로 하여 궁중의 사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씨는 이것을 정보로 하여 형 이근택이 중간에 있어 세력 확대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

여 이태왕 전하의 총애를 받았다. 그리하여 예의원경에 오르고 제실제도국총재를 겸임 하며 1906년 훈2등 태극장을 받고 경상도 관찰사가 되지만 부임하지 않고 7월에 다시 궁내대신으로 명을 받게 되었다. 당시 통감부에서 궁중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태왕 전하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형 이근택은 엄비(嚴妃)와 결탁하여 이태왕 전하에게 전언하여 밀하기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궁내대신들의 무능함에서 온 것이라고 하며 이근상을 궁내대신으로 하면 통감부와의 교섭도 원만히 성립 될 것이며 그들의 요구도 철폐될 것이라고 하여 이근상은 궁내대신의 지위에 올랐다.

씨는 한편으로 통감부에 궁중의 사정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쌍방에게 쌍방의 형편에 맞는 감언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였다. 후에 박제순 내각 때에 이르러서는 이 일이 간파되어 중추원부의장에 전임되고 궁내부특진관, 수학원장이 되었다. 1907년 4월 훈1등 팔괘장에 오르고 임시서리시종원경 겸 내무대신에 오르고 얼마 후에 전임되었지만 이완용 내각이 조직될 때 중추원 부의장에 복직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게 되는데, 요컨대 구한국궁중정치시대에 정계에서 활약한 잡배로 유명한 것이 이근택, 이근상이다. 1920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이장훈(李長薰)이 작위를 세습하였지만 미성년자이다. 자산은 40, 50만 원 내외라 한다.

정4위 남작 조희연(趙羲淵) (본관 평양, 노론, 무가, 사망, 작위반납)

씨는 경기도 통진군(通津郡)에서 태어났으며 증(贈)좌참찬(左參贊) 조존혁(趙存赫)의 양자이다. 1874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1년 훈련 검정으로부터 기기국(機器局)위원으로 명받아 별군직(시종무관)에 임명되었다. 그 후 현감수사부사, 방어사, 병사 등을 거쳤지만 모두 명예직으로 아무런 실권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1886년 군수품무역을 담당하게 되어 상해(上海)에 건너갔다가 다음해 군기(軍器) 연구를 명받아 상해, 홍콩을 경유하여 돌아오는 길에 일본의 포병공창(砲兵工廠)을 시찰하였다. 그 후 청일 양쪽으로부터 군기를 구입하여 양국의 제도를 참작하여 조선의 무기인 제식을 제정하고 채용하였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씨가 이전에 외국교섭 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시 한국 조정의 원로대신들을 수행하여 일본공사관에 출입하고 오시마(大島) 공사와 회견하여 제반의 내치(內治)의 경장을 논의하는 데 참여하였다. 후에 대원군 섭정의 명을 받아

입각하게 되고 씨도 군국의 중추임무에 참여하였다. 이후 권영진(權灤鎮) 씨의 참모가 되어 크게 출세의 단서를 잡게 되는데 이때 이미 청국공사 위안 스카이(袁世凱)는 영국 공사의 보호를 얻어 인천에 탈주하였고 같은 해 8월 김홍집 씨 영의정에 임명되어 내각을 조직할 때 씨도 그 요직에 앉고 일본군의 요구에 의해 아산공격의 선두에 선다. 한국 조정(朝廷) 측에서 출병하여 일약 육군대장에 임명되어 군부대신서리를 겸하며 처음으로 조선 전국의 병권을 장악하게 된다.

일본군이 진격하여 평양으로 향할 때 일대대를 부산으로 보내어 일본군을 환영하는 책략을 취함과 동시에 일대대는 선봉으로 하여 노즈(野津) 군대의 선도에 서게 하고 동시에 민중을 위로하여 칙명을 받들고 일본군 위문대사로서 스스로 종군하였다.

1895년 2월 다시 칙명을 받들어 만주 각지에 일본군을 위문하고 돌아와 군부대신서리에서 군부대신으로 임명되었다. 재직 중 민비사건이 일어나자 당시의 훈련대 대대장 우범선(禹範善)과 이두황(李斗璜)을 주범이라고 하여 잡아들이려 하였으나 일본으로 망명했다. 이 미증유의 대사건의 책임을 부하인 대대장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가령 그 일이 당시 내각의 방침이라고는 하지만 명예롭지 못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후 러시아공사가 공공연하게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하여 위 아래 민심은 가장 흥-흉해지고 정국은 수습하기 힘든 상태에 빠졌다.

이때 충청남도 보은군에 은거 중인 어윤중(魚允中) 씨를 불러들여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에 임명하자 어윤중 씨는 상경하자마자 바로 민비 전하의 복위와 함께 국상의 칙명을 내려 전국 관민으로 하여금 국모장(國母葬)을 치르게 하고 군부대신 조희연을 사건 책임자로 하여 바로 파직시켰다. 후에 김홍집 총리대신의 알선에 의해 군부대신에 복직하고 왕궁수비를 엄밀히 했지만 러시아국 수병이 인천에 상륙하여 바로 입경하자 이태왕 전하는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김홍집 내각은 와해하여 위기에 몰렸는데 목숨을 걸고 일본 군수비대에게 투항하여 다행히도 목숨을 건져 일본에 망명했다. 1897년 구스노기 세고히코(楠瀨幸彦) 중장의 소개로 일본 내지의 군사상의 실습경학을 하여 북해도에 만유하며 10여 년간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였다. 1907년 시국의 변천에 따라 귀국하여 평리원(고등법원)에 자수하고 같은 해 9월 사건에 대해 면죄를 받아 10월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다.

1910년 표훈원총재가 되고 다음해에 훈1등에 오르는 특훈을 받고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고 총독부 중추원고문을 맡게 되었다. 자산은 10만 원 내외라고 하지만 각종 영리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하고 생활 곤란에 빠졌다고 한다. 191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일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미

성년자여서 생전에 자산을 텡진하고 작위는 반납했다.

군사령부소장(軍司令部附小將) 조성근(趙性根) 씨의 사촌에 해당하는 씨는 성품이 온화하고 군자다운 풍이 있었지만 약간 무능하여 과단성은 없었지만 사람을 포용하는 아량이 있었다. 항상 여러 방면에 대해 원만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찍이 신사상을 주입하여 국정의 쇄신을 꾀하는 데 뜻이 있는 한 사람이었다.

정5위 남작 박제빈(朴齊斌) (본관 반남, 소론,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소론(小論: 동인)파의 양반이다. 1874년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가주서에 보직하고 승정원주서, 홍문관 부수찬, 종친부정, 홍문관응교, 병조참의, 중추원검지, 공조참의, 승정원우부승지 등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894년 김홍집 내각 시대에 군무아문참의를 명받았지만 군무대신과 사이가 안 좋아 사임하고 1897년 다시 중추원의관을 맡았다. 그렇지만 몇 번이고 관직을 사임하다가 1899년 비서원승이 되어 후에 궁내부특진관에 오르고 봉상사제조, 장례원소경, 사직서제조, 영희전제조, 종묘서제조, 전라북도 순찰사 등을 거쳐 1905년 러일전쟁 중 러시아의 첨자라는 협의를 받아 평리원에 구금되었다. 그 후 전쟁이 종결되면서 풀려나 다음해 궁내부특진관을 명받았다. 1907년 이완용 내각 조직 후 이태왕 전하 양위에 즈음하여 조중옹 자작의 알선으로 승녕부 부총관이 되어 가의(嘉義)에 올랐다.

1909년 이토 공작 국장(國葬) 때 이태왕 전하의 칙서를 가지고 참석하기 위해 도일하였다. 다음해 정2품에 오르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그 후 총독부중추원고문, 경학원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1920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박서양(朴敘陽) 씨가 작위를 세습하였다. 박제빈 씨는 성격이 매우 편협하고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해하는 도량이 없고 사견을 주장하며 완고한 소인배일 뿐만 아니라 무학자였다. 자산은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종4위 남작 성기운(成岐運) (본관 창녕, 노론, 서인, 사망)

씨는 충청남도 공주군 출생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학문이 깊은 선비이다. 그 집안은 매우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청렴결백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또 중국어에 능통하여

그것을 크게 활용했다. 1880년 강과(講科)에 등제하여 가주서에 임명되고 승문원부정자를 거쳐 1884년 주진상무관으로 천진에 부임하여 1년 이상을 주재하였다. 그 동안에 청나라 언어를 연구하여 유창해졌다.

귀국 후에는 홍문관수선, 양성현감을 거쳐 형조참의, 내무부사, 좌우부승지, 한성부소윤, 영광군수를 역임했다. 1887년 인천부사 겸 감리에 오르고 전원국총판, 예조참의, 궁내부참의, 농상아문협판, 중추원의관 등을 거쳐 1896년 궁내부 회계원경이 되었다. 1900년 가의(嘉義)에 오르고 의정부참찬이 되었다. 이어서 주차일본특명전권공사가 되어 약 반년간 체재하고 귀국 후 궁내협판이 되었다. 1902년 정2품에 오르고 의정부찬정에 임명되었다. 철도원총재를 명받고 1904년 정현에 오르고 경상남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충청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지만 부임하지 않고 중추원찬의가 되었다.

경기도관찰사에 전임되고 1906년 평생의 친구인 박제순 내각에 들어가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고 훈2등에 특진하였다. 1907년 박제순 내각의 사직과 함께 사임하고 그 후 중추원부의장, 장례원경, 궁내부전형위원회(宮內府詮衡委員會)을 거쳐 훈1등 팔괘장에 특진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총독부 경학원 부제학에서 대제학으로 진급했지만 192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성주경(成周絅)이 자작을 세습하였으나 방탕하여 자산을 탕진하여 자산은 전혀 없다고 한다.

정4위 남작 김춘희(金春熙) (본관 경주, 소론, 동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고(故) 총리대신 김홍집 씨의 조카이다. 1884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을 거쳐 사간원정언, 홍문관부수선, 응교, 사복시정, 시강원문학, 이조정랑, 승정원동부승지, 내무부참의, 성균관대사성, 이조참의, 내무부협변, 시강원보덕, 이조참판, 승정원도승지를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가의에 올랐다.

1894년 황해도감사에 임명되었지만 사임하여 부임하지 않고 그해 7월에 병조참판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5월 학부협변을 임명받았지만 12월에 사직하였다. 이후 김홍집 씨의 조난 아래 자택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1907년 이태왕 전하가 양위하자 다시 기용되어 정2품에 오르고, 궁내부특진관을 명받고 후에 승녕시종장에 임명되었다. 1910년 훈2등 팔괘장을 수여받고 왕세자 전하의 위문사로 동경에 특파되었다.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고 총독부

의 중추원찬의를 임명받았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성격이 조용하고 단아하며 또한 문학을 좋아한 선비로 정치적 수완이 없었어도 관직에 재임 중 청렴결백하여 명성이 높았다. 아들 김교신(金敎莘)이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은 1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정5위 남작 조동희(趙同熙) (본관 양주, 노론, 서인, 예우정지 중)

씨는 경성에서 영의정 조동희(趙同熙) 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 가문은 고귀하지만 매우 무능하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주서를 명받고 규장각직각수권, 남학교수, 병조정랑, 훈국 종사관, 금위영종사관, 의정부검상, 사헌부집의, 응교, 사복시정, 예조참의, 좌우승지, 도승지, 참의군국사무, 성균관대사성, 참의내무부사, 형조참의, 한성부우윤, 예조참판, 호조참판, 중추부동지, 공조참판, 비서원경, 궁내부특진관, 장례원경, 의정부찬정, 경효전제조, 사직서제조, 원소도감제조 등을 차례로 역임하고 정2품 자현에 오르고 1905년 9월 농상공부대신에 임명되지만 취임하지 않았다. 다음해 의효전제조(懿孝殿提調)를 명받아 다시 궁내부특진관, 경효전조, 장례원경이 되었다. 1907년 정현대부로 특진되어 규장각에 임명되고 1909년 훈2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종1품 승정에 특진하였다. 1907년 이래의 출세는 이완용 씨와의 인척관계상 작위를 받은 것으로서 그 준비로서 명예진급을 해온 것이다.

1910년 기타 시라카와(北白川) 궁비(宮妃) 전하에게 왕비의 훈장을 증여할 때 특사로 도일하였다. 귀국 후 훈1등 팔괘장에 오르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현재는 자산을 탕진하였기 때문에 품위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우를 정지했다. 한 명의 무위무능한 자에 지나지 않는데 이 가문에서 이렇게 출세한 사람도 없었다. 최근에는 술과 시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낸다고 한다.

중추원 참의, 종4위 남작 박기양(朴箕陽) (본관 반남, 소론, 동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흔히 말하는 소론(동인)파의 명문 집안의 선비이다. 1883년

진사에 올라 1888년 문과에 급제하고 이래 설서, 한림옹교, 승지, 대사성, 이조참의, 형조 참판, 경기함경이도관찰사, 친위대대참령, 태의, 장예, 시종, 비서원경, 의정부찬정을 거쳐 정2품 자헌에 올랐다. 1910년 조중옹 자작의 알선으로 규장각제학에 임명되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씨는 청년시절에 매우 출세하였지만 주색을 좋아해 방탕한 생활을 보내어 일시적으로 명성을 날리지 못하고 잡배로 칭해지지만 민씨 집안과 인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평에 구애받지 않고 생활했다.

1905년 이지용 씨와 함께 궁내부파견 유학생으로서 도일하여 게이오대학에 입학하였다. 민비사변 이후 귀국하여 침거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시, 서적, 그림을 즐기면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상식이 없었고 말도 일반 백성을 대하듯 했다. 현재 생활은 곤란하지만 최근 경학원부제학에서 중추원 참의로 옮겼다고 한다.

정5위 남작 김사준(金思濬) (본관 연안, 노론, 서인, 사망, 작위를 잃음)

씨는 경기도 고양군에서 태어났다. 이강공비 전하의 친아버지이다. 1883년 진사에 급제하여 1893년 이강공 전하의 성혼에 즈음하여 의금부도사에 임명되고 인릉참봉, 고창 현감, 과천현감, 장단(長湍) 군수, 중추원의관, 법부사리국장, 내장원경, 의정부찬정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였다. 왕실의 외척임에도 크게 세력을 떨치지 못한 것은 이강공 전하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1905년 가의(嘉義)에 오르고 다음해 정2품에 특진하여 1907년 궁내부특진관을 명받고 규장각 지후관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1912년 한 사건으로 인해 정치범으로 몰려 형을 받고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아들 김택기(金宅基)는 현재 중추원총탁으로 재직 중이다. 어느 조선인의 풍설에 의하면 김사준의 씨 작위 박탈 사건은 근거 없는 풍설을 당시의 총독 데라우치가 특대사건인 것처럼 만들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도 한다. 소문 그대로를 적어 놓는다.

씨는 풍채가 매우 수려한 선비로 시문을 좋아했고 이에 능하였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고 자산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장석주(張錫周, 구명(舊名): 장박(張博)) (본관 인동, 평민, 사망)

씨는 함경북도 경성군(鏡城郡)에서 태어났으며, 그 조상이 분명하지 않아 가문을 이야 기할 수가 없다. 성격은 완강하며 한학에 대한 포부가 매우 컸다.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 난하였지만 학문을 좋아했고 기억력은 매우 좋았다. 특히 독서벽이 있어 수면시간 이외에는 손에서 서적이 떠나질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한학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고 여러 선비가 제자로 들어와 자연스럽게 스승이 되었다.

제자 중 김학우(金鶴羽)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당세의 신동이라고 불렸고 유명했다. 그는 17, 18세 때부터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돌며 그 나라의 국어에도 능통했고, 따라서 외국의 신사상을 받아들였다. 청일전쟁 이후 크게 활약하였다. 김학우는 민비의 총애를 받아 기기국(機器局) 주사(主事)가 되고 자주 어전(御前) 통역의 임무를 맡고 친임(親任)이 두터워지면서 출세하였다. 청일전쟁 이후 조선의 내정개혁에 참여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대원군과 여러 번의 충돌을 일으켰는데 굽히지 않고 소신을 관철하는 인물이었다. 후에 법무아문협판(法務衙門協辦)이 되고 알선 힘이 커지면서 자신의 스승인 장박(張博)을 추천하였다.

씨는 1892년 이태왕 전하의 초대를 받아 입경하고 다음해 통리아문 박문국에 들어가 『한성순보』의 주필이 된다. 이것은 김학우가 헌책(건의)하여 신설한 것으로 당시 이것을 월조평(月朝評)이라 칭하였으며 관보적(官報的) 순간신문(旬刊新聞)이었다.

당시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씨는 박문국(博文局) 고문이면서 『한성순보』 사장에 의해 1894년 박문사사(博文司事)에 오르고, 교섭아문주사(交涉衙門主事)를 명받아 박문국의 업무를 도맡게 되었다.

그 후 『만국정표』 편찬(각국의 통계표)을 명받아 법무아문참의(法務衙門參議), 형사국장을 역임하고 법부협판(法部協辦), 법부서리대신(法部署理大臣), 김학우 씨가 세상의 질투를 받아 자객에게 독살되자(범인 포박에 이르지 못한 것은 대원군의 소행이라고 한다) 김홍집 내각은 이상과 같은 관계에 의해 씨를 법부협판으로 임명하고 서리대신 사무를 명하였다. 그리고 1895년 1월 법부대신에 전임되었다. 말하자면 제자 김학우 씨의 추천에 의해 출세한 것이다.

김홍집 내각 와해의 정변에 즈음하여 유길준, 조희문(趙羲聞) 씨와 함께 일본에 망명 하여 동경에 머물던 중 우시코마구(牛込区)에 있는 신구서적을 보면서 크게 견문을 넓히고 사상도 해박해졌다. 1900년 10월 시운(時運)이 바뀌어 잠시 귀국하여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다. 3월에 정2품에 오르고 특진하여 1900년 제실회계감사원경을 명받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고 총독부중추원고문을 역임하였다. 1918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장인원(張寅源)²⁰⁾이 작위를 승계했으며, 그는 현재 총독부군수(總督府郡守)이다.

생전에 각종 사업에 실패하여 자산은 전무했다. 그러나 학식은 당세의 활자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응용력이 없어 무능에 가까워서 조선 고래의 양반을 질투하며 원수로 여길 정도였다.

중추원 참의, 종4위 훈2등 남작 민상호(閔商鎬) (본관 여흥, 노론)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찬정(贈贊政) 민치진(閔致眞) 씨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다고 일컬어졌다.

1882년 13세 때 영어학교 학생이 되어 미국에 유학하여 이후 6년간 문명적 교육을 받고 1893년 귀국하여 문과에 등제하였다. 1895년 궁내부참서관에 임명되어 제용원장(濟用院長)에 오르고 나아가 개국 제503회 기원경절사무장이 되었다. 종2품에 오르고 1896년 외부교섭국장에 전임하여 중추원 일등의관, 학부협판, 농상공부협판 등에 오르고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의 전권공사에 올랐으나 다음 해에 사직하였다.

그 후 귀국하여 중추원 의관에 임명되고 농상공부협판, 외부협판, 한성부판윤, 학무협판, 통신원총판, 예식원부장, 육군참장, 의정부참찬, 육군법원장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904년 대사 완순군(完順君)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훈2등 서보장을 수여받고 귀국하여 후에 의정부찬정에 올랐다. 통신원총판을 겸임하고 동년 통신기관의 설비에 공로를 인정받아 훈1등 팔괘장으로 특서되고 후에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고 강원도관찰사를 임명받았지만 부임하지 않고, 제도국총재, 경기도관찰사를 임명받았지만 곧 사임하고 궁내부특진관, 현병사령관, 규장각지후관, 수학원장을 거쳐 1910년 정2품에 오르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총독부중추원 참의를 명받아 현재 재직 중인 씨는 성품이 관용적이며 풍채도 수려하고 정당한 순서를 거쳐 학식이 없어도 영어에 능통하여 외국에 정통한 것으로 그 분야에서 관직을 거쳤다. 단순한 통신원 설비에 다소 공로가 있었고 관직 재직 중에 죄스러운 것은 없었다.

20) 원문의 遠은 源의 오기임.

정4위 훈1등 남작 조동윤(趙東潤) (본관 풍양,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 출생으로 보국증영의정(輔國贈領議政) 조영하(趙寧夏) 씨의 아들이다. 신정왕후(神禎王后)의 종손에 해당하며 성격이 온후하고 군자다운 풍이 있지만 일을 결정함에 있어 단행하는 용기가 결여되어 있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량은 있지만 선악을 취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신을 버려서라도 구제하려는 미덕이 있다. 청렴결백하고 명예에 욕심이 없는 귀공자이다.

1887년 문과에 급제하여 규장각시교를 명받고 주서, 홍문정자, 겸설서, 응교, 총어영군사마, 사복시정, 성균관사성, 통위영군사마, 시독관, 부호군, 성균관대사성, 공조참의, 형조참의, 검교사서, 교문관부제학, 돈녕부도정, 호조참의, 이조참의, 병조참판, 규장원서사장, 규장원직학사, 홍문관부시강, 참령, 부령참장, 군부협변, 궁내부특진관, 원수부군무국총장, 부장, 원수부검사국장, 의정부찬정, 원수부기록국총장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가의계에 올라 정2품으로 진급했다.

1893년 육군법원장을 명받고 다음으로 육군무관학교장, 배종무관장을 거쳐 1905년 4월 6일 정현계에 올랐다. 1905년 황태자 전하(지금의 상폐(上陸)²¹⁾)의 도선(渡鮮) 때에 환영접대(歡迎接待)위원을 명받아 일본국 훈1등 서보장을 수여받고 1906년 시종관무관장(侍從武官長)에 전임하고 1907년 2월에 궁내부특진관에 옮기고 같은 해 3월 시종관무관에 복귀하여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같은 해 5월 일본국 군사시찰의 명을 받아 도일하여 시찰 중 이완용 내각이 조직되어 시종무관장은 이병무(李秉武) 부장이 겸임하게 되었다.

배종무관장(陪從武官長)에 전임하고 이태왕 전하의 양위 후 영친왕 전하가 황태자에 책립할 때 동궁무관장이 된다. 전하를 배종하여 동경에 가고 훈1등 육일장(勳一等 旭日章)을 수여받았다.

전하를 모시고 동경에 거주하기를 3년,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고 병합 후에는 관제개혁으로 인해 동궁무관장(東宮武官長)을 폐지하게 되어 조선군사령부에 임명받았다. 이왕세자 전하의 시종으로 다시 동경에 부임하여 8년간을 거주하다가 1914년 귀국하여 군사령부에 재직했다. 192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아들 조중구(趙重九)가 작위를 이어받았지만 미성년자로서 현재 일본에 유학 중이다. 자산은 50, 60만 원 있는데 부채도 많아 가정의 생계가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 현재 위원

21) 히로히토(裕仁) 일본 국왕.

회를 구성하여 정리 중에 있다고 한다. 조씨의 출세는 그 가문과 인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권문세가에 의지하여 얻은 것은 아니었다. 매우 고결한 선비로 재임 중에 추호도 악덕은 없었다고 한다. 크게 덕망이 있어 고령으로 사망하자 사람들은 모두 애석해했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최석민(崔錫敏) (본관 경주, 종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무학이었지만 성격이 민첩하여 시세를 잘 타는 권문세가에 결탁하고 아부하여 잔꾀를 부려 파격적으로 출세하였다. 거동은 매우 경솔하여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공으로 돌렸다. 언동은 항상 온후하지 못하고 매우 험악하여 세인은 그를 두고 뒤에서 혐담하였으며 그 행위에 대해서도 시비를 논하고 별종 취급을 하였다. 각종 명사들의 집에 출입하며 갖은 중상을 자신을 위해 유리한쪽으로 해석하고 방법,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여 출세하기 이전까지는 몇 번이나 어려움에 부딪쳐 사람들이 기피하고 귀문(鬼門)이라 칭했다.

1894년 의정부주사를 시작으로 공적 생활을 시작했다. 내각주사, 평양부참서관, 통진군수, 법무참서관 등에 역임하고 1904년 홍원군수가 된다. 후에 시흥군수, 법부민사국장, 내부경무국장, 내부협판, 봉상사제조, 중추원찬의, 경기도관찰사, 경리원경, 내장원경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훈3등을 수여받고 1909년 궁내부전형위원회(宮內部詮衡委員)에 오르고 칙임일등(勅任一等)에 올랐다. 1910년 정2품에 특진하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 재직이라 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씨의 일생은 출세를 위해 동분서주하여 일이 많은 생애를 보냈다. 그리고 보전당에 아부하여 쇄국주의를 선전하고 또는 독립협회에 들어가 개혁주의를 그리고 궁중에 출입하는 신흥잡배들과 결탁하여 매관중개자가 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일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일삼았다.

이 집안 중에 무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세한 것은 실로 이러한 행동에 의한 것이다. 그가 권력가에 아부함에는 항상 여자문제와 연결되고 물질적 교섭이 유일한 수단이었다. 원래 조선에서 종인은 중국어 통역으로서 중국에 왕래하며 중국 물건(중국의 물품 즉 금, 은, 옥석 등의 장식품)을 구입하여 궁중에 헌상(獻上)하는 매매(賣買) 사업을 하며, 이 관습에 의해 부인들에게 중국의 진귀한 물건을 구해주기 위해 최씨를 신임하였기 때문이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최정원(崔正源)이 작위를 세습했고 자산은 50, 6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종4위 남작 한규설(韓圭禹) (본관 청주, 노론, 무가,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대장(大將) 한규직(韓圭稷) 씨의 동생으로 전군부대신(前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씨의 외숙(舅)에 해당한다. 무가(武家)의 명문 집안으로 그 성격은 침착하나 학식은 천박하여 명예와 이익을 좋아했다. 구한국시대 세력이 있었을 때에는 인민을 착취하였다.

1876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 방어사(防禦使), 병사(兵使), 병조참판(兵曹參判), 통제사(統制使), 전영사(前營使), 장위사(壯衛使), 포도대장(捕盜大將) 등에 역임하고 크게 권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 후 하루아침에 몰락하여 수년간 침거하였다. 원래 이때까지의 출세는 자신의 활동도 있었지만 대부분 형인 한규직(韓圭稷)의 도움에 의해서였다. 한규직은 처음에 대원군에게 대우를 받아 파격적으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민씨 집안과 상통해 민비의 참모가 되어 대원군을 배신했다. 민비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그리하여 임오(1882년)군란에는 대원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민비는 매우 이를 애석하게 생각하여 그 동생인 씨를 중용하여 한규직 씨에게 보은하려 하였다. 따라서 민비의 죽음 후에는 이태왕 전하의 신임을 깊이 얻어 씨가 대사로서 미국에 파견되고 유길준 씨와 동반하여 도미했다. 후에 유길준 씨가 김옥균, 박영효의 정변에 즈음해서 일본 유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변란에 연좌되어 투옥되었다. 유길준 씨는 옥중에서 그 당시의 기록으로서 일세의 눈과 귀를 울리는 대저서 『서유견문기』를 저술하였는데 한규설은 스스로 나서서 그 서문에 이름을 새겨 공포했다. 그리하여 실은 그 서문도 한규설의 이름을 가지고 유길준 씨의 대표작에 관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태왕 전하의 열람에 의해 유씨의 유익한 인물임을 알고 찬양하여 유씨 보석 후에는 자택에서 기거하며 선생으로 크게 우대했다.

유씨도 그 마음에 감복하여 1894년 청일전쟁 후에 김홍집 내각에서 한규설의 과거의 불법행위 문제를 열심히 변호하여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었다. 후에 1896년 궁내부특진관을 명받아 의정부찬정에 임명되고 정현에 올랐다. 경무대신(警務大臣), 법부대신(法務大臣), 군부대신(軍部大臣) 등을 거쳐 정1품에 오르고 1906년 참정대신(參政大臣)에 임명되고 내각을 조직하여 당시의 외부대신 즉 박제순 씨에 의해 한일 제일의 협약(보호

조약)을 체결하는 난국에 즈음하여 당시 박제순 씨, 이토 공작과 수차례 충돌하여 교섭을 이루었다. 마침내 그 의사 관찰을 위해 회의에서 내각대신들의 다수결에 의해 조약이 성립되었는데 한규설 씨는 바로 각 대신들을 파직하려고 진상하여 내각을 경질시키려 하였다가 오히려 한규설 씨가 파직되어 퇴거를 명받았다. 이때 크게 조선에 명성을 날리고 지금도 충열(忠烈) 인물로서 신용하는 자들이 많다. 후에 중추원고문관 궁내부특진관등을 임명받지만 사직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지만 이를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오로지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며 재산을 정리했다. 그 자산은 1,000만 엔 이상이라고 한다. 아들이 4명인데도 모두 방탕하다고 한다. 지난 만세소요 때 상해에서 다수의 금액을 몰래 유출했다는 풍설이 있는데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종4위 남작 유길준(俞吉濬) (본관 기계(杞溪), 노론, 서인, 사망,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태어났다. 명문의 후예로 성격은 관용적이며 근면하고 대나무 같은 선비로서 박학하여 일찍이 외국 문명에 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였다.

1880년 즉 23세 때에 외아문주사(外衙門主事)에 임명되어 동경에 유학하여 게이오의 숙(慶應義塾)에 들어가 1년 동안 연구한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워싱턴, 보스턴의 전문학교에 들어가 졸업한 후 유럽 각국을 순회하고 정치, 풍속 등을 시찰하고 표연(飄然)하여 귀국하였다(김옥균으로부터 명이 있었다고 한다). 때는 갑신정변 이후였고 민씨의 일파는 모두 요직에 있어 김옥균, 박영효 씨와 같은 사람의 이름은 입에도 올리지 못하고 다소 친일의 혐의가 있는 자는 모두 일망타진당할 운명에 놓인 상태였다. 몇 년간을 외유하였기 때문에 그리운 산하를 접하고 싶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관현의 물색에 의해 포도대장의 명에 의해 소환되었다. 씨는 그러한 소환에 수긍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부하자 포도대장은 왕명이라 하며 예를 중시하여 그 자택에 소환하여 그날 밤 씨의 목을 거두려고 하였다. 이때 다행히도 조병하(趙秉夏) 씨와 이교익(李喬翼) 씨 두 명이 이전부터 아는 사이라는 것으로 당시의 현관(顯官) 민웅식(閔應植) 씨에게 설명하여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석방되었다.

한규설 씨 가족에게 신세를 지기를 6개월 그 후 백록동(白鹿洞)에 옮겨 여기서 유치된 것이 6년, 씨는 이때에 벽지를 받아 서유견문기를 편찬하여 올분을 위로하였다고 한다.

당시 ‘후례자곤바니이노페이’라 칭하는 외국인 한 명이 있었는데, 한국 조정에 압박하

여 전기응용에 관한 권리를 영구히 14만 원에 매수하려고 교섭을 개시했었다. 당시 관리인 ‘폐인’의 교섭문서를 완전히 해독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유폐(幽閉) 중인 씨에게 잠시 이것을 번역하고 회답문서를 작성할 것을 명했지만 이때 씨는 국부의 장군이 한 명의 외국인의 손에 떠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하여 당시의 재상에게 상서 건백하여 그 불가를 논파하였다. 다행히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그 공로에 의해 1892년 11월 금지를 풀어주고 돌아가도록 했다. 이미 동학도의 난이 있어 국내 전체에 소요가 있어 외교는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1894년 7월 오지마(大島) 공사의 개혁안을 받아보고 이태왕 전하를 알현하여 정국 분규를 초래하고 결국 대원군 왕칙(王勅)에 의해 운현궁(雲峴宮)을 나와 입궐하여 이어서 신정부조직에 등용되었다. 가장 공로가 큰 자는 유길준 씨와 안동수(安同壽) 씨, 김가진(金嘉鎮) 씨라고 모두 추천하여 요직에 올랐다. 당시 유길준 씨는 정부 도헌(都憲, 내각서관장(內閣書官長))으로서 유력한 지위에 있었고 진언이 많아 채용되어 정무개혁을 꾀함과 동시에 국군기무처에도 군국의 대사를 토론하기도 하며 밖으로는 열국공사(列國公使)와의 접촉의 임무를 수행했다.

크게 명성을 날려 같은 해 대사 의화궁 전하(大使義和宮殿下) 일행과 함께 정부의 특파원으로서 일본에 건너갔다. 돌아온 후 이노우에(井上) 공사와 친선을 맺어 공사를 서로 의논하며 제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 내무대신 박영효 씨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자 씨는 이 대신으로 김홍집 내각에 입각하여 내무대신이 되었다. 단발령을 내리고 내정의 쇄신을 꾀하였지만 러시아국 공사 웨베르 씨가 암중비약(暗中飛躍)하여 점차 궁정에서 세력을 키워나가 내각 경질을 부분적으로 단행할 때 갑자기 민비사건이 일어나 김홍집 내각은 각료의 재조직형식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 후에 시국은 수습되었지만 시운이 변하여 1896년 2월에 이태왕 전하는 잡행하게 되었다.

이범진(李範晉) 등의 세력이 갑자기 부활하여 김홍집 내각을 와해시켰고 씨는 총리대신 김홍집 등과 잠시 경복궁에 내각을 옮겼으며 김홍집 일하 각 대신에게 명하여 칙명을 내어 김씨는 왕명이라며 사직하지 못한다고 하여 러시아공사관을 향하던 중 난을 만났다. 유씨는 경복궁에 머물며 황태후(홍 대비)를 옹호하여 칙명을 풀라하여 왕위를 폐하려고 계획하고 군대와 경찰을 단결하여 보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미 군부대신 및 경찰대신이 탈주하여 연락을 취할 수가 없어 보호 순사의 칼을 잡고 광화문에 가서 당시의 장위영(현재 조선병대(朝鮮兵隊)의 막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수비대를 차례로 베고 급히 탈출하여 밤에 인천에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일본 내지를 만유하며 항상 고국의 전도를 걱정하고 조선 내의 지사들과 일본유

학 출신자 등을 규합하여 내외 연대하여 조선의 혁명을 꾀하였지만 실패로 끝났고 오키나와에 침거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관학교 출신자의 연맹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여 수년에 이르고, 1907년 시운(時運)을 일신(一新)하여 귀국하여 유지들과 단결의 필요를 느껴 사민단(四民團)을 조직하고 지금의 흥사단(興士團) 이외에 세 개의 단체로 나누어 진 것도 이 때문이다. 아래로 씨는 직접 정치에 관계하지 않았다. 한성부민(漢城府民) 회장으로서 식산농림 경영개발에 힘을 쏟고 경제력을 착실히 쌓아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지만 데라우치 총독에게 건백하여 평민으로 여생을 살게 해 달라고 간언하여 총독이 이를 납득하여 받아들이고 관련 성(省)에 연락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위를 반납하게 했다.

씨는 두되가 냉정하고 명석하여 학은 일본학문, 한문, 양학에 정통했고 식견도 탁월하여 한번 단상에 올라가 그 포부를 말하면 증거와 해박, 논의의 투철이 뛰어나 웅변사변(雄辯四邊)을 방불케 했다. 한성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생은 중추원 참의 유성준(俞星濬) 씨로 아들은 총독부학무국종교과장 유만겸(俞萬兼) 씨이다. 1913년 한강 하반로진(河畔鷺津) 별장(지금은 조동윤 남작의 소유)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정5위 남작 남정철(南廷哲) (본관 선영(宣寧),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이조판서 남홍중(南弘重) 씨의 아들이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고 주서(注書), 교리(校理), 옥당참의(玉堂參議), 대교(待教), 대사성(大司成) 등을 거쳐 1885년 평안감사를 명받았다. 후에 승정원도승지, 병조참판, 호조참판, 이조참판, 외무부독판, 이조판서,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등을 거쳐 1897년 의정부참정, 내부대신(內部大臣) 현직(顯職)에 임명되었으며 군부대신을 겸직하였다. 1898년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으로 이동하였으며, 선집소당상(撰集所堂上)을 겸임하고 이후 홍문관 학사, 장례원경, 궁내부특진관, 시종원경, 경효전제조(景孝殿提調) 등을 역임하고 1907년 종1품에 오르고 1909년 홍문관학사에 보직되었다.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입사하여 한정국(韓政局)의 원로로서 중요한 인물이며 평화협회(平和協會)의 평의원이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씨는 문학의 선비로서 명성이 있었지만 근대 시국에 정통하지 않은 까닭에 다소 완고하다. 그 성격은 강직하여 금전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 191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

했다. 아들은 요절하여 지금은 손자 남장희(南章熙)가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資產)은 없고 빙궁하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건하(李乾夏) (본관 전주,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백작 이지용(李址鎔) 씨의 숙부이다. 1864년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배수되었다. 이후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김제군수(金提郡守), 사헌부당령(司憲府堂令), 통정(通政), 공조참의(工曹參議), 병조참의(兵曹參議), 승정원좌우부승지, 병조참의(兵曹參議), 성균관대사성, 형조참의, 이조참의, 성천부사(成川府使), 종정경(宗正卿), 예조참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使), 병조참판, 공조판서, 한성판윤, 지돈녕부사, 수판중추부사(守判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고, 1892년 청국에 사신으로 건너갔다가 다음해 4월 귀국하여 공조판서가 되었다. 이후 형조판서, 의정부좌우참찬, 공주관찰사, 중추원일등의관, 시종원경, 태의원경, 비서원경, 의정부찬정, 내부대신, 학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대신(臨時署理宮內府大臣), 군부대신임시서리사무(軍部大臣臨時署理事務), 장례원경 등을 거쳐 1899년 종1품에 오르고 내부대신에 올랐다.

사위 심상익(沈相益)의 간책으로 관찰사, 군수 등을 매관하는 행동을 하여 그 명성이 실추하자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후에 법규교정소의정관, 의정대신서리, 임시서리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혜민원총재, 양지아문총재, 판돈녕사(判敦寧事), 궁내부특진관, 시종원경 등을 역임하였고, 1905년 훈2등 팔괘장을 받았고 중추원 부의장이 되었다. 규장각학사, 시강원일강관 등을 거쳐 1907년 궁내부특진관에 복귀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품이 온순하였지만 무능했다. 그 가문은 높았고 관직은 영달(榮達)했지만 직권을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직위만 유지한 감이 있었다. 사람들은 선인(善人)이라고 칭했다. 191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아들은 일찍 몰락했고 지금의 손자 이완종(李完鍾)이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은 모두 탕진하여 그 품위를 보전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용태(李容泰) (본관 전주, 노론, 서인, 사망)

씨는 충청남도 정산군(定山郡)에서 태어났으며, 의정부찬정 이병로(李秉路) 씨의 아들

이다. 1882년 음사(蔭仕)로 동가(童家) 교관(敎官)에 특서되어 익위사좌시직(翊衛司左侍直)이 되고 1885년 문과에 급제하고 1887년 영국,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5개국 특명전권공사 참찬관(參贊官)이 되었다. 그리고 규장각직각 겸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에 임명되고 1899년 평리원재판장을 명받았다. 1901년 주차미국특명전권공사가 되고 나아가 주차일본국특명전권공사로 전임되었다. 1904년 내부대신으로 영임(榮任)되고 동년 흥문관학사, 궁내부대신서리, 호위대총관(扈衛隊總管), 육군부장 등을 거쳐 1905년 학부 대신서리가 되었고 후에 규장각학사 겸 시강원 일강관을 명받았다. 1906년 원수부찬모관(元帥府贊謀官)이 되었고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품은 온순하지만 매우 무능했다. 좋은 가문이었지만 지조가 결백하지 못했고 내부 대신 재직 중에는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1916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아들 이중환(李重桓)이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은 전무했고 회복 가능성은 없다.

정5위 남작 민영달(閔泳達) (본관 여흥, 노론, 서인,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민비의 재종질(再從姪)이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한림, 설서, 대교(待敎), 사성, 호조참의, 예조참의, 이조참의, 승정원좌우부승지, 병조참판, 이조참판, 공조참판, 예조참판, 전라감사, 함경감사, 공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거쳐 1894년 청일전쟁 때에 군국기무처 평의원이 되었고 동학도 토벌을 위해 당시 조정의 전권을 장악한 민영준(閔泳駿: 지금의 민영희(閔泳徽)) 씨가 청국에 구원을 요청할 당시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하여 민비의 노여움을 샀다. 그리하여 이 관계로 김홍집 내각에서 채용할 만한 인물이 되었다.

1896년 이후 의정부찬정, 학부대신, 규장각학사, 장례원경, 궁내부특진관 등을 임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사하였다. 후에 이왕비 전하게서 흥거(薨去)하시자 국장도감 당상(國葬都監堂上)에 제수되어 잠시 정계로 나왔었지만, 그 성격이 완고하여 민씨 집안 중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선비로 명성을 얻었고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동막리(東幕里)의 자택에서 침거하며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고 만년을 보내려 하였다. 1905년 제1차 한일협약(을사늑약) 때에 민영환 씨와 뜻을 함께 하여 항소를 이태왕 전하게 올리고 당시의 내각대신 등을 탄핵하려 했으나 방축명령을 받고 평리원에 자수하여 형을 기다리며 현병대에 구속된 적이 있었다.

1910년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지만 거절하였다. 그 아들은 동경 유학 중 동경대지진 때 사망했다. 서자 2명이 있는데 모두 방탕하다. 자산은 5, 6십 만 원 있다고 한다. 현재는 분쟁이 많아 가정사가 매우 큰 분란(紛亂) 중이라 하며 안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이왕직 장관, 종3위 훈1등 남작 민영기(閔泳綺) (본관 여흥, 노론)

씨는 경기도 여천군에서 태어났으며, 대제학 민준호(閔峻鎬) 씨의 아들(庶子)이다.

1880년 무과에 급제하고 1883년 전라도 운봉현(雲峰縣) 감창원부사(監昌原府使), 서산 군수(瑞山郡守) 등을 역임했고 1885년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침거했다.

탈상 후 1889년 남양부사(南陽府使)에 임명되었으며, 청주병사로 전근 후 정2품에 승 차하였으며, 1895년 칙령을 받고 신사유람단(이지용 백작 등과 동행, 40명 궁내부에서 파견한 유학생 중의 한 명)으로 일본에 건너갔다. 귀국 후 경무사가 되었고 이어서 육군 참장, 군부협판을 거쳐 1898년 육군부장에 특진하였고, 군부대신에 영전하였다. 그 영달은 당시 미국에서 서재필이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일으켜 여러 방면의 유지를 규합하여 내정개혁을 표방하고 요로에 있는 관리들을 탄핵하기 위해 종로에서 공개연설을 했는데, 그때 민영기(閔泳綺) 씨가 앞장서서 보부상을 동원하여 안팎으로 분주히 움직여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용단을 결행한 공로에 의한 것이었다. 1900년 안경수(安經壽)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를 명받게 되지만 여주의 고산에 돌아가 침거생활을 수년 동안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박제순 내각이 성립하자 다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에 배수되었으며, 재정시찰의 명을 받아 도일하였고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이것은 당시 탁지부 고문관(度支部顧問官) 메가타(目賀田) 남작의 알선에 의한 것이었다.

귀국 후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으며, 1907년 박제순 내각 총사직 당시에 재야로 물러났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창립과 동시에 부총재에 임명된 것은 이전에 군부 협판 시절 당시의 공사관부 무관 우사카와(宇佐川) 씨와 모종의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씨를 추천한 것이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1911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총재를 그만두고 중추원고문에 임명받았다. 1922년 이재극(李載克) 남작을 대신하여 이왕직 장관에 임명받았다.

성격이 포용력이 있고 기예(氣銳)가 있었지만 학식이 부족한 것이 유감스럽다. 이완용

후작과 가장 잘 지내는 사이였으며 민씨 집안 중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외척 이외에 당파에 편중되는 일 없이 공평하게 사무를 처리한다는 평을 받았다. 그 아들은 민건식(閔健植) 씨로 총독부 중추원 참의이다.

정5위 남작 이종건(李鍾健) (본관 전주, 노론, 무가(武家))

씨는 충청남도 공주군에서 태어났으며 훈련대장 이종원(李鐘遠) 씨의 양자이다. 성격은 강직하며 과단성이 있다. 사교술에 뛰어나고 처세의 변을 터득했다. 항상 권력가와 연락을 취하며 정변이 있을 때에도 막힘이 없이 순조롭게 통과했다.

1876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군직수사(軍職水使), 부사, 방어사, 영장병사(英將兵使), 병조참판, 한성판윤, 훈련대장, 포도대장, 장위사(壯衛使) 등을 역임하였고,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충청도 제천군에 침거하다가 1896년 김홍집 내각 와해 후 다시 정계에 진출하여 경무대신, 법부대신, 의정부찬정, 육군부장, 군부대신, 현병사령관, 호위대총관(扈衛隊摠管), 원수부군무국총장, 궁내부특진관, 시종무관장을 역임하고 군대해산 당시 육군부장을 사임하고 종1품 승정(崇政)에 승차하였으며,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고, 궁내부 특진관을 역임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작하였으나, 은사공채는 받지 않았다. 은사공채를 받지 않은 이유는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매국이라 불리우기 때문이었다.

올해 85세의 고령인데도 아직 건강하다. 자산은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며 그 아들이 방탕하여 그 장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봉의(李鳳儀) (본관 전주, 소론, 무가(武家), 사망)

씨는 전라도 영암군(靈巖郡)에서 태어났으며, 총어사(總御使: 大將(대장)) 이경우(李景宇) 씨의 양자이다. 소론이자 무인집안(武家)으로서 명문 집안이다. 1876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 군직현감, 수사, 방어사, 병사, 한성좌우윤(漢城左右尹), 병조참판, 한성판윤, 포도대장, 전영사(前營使) 등을 거쳤고,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는 충청도 전의군(全義郡)에 침거하였다.

1896년 아래 다시 진출하여 경무사, 법부대신, 의정부찬정, 호위대총관, 육군부장, 궁

내부특진관, 판돈녕(判敦寧)에 순차로 역임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품이 강직하지만 완고했다. 박학의 소양도 시국(時局)에 통하지 않았고 관직에 임해서도 무능하였다.

1916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아들 이기원(李起元)이 작위를 세습하였다. 아들은 장래 유망한 청년으로 명성이 있으며 이전에 육군참령으로 배종무관을 역임하였다. 자산은 34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정5위 남작 윤웅렬(尹雄烈) (본관 해평, 노론, 좌족, 사망, 아들 대에 실작)

씨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에서 태어났다. 그 가문은 매우 가난하였으나 다행히 양반이라고 불렸다.

1877년 무과에 급제하였고 완력으로는 이길 자가 없다는 평을 받았다. 항상 권문세가의 집에 드나들어 점차 출세의 기회를 얻었다. 민비의 깊은 총애를 받았으며, 천하 장사로 명성이 자자하였다.

현감, 군수, 중군영장, 수사, 방어사, 병사 등을 거쳐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엄비를 황후로 책봉해야 한다며 운동한 이후 신임을 얻어 육군참장, 경무사, 평리원 재판장, 관찰사, 군부대신, 법부대신, 원수부군무국총장, 의정부찬정,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하였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매우 간교하고 인격은 논할 것도 못 된다. 1912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윤치오(尹致旿)가 작위를 세습하였지만 치안법에 연좌되어 작위를 박탈당하였다. 기독교 신자로 영어에 능숙하여 이전에 외부협판 등을 거쳐 서리대신에 오른 관력이 있다.

현재는 종로기독교청년회의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주의인물이라는 평이 있다. 자산은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정5위 훈1등 남작 이근호(李根皓) (본관 전주, 노론, 무가(武家),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전군부대신 이근택(李根澤) 씨의 장형(長兄)이다. 성격은 매우 간교하고 사악하여 엽관술(獵官術)이 교묘하며 수완이 좋고 거짓이 허다하며 관직

에 재직 중에는 도처에서 인민의 피를 짜내어 소란을 일으킨 자이다.

1878년 별도의 추천에 의해 무용위(武勇衛)가 되었다. 부장으로 승진하여 같은 해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주부, 훈련검정, 정3품, 승정원우부승지(이때는 그의 모친의 친형제 한규직(韓圭稷)이 민비의 총애를 받아 세력이 가장 커던 시대였다. 이근호가 봉서(封書)를 위조하여 한규직의 명의로 민비전하에게 이근호를 중용할 것을 간원한 봉서를 올려 이와 같이 되었다), 자산방어사(慈山防禦使), 광무국방판(幫辦), 평양중군, 승정원좌부승지, 부평부사, 통진부사, 영변부사, 경리영병방(經理營兵房), 충어영병방, 중추원의관, 내부위생국장, 경무사, 법부협판, 농상공부협판, 법부대신서리, 겸임양지아문부총재, 충청남도관찰사, 전라남도관찰사, 의정부찬정, 경기도관찰사, 궁내부특진관, 중추원부의장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였다.

1905년 법부대신에 오르고 경상북도 관찰사에 전임되었으며, 중추원 찬의, 육군부장, 육군찬모관등을 역임한 후 궁내부 주전경(主殿卿)에 천임되었으며, 정2품에 올라 1906년 훈2등 팔괘장을 수여받았다. 이강공 전하의 수행원으로 도일하여 개선관병식(凱旋觀兵式) 등을 관람하고 훈1등 서보장을 수여받았다. 귀국 후 제실제도국의 정관을 배수받았으며, 중추원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며 배종무관장(陪從武官長)에 전임되었고, 훈1등을 수여받았다. 후에 제실제도국 총재, 제실재정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또한 궁내부특진관에 오르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이근호, 이근택, 이근상은 형제로서 3명 모두 대신(大臣)에 오르긴 했지만 궁중이나 부내(府內)를 혼탁하게 만든 거두(巨頭) 집안으로 알려졌다. 1921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이동훈(李東薰)이 작위를 세습하였으나 첨과 서자가 많아 가정에 불란(不亂)이 끊이지 않았다. 자산은 50, 60십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장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5위 남작 김가진(金嘉鎮) (본관 안동, 노론, 좌족, 사망, 습작 불능)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의 명문 집안 출신이다. 1877년 규장각 검서관을 시작으로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조지서별제(造紙署別提),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 등을 거쳐 1883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4월 모친상을 당해 안동 향리에 돌아갔다. 그 후 7월에 인천항 주사를 명받고 1885년 내무부주사, 형조정랑에 전임되었고 전보위원을 명받았다. 1886년 내무부주사 겸임 서학교수(西學教授)로 자리

를 옮겨갔으며, 홍문관부수찬, 지제교겸임경연검계관(知製教兼經筵檢計官), 춘추관 기사관을 역임하고 주 텐진 종사관(駐津從事官), 주일공사관참찬관, 사복사정(司僕寺正) 등을 거쳐 1887년에 주일공사서리를 명받고 약 5년 간 주재하였으며, 1889년 공조참의에 임명되었고 참의내무부사 여주(驪州)목사가 되었다.

1891년 안동부사로 옮기고 1893년 주일전권공사에 복임하였으며, 승정원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승정원동부승지, 우부승지를 역임하였고, 1894년 참의내무부사가 되어 군국기무처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6월 협판교섭통상사무에 오르고 서리외무독판사무를 명받았다. 총판전우사무(總辦電郵事務), 군국기무처회의원을 겸하고 병조참판을 역임하고 자헌대부, 공조판서에 오르고 외무아문, 공무아문협판을 거쳐 1895년 농상공부대신에 영전하였다. 그 후 중추원일등의관, 주차일본특명전권공사, 교전소지사원(敎典所知事員) 등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다.

1898년 중추원 의관으로 옮겨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1900년 중추원의장에 임명되고 중추원의 명예의관을 매일 몇 백 명에게 팔아 백운동에 광대한 별장을 짓고 일신의 영달을 누렸다. 1901년 표훈원의정관을 겸임하였으며, 훈3등 팔괘장을 수여받았다. 후에 궁내부특진관, 중추원부의장, 의정부찬정, 농상공부대신, 임시외부대신서리를 역임하였으며, 종1품에 오르고 법부대신, 특명전권공사, 중추원찬의 등을 거쳐 훈2등에 승차하였으며, 1907년 규장각제학에 임명되었다. 이후 민간으로 내려와 대한협회장이 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매우 경솔하여 관리 생활의 성쇠를 파악하는 간사한 지혜가 있었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하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일찍 외교관으로 채용되어 시세의 추이에 따라 출세를 하였다. 학식이 천박하였지만 필명이 있었다. 1919년 만세소요 때 경성을 탈출하여 바다를 통해 밀행하여 임시정부에 투항하지만 병사하여 허망하게 객지를 떠도는 영혼이 되었다. 아들도 없고 자산도 없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정낙용(鄭洛鎔) (본관 연일(延日), 노론, 무가,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참정(贈參政) 정인기(鄭寅基) 씨의 아들이다. 1857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임명되었다. 사복내승, 수안군수(遂安郡守), 태안군수, 태안부사, 전라좌수사, 우부승지, 축산부사, 전라수사, 남양부사, 통제사, 부총관, 병조참판, 좌포장, 후영사(後營使), 협판내무부사, 전환국총판(典圜國總辨), 공조판서, 강화유수, 한성

판윤, 중추원일등의관, 시종원경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897년 10월 농상공부대신이 되었고, 11월 탁지부대신서리에 올랐다. 같은 해 12월 승정대부(崇政大夫)를 명받고 1899년 10월 중추원의장을 명받았다. 1902년 3월에 종1품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르고, 1904년 9월에 궁내부특진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너그럽고 후덕하지만 명예와 사욕이 강해 항상 권문세가에 아부하고 요직을 얻었다. 일시적으로 조선 미래의 군주후보자로 혐의를 받았다가 유배된 적도 있었다. 이조 말에 계룡산에 연일(延日) 정씨도(鄭氏都)를 정하고 왕이 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낙용(鄭洛鎔) 씨도 이것에 연좌되었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아들 정주영(鄭周永) 씨가 작위를 세습하였다. 현재는 충청도 예산군에 거주하고 있다. 자산은 30, 4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정5위 훈1등 남작 민종묵(閔種默) (본관 여흥, 북인, 사망)

씨는 충청남도 직산군(稷山郡)에서 태어났으며 북인파의 문과 출신 집안이다. 1874년 문과에 급제, 가주서(假注書)를 명받고 얼마 안 있어 부수찬(副修撰)에 오르고 지평(持平) 겸임 경상우도시관(慶尙右道試官), 부교리, 서장관(書壯官), 문사랑청(問事郎廳), 사복정(司僕正), 호조참의, 자산부사(慈山府使), 동래암행어사(東萊暗行御史), 병조참의, 성균관대사성, 한성우윤, 전성서제조(典性署提調), 호조참판, 이조참판, 종묘제조, 한성판윤, 진주사(陣奏使), 형조참판, 병조판서, 홍문제학, 예조판서, 공조판서, 육영공원판리당상, 내무협판, 외무독관, 안무사(按撫使), 장례원경 등을 역임하고 1896년 학부대신에 영전하였다.

다음해 외무대신으로 전임하고 다시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이 되었다. 후에 홍문관 학사서리, 농상공부대신, 외부대신, 법부대신서리, 궁내부대신서리, 양지아문총재, 농상 공부대신, 의정부찬정, 예식원장, 예식원경 등을 거쳐 1904년 훈1등 옥일대수장을 수여 받고 종1품에 올랐다. 다음해 훈2등태극장을 수여받고 중추원의장이 되었으며, 훈1등 팔괘장에 서훈되었으며, 의효전제조(懿孝殿提調)를 명받았다. 1910년 규장각 제학에 오르고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씨는 성격이 조용하며 문학 선비이다. 처신이 근엄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외부대신 시절에는 배일파로서 수완을 떨쳤다. 1916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민철

훈(閔哲勳)이 작위를 세습하였지만, 미곡 장사에 투자하여 실패를 거듭해 자산을 탕진하고 현재는 품위를 보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4위 훈1등 남작 이재극(李載克) (본관 전주, 노론, 서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예조판서 이연응(李沈應) 씨의 아들이다. 대원군의 사위 조한국(趙漢國)의 사위이다.

1893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주서를 명받았다. 1895년 비서감, 우비서랑, 왕세자궁 우시독관에 오르고, 다음해 규장원 교서, 경연원 시독, 장례원장례를 거쳐 6품에 승차하였다. 그 다음해 규장각직각 정3품 비서승이 되었다. 1898년 중추원 이등의관, 시강원부첨사(侍講院副詹事), 규장각직학사를 거쳐 종2품에 오르고 홍릉제조, 시강원참사, 종정원경 등을 명받았으며, 다음해 가의(嘉義)에 올랐다.

다시 내부협판, 의정부참찬을 거쳐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1900년 궁내부특진관, 비서경으로 진급해서 정2품에 이르렀다. 1902년 의정부찬정, 장례원경, 태의원경, 시종원경 겸 홍문관학사를 거쳐 법부대신에 임명되었다. 그 후 규장각학사, 시강원 일강관이 되고 정현에 승차하였으며, 1904년 평리원 재판장 겸 내부대신, 의정부찬정, 학부대신 등을 역임하고 일본국학무시찰 겸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되어 도일하여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1905년 훈2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궁내대신이 되었으며, 훈1등 팔괘장을 받고 1906년 종2품,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았다. 경효전제조, 수학원장, 판돈녕사사 등을 역임하고, 다음해 궁내대신을 거쳐 표훈원총재로 자리를 옮겼으며, 1909년에 승록 품계(崇祿階)에 특별 서훈되고,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1919년 민병석 씨 대신으로 이왕직장관이 되지만 1922년 홍릉비 건립문제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성격은 온후하고 독실하며 청렴결백한 것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최근에 이씨종약소장(李氏宗約所長)으로 책사에 이용당하면서 보종당(保宗黨)의 일파가 되어 이왕가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씨의 출세도 그 문벌에 의한 것이라고도 한다. 자산은 세습되어 온 것이 더욱 증가하여 현재는 백만 원 이상이라고 한다. 아들이 있지만 불구자라고 한다.

정4위 훈1등 남작 이윤용(李允用) (본관, 우봉(牛峰), 노론, 좌족)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보국(輔國) 이호준(李鎬俊) 씨의 서자이다. 후작 이완용 씨의 의형(義兄)에 해당하며 가문은 훌륭하지만 서자이기 때문에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고 무과로 출사하였다.

대원군의 사위가 되면서 16세 때 돈녕부참봉을 배수받고, 1870년 남행별군직(南行別軍職)을 역임하였다. 1871년 무과에 급제하여 양덕(陽德)현감에 임명되어 통정 품계(通政階)에 올랐다. 가선(嘉善)에 오르고 전라병사, 한성좌윤, 금군별장,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가의(嘉義)에 올라 자헌(資憲)에 이르렀다. 다시 한성판윤, 지의금, 영원부사, 봉산군수, 흥주목사, 형조판서, 좌우포장, 경무사 등을 거쳐 1895년 의제(義弟) 이완용 씨와 공모하여 김홍집 내각을 와해시키고 이태왕 전하를 러시아공사관에 옮겨가게 했다. 이 공로로 1896년 육군부장, 군부대신이 되고 후에 농상공부대신에 옮겼다. 1897년 이태왕 전하가 러시아공사관에서 돌아오자 의정부찬정(贊政)이 되고, 다음해 시종원경에 임명되면서 권세를 크게 떨치게 되었다. 다시 의정부찬정을 명받고 일본국 기동연습 배관(陪觀)을 명받아 도일하여 훈2등 서보장을 수여받았다. 다음해 훈3등 태극장을 수여받아 정현(正憲)에 오르고 의정부찬정을 배수받고, 훈원의정관을 겸임하였다. 후에 경상남도관찰사, 경상북도 관찰사, 중추원의관, 전라남도관찰사, 군제의정관(軍制議定官), 참모본부 차장 등을 거쳐 1904년 군부대신을 명받았다. 훈2등 태극장을 수여받았고 다음해 찬모관(贊謀官)으로 옮겼으며, 시종원경에서 평리원재판장까지 역임하였다. 1906년 훈1등 팔괘장에 서훈되었으며, 궁내부특진관이 되었다.

다시 찬모관(贊謀官)임시서리, 시종원경 겸 내부대신사무(內部大臣事務)를 거쳐,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조직되어 이태왕 전하 양위 후 궁내대신에 임명되었다. 친임관 종1품에 오르고 훈1등 태극장을 수여받고 후에 훈1등 육일대수장을 수여받았다. 왕세자 전하의 일본국 유학에 수행을 명받아 도일하여 육일동화대수장을 수여받았으며, 귀국하여 이화대훈위를 수여받고 궁중고문관에 임명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이 침착하고 강건하며 과단성이 있고 기략이 뛰어나지만 무학으로 야심만 강했다. 아들 이명구(李明九)는 방탕하여 자산이 백만 원 이상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탕진하여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정로(李正魯) (본관 전의,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참정(贈參政) 이근오(李根五) 씨의 아들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만연(萬延) 원년에 용강현령에 임명되었으며, 자주 삼사(三司)를 드나들었다. 원치(元治) 원년 정3품 통정 품계(通政階)에 오르고 승지 및 각조 참의가 보직되었다. 1870년 대사성에 임명되었고 이조참의, 보덕(補德), 경주부윤, 충주목사 등을 거쳐 1878년 가선 품계(嘉善階)에 오르고 여러 차례 각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1890년 가의 품계(嘉義階)에 오르고 도승지가 되었다. 1892년 자헌 품계(資憲階)에 오르고 각조판서를 거쳐 상사(上使), 이조판서, 약원제조,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었다. 1897년 정현 품계(正憲階)에 오르고 다음해 비서원경이 되었다. 1899년 태의경을 배수받은데 이어 장례원경에 전임하였다.

1902년 종1품에 오르고 숭정 품계(崇政階)에 승차하였다. 1904년 시종원경이 되고 1906년 판돈녕사사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기사(耆社)에 들어갔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매우 온화하여 관직 재직 중에 도처에서 업적을 이루었다. 명예욕이나 이익에 대한 야심이 없는 결백한 선비였다. 1921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이능세(李能世)가 작위를 세습하였고 고양군 두모포(豆毛浦)에 거주하고 있다. 자산은 3, 4만 원 내외라고 한다. 성품이 온후하고 독실했지만 시세를 타지 못했고 약간 완고했다고 한다.

정5위 남작 김영철(金永哲) (본관 광산,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령의정(贈領議政) 김보현(金輔鉉) 씨의 아들이다. 노론 중의 명문대가이다. 1871년 문과에 급제하여 가주서에 임명되고, 한림, 교리, 현납, 규장 각직각, 겸상, 응교, 병조정랑, 사복정, 부응교, 예조참의, 대사성, 이조참의, 돈녕부도정, 예조참판, 부총관, 지의금, 동성균, 한성우윤, 이조참판, 병조참판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886년 자헌 품계(資憲階)에 올랐다. 1888년 한성판윤에 옮겼으며, 후에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거쳐 정현 품계(正憲階)에 오르고 우참찬, 지돈녕, 사역원제조, 평시서제조, 이조판서, 내의원제조 등을 역임하였다. 1900년 종1품 숭정 품계(崇政階)에 오르고 홍문관학사가 되었다. 1902년 시종원경을 명받았다가 궁내부특진관으로 전임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완고하며 무능하다. 관직 경력이 화려한 것은 그 가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 김영수(金英洙)가 작위를 세습하였는데 이 아들도 무학으로 아직 어리며 자산이 없어 품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용원(李容元) (본관 전주,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이조판서 이병은(李秉殷) 씨의 아들이다. 노론파의 명문 집안으로 대원군이 매우 가난하고 빈약하여 권세를 얻지 못했을 때 경멸했다는 혐의 때문에 이 가문은 명문으로 문학으로 유명한 선비가문임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섭정시대에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실로 불행한 지위에 있었지만 후에 대원군의 후회로 점차 만년에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주서(注書), 한림(翰林), 직각(直閣), 교리(校理), 각조 참의(各曹參議),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등을 거쳐 상사(上使), 시종관으로 중국에 건너가 이홍장과 회견하고 마침내 귀국하여 대원군의 정책에 크게 공헌하고자 대원군의 정책을 대표하여 일본에 대해 극단적인 배일주의를 취하고 동래부사를 탄핵하였다.

이것은 대원군에 대한 큰 타격이었음과 동시에 개화의 서광은 이때 일찍부터 씨의 식견에 의해 반도에 빛나기 시작했다. 이왕 전하 8세 때로 칭경절(稱慶節)이 개최되었을 때의 일이다. 국왕인 이태왕 전하는 이왕 전하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 백관유사(百官有司)의 축하 의례를 받자고 건의하였다. 이때 씨는 예조참판의 자리에 있었는데 직접 상소하여 말하기를 하늘에는 두 개의 태양이 없고 백성에게는 두 명의 군주가 없으며 종묘의 상정 명령은 두 번이 없다고 했다. 또한 서민들이 곤란해하고 국정은 이에 의해 어지러워진다고 하였다. 칭경절 당일은 이것 때문에 불쾌하게 되었다.

이 직언은 불경죄라 하여 마침내 이산도(里山島)에 유배되었다. 이때는 씨의 전성시대로서 가장 명성을 떨치던 시대였다. 민씨가 발호하던 시대에는 다시 출세하기 어려웠지만 청일전쟁 후에 정국이 일변하자 다시 출세하기 시작하여 유배에서 풀려나는 은전(恩典)을 입었다.

1895년 경연원경(經筵院卿)을 제수받고 왕세자궁 우일강관을 겸하였다. 후에 학부대신, 광주유수에 임명되었지만 이래 은거하였다. 1897년 궁내부특진관에 임명되고 기사(耆社)에 들어가 승록계에 올랐다. 향리에 거주했지만 1908년 이완용 내각을 와해시키지 않으려는 책사운동 때문에 상경하여 규장각대제학을 맡으며 여러 번 이토 공작과 면담을 하였지만 공을 세우지는 못했다. 그 내용은 배일주의적(排日主義的) 내각을 조직하려

는 것에 있다고 했다. 후에 국조보감편집관에 임명되었다. 이전에 1906년 보호조약에 분개하여 최익현(崔益鉉)과 함께 병사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책사 구완희(具完喜)라는 자가 이것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오히려 이완용 내각의 전복을 꾀하게 되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격은 근엄 강직하지만 약간 완고함에 가까웠다. 문학성이 풍부했지만 시세에 맞지 않았다. 정치가로서는 논할 여지도 없다. 단순히 중국 고대의 열전에 정통할 뿐이었다. 1869년 예산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이 일찍 사망하여 작위는 손자 이원호(李原鎬)가 세습하였고 자산은 전무하다고 한다.

종4위 남작 김종한(金宗漢) (본관 안동, 노론, 서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노론파의 명문 집안이었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6품승 훈랑홍문관부교리(六品承訓郎弘文館副校理)에 오르고 1879년 정삼품 통정계에 올라 승정원동부승지,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을 거쳐 1886년에 종이품 가선계(從二品 嘉善階)에 오르고, 예조참판, 홍문관부제학, 이조참판, 규장각직학사, 의정부유사당상등(議政府有事堂上等)을 역임하고, 이래 수년간 정변의 여파로 은둔생활을 하였다.

1894년 5월 다시 정계로 나와 승정원도승지(承政院都承旨)가 되고 당시 청일양국의 위기가 목전에 다가오자 오토리(大鳥) 공사 알현 결과로서 마침내 내정개혁에 관한 칙서를 발포하게 되었다. 씨는 신정희(申正熙), 조인승(曹寅承) 씨와 함께 개혁위원이 되고 정계 난국을 제압하고 김홍집 씨의 영의정총리대신이 되었다. 어윤중 이하의 제 씨와 함께 요직을 맡았고 동시에 정2품 자헌계에 올라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후에 궁내부 협변, 궁내부대신서리, 시종원우시강겸임, 홍문관학사, 산릉제조, 규장각학사 등을 역임하고 1897년 정헌계(正憲階)에 오르고 함경남도 관찰사가 되었다. 1901년 종일품 승정계에 오르고 함경남도 관찰사를 그만두고 궁내부특진관에 올랐다. 1904년 승록계에 오르고 장례원경, 판돈녕사사, 비서감경을 거쳐 규장각기후관직임일등(奎章閣祇侯官勅任一等)에 오르고 이후 관직을 사직하고 수원 자택에 은거하며 사회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1910년 고희준(高義駿), 민원식(閔元植), 정응설(鄭應爵) 등이 조직한 정우회(政友會)의 추대에 의해 정우회의 총재가 되었다.

경성으로 나와 크게 활동하지만 아무것에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같은 해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성품은 온후하며 정계(政界)의 흐름을 보는 것에 기민하고 임기응변에 재능이 있었다. 일을 찾아 희생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이 있었다. 현재 90세에 이르는 노령이지만 아직도 건강하여 민간사업에 관여한다. 윤덕영(尹德榮) 자작의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외척의 일파와 관계를 맺어 스스로 원로의 위치에 서서 선비들을 조종하기도 했다. 자산은 전무하고 아들은 없으며 손자도 아직 어리다.

정5위 남작 조정구(趙鼎九) (본관 풍양, 노론, 서인,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노론파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의 명문이다. 대원군의 사위이다. 문과에 급제하고 주서, 교리, 한림, 대교, 각조 참의, 성균관대사성, 홍문관부제학, 병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1900년 양주목사(楊州牧使)에 임명되었으며 후에 정2품에 올랐다. 장례원경(掌禮院卿) 등을 거쳐 의정부찬정에 오르고 궁내부특진관에 전임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게 되는데 크게 분개하여 이조 말을 좌시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 하여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측근의 발견으로 자살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총독부의원에 입원치료 중 다시 자살을 시도하여 수술을 받은 봉합을 찢었지만 죽지 않아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세속을 등지고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지만 최근 둘째 아들 조남익(趙南益)의 부음을 듣고 경성에 돌아왔다. 장남 조남승(趙南升)은 중국 남경에서 방랑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사망하였고, 셋째 조남복(趙南復)은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 중이라고 한다.

성격은 온순하고 단아한데 보수적인 의지가 강고하다. 수완은 무학무능하여 논할 가치가 없다고 한다.

정5위 남작 김학진(金鶴鎮) (본관 안동, 노론, 서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증판동녕사사(贈判敦寧司事) 김명균(金命均) 씨의 아들이다.

1871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명받고 다음해 6품에 올랐다. 이후 홍문관교리, 호조참의, 승정원동부승지, 외무아문참의, 동래부사 겸 부산항감리, 이조참

의, 한성부소윤,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하였으며, 1890년 종2품에 올라 형조참판을 명받았다.

한성부좌윤, 외무아문협판 등을 거쳐 1893년 가의(嘉義)에 올라 이조참판을 거쳐 승정원 도승지에 오르고 다음해 2월 정2품에 올랐다. 나아가 형조판서, 공조판서, 전라감사, 병조판서, 중추원일등의관, 홍문관학사, 궁내부특진관, 시종원경, 태의원경 등의 각 요직을 거쳐 1906년 정헌(正憲)에 올랐다. 홍문관학사를 명받고 1907년 기로소(耆社)에 들어갔으며, 종1품에 승차하였다. 규장각대제학이 되고 1909년 훈2등을 수여받았으며, 특별히 승록 품계(崇祿階)에 승차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받았다.

성격이 온순 공순하고, 겸손하며 재직 중에도 청렴결백하여 명성이 높았다. 문학에 특기가 있었다. 191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고 자식이 없어 지금은 손자 김덕한(金德漢)이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은 빈약하여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정5위 남작 박용대(朴容大) (본관 밀양, 북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중의정부(贊議政府)참정 박세병(朴世秉) 씨의 아들이다.

1877년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교리, 각조 참의, 홍문관부제학, 승정원동부승지, 밀양부사, 형조참판, 공조참판, 호조참판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894년 교정당상의정부도현을 역임하고 1899년에 정2품에 올라 비서원경(秘書院卿)에 임명되었다. 법규교정소 의정관, 장례원경, 충청남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1903년 종1품에 승차하여 태의원경에 보직되었다.

이후 문헌비고편찬관(文獻備考編纂官)이 되고, 1905년 법부대신에 영전하여 취임하였으며, 1906년 홍문관학사에 올랐다. 1907년 규장각제학에 오르고, 1908년에 국조보감감인관(國朝寶鑑監印官)을 명받으며, 다음해 훈2등에 올랐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았다. 씨는 이전에 김홍집 씨 수신사로 일본에 도착할 당시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간 적이 있다.

성격은 매우 근엄하며 단아하고 야심은 없다. 당파(黨派)가 없이 견고함만으로 이름이나 있다. 현재 자산이 없어서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동정이 간다. 아들은 없고 손자가 있으나 방탕하다.

정5위 남작 조경호(趙慶鎬) (본관 임천, 노론, 서인, 사망, 작위를 받지 않음)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대원군의 사위이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한림, 대교, 규장각직각, 홍문관부제학, 각조참의, 성균관대사성, 승정원승지, 공조참판, 이조참판, 형조참판, 형조판서 등을 거쳐 종1품에 오르고 추기(樞機)에 참여하여 그 명성을 떨쳤다.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내정개혁에 불만을 품고 향리 목천군(木川郡)에 은거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수여받지만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성품은 온화 공손하고 겸손하며, 매우 완고하고 보수주의를 고집하여 쇄국의 미몽에서 깨지 못했다. 1913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자산은 없고 현재 생활은 곤란하다고 한다. 운현궁(雲峴宮)에서 다소 보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한다.

종4위 남작 김사철(金思轍) (본관 연안(延安), 노론)

씨는 경기도 수원군에서 태어났으며 이강공비(李岡公妃) 전하의 친척이다. 1880년 문과에 급제하여 바로 홍문관응교를 맡았다. 용강군수를 거쳐 외무참의를 맡고 후에 한성 소윤, 선산부사, 경상좌우도수의반장(繡衣泮長), 삼전아전도령(三銓亞銓都令) 등에 오르고 변리공사로 임명되어 일본 도쿄에 주재하였으며, 귀국 후 내부협판에 임명되었다. 종 1품 승정 품계(崇政階)에 승차하여 의정부찬정에서 규장각제학까지 역임하였다.

성품은 중후하며 공손한데 조금 완고한 데가 있다. 학력은 없으나 경제와 사상에 견실한 지식을 쌓고 근검절약하였다고 한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산은 수백만 원 이상이라고 하며, 사회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현재 70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가산의 영리사업에 노력 중이라고 한다.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둘 다 구한국시대의 무관학교 출신으로 아버지 못지 않는 경제가(經濟家)라 한다. 가산정리일 이외에는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

정5위 남작 김병익(金炳翊)²²⁾ (본관 안동, 노론, 사망, 실작)

씨는 충청남도 홍주군(洪州郡)에서 태어났으며 노론파 중 손에 꼽힐 정도의 명문집안이다. 1876년 문과에 급제하여 주서, 교리, 한림, 대교, 직각, 부제학, 각조 참의, 성균관 대사성, 승지, 이조참판, 형조참판, 호조참판, 도승지 등을 거쳐 1893년에 자헌 품계(資憲階)에 올라 공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1894년, 1895년대 청일전쟁 이후 홍주군(洪州郡)에 은거하여 나오지 않았다. 1897년 다시 세상에 나와 규장각학사, 장례원경, 비서 원경, 궁내부특진관, 의정부찬정 등을 역임하였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받았다.

성품이 강직한 것으로 유명하다. 매우 완고하며 보수주의자로서 정치적 수완에는 특기할 만한 실력이 없다. 순조대왕의 부마 창녕위(蒼寧尉)의 종가라는 것 때문에 그 가문의 지위로써 현직(現職)에 오를 수 있었다.

1920년 홍주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아들은 일찍 사망했고 손자 김홍진(金弘鎮)은 불구자로 상해(上海) 방면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사상범이라 하여 작위세습을 박탈당했다.

정5위 남작 정한조(鄭漢朝) (본관 동래(東萊), 소론, 동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소론파의 문벌 집안인데도 작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 즉 병합 당시 조선귀족령은 왕공가(王公家)의 근친 혹은 외척(外戚), 그 외 친임관, 고등관 1등 이상, 즉 정2품 이상인 자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구한국시대 명문대가 중에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집안은 불합격으로 끝났다. 정한조 씨는 이상의 어느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논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었다.

병합 당시 이완용은 병상에서 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조중옹(趙重應) 자작이 조정의 임무를 맡았었다. 조씨와 정씨는 같은 소론파로서 봉당(朋黨) 관계상 불공평함을 알면서도 그 관직 및 위계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과분한 영작을 받게 하여 유식자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켰다. 남작에게 지급된 은사공채를 조중옹 씨와 반반씩 나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2) 원문에는 金丙翊으로 되어있음.

문과에 등제하여 승지, 참판을 거친 것에 불과하며 마키야마(牧山) 씨가 편집한 『조선 신사명감』에 철종 대왕 때에 판서 운운이라 적은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생각한다. 조중응 씨가 만든 것이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아들은 없고 손자 정천모(鄭天謨)가 작위를 세습하였고 자산은 전무하다고 한다.

정5위 남작 이주영(李胄榮), (본관 경주, 소론, 동인, 사망)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다. 증내부대신(贈内部大臣) 이유현(李裕憲) 씨의 아들로서 소론파의 명문 집안이다. 1874년 문과에 급제하고 홍문관부교리를 명받고 문신(大臣) 겸 선전관(宣傳官), 부수찬(副修撰), 의정부 겸 문종사관(文從事官), 훈국 종사관(訓局 從事官), 의정부검상, 남학교수, 응교, 병조정랑, 장악원정, 부응교, 동부승지, 성균관대사성, 병조참지, 병조참의, 우부승지, 보덕이조참의, 대사간(大司諫)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고 1884년 조사위장(曹司衛將)에 임명되는데 김옥균 씨의 정변 후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1889년에 다시 세상에 나와 예조참의를 명받고 이어서 공조참판, 동의금, 예조참판, 동돈녕(同敦寧), 동지대사헌(同知大司憲), 도승지, 병조참판, 호조참판, 장례원 귀족사장(掌禮院 貴族司長), 시강원 첨사(侍講院 謄事), 궁내부특진관, 태의원경, 장례원경 등을 거쳐 1904년 정헌에 오르고 궁내부특진관으로 전임하였다. 1907년 장례원경이 되었으며, 얼마 후 궁내부특진관을 명받았다. 1910년 8월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받았다.

성격은 쾌활하며 용모는 수려하고 정치적 수완에 있어서는 특장할만한 점은 없지만 오성부원군(吳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 씨의 (임진왜란 때에 조선의 대신으로 일등공신이었다) 종손이었기 때문에 현직(顯職)에 오를 수가 있었다. 소론파 가운데 손에 꼽힐 정도의 명문이다.

1914년 자택에서 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아들 이규환(李圭桓) 씨가 작위를 세습하였다. 자산은 전무하며 현재 경기도 포천군에 침거하고 있고 가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한다.

정5위 남작 민병석(閔炳奭) (본관 여흥, 노론, 좌족)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자작 민병석(閔丙奭) 씨의 속부에 해당한다. 1882년 남행 별군직(南行別軍職)을 배수받았으며, 같은 해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에 보해졌다. 그로부터 훈련부정(訓練副正), 철산부사(鐵山府使), 내금장당상(內禁將堂上), 승정원부승지, 병조참의, 조사오위장(曹司五衛將), 행수선전관(行首宣傳官), 전라우수사, 전라병사(全羅兵使), 금군별장(禁軍別將), 병조참판, 한성좌윤(漢城左尹), 돈녕부동돈녕(敦寧府同敦寧), 영변부사, 여주목사(驪州), 충주목사, 광무국총판(礦務局總辦), 삼도통제사, 공조참판, 봉상제조(奉常提調) 등을 순차적으로 역임하였다. 1896년 중추원일등의관에 임명되지만 사직하고, 이후 수년간 은퇴했다가 1903년 훈2등에 오르고, 이듬해 정2품 자헌(資憲)에 승차하였다. 의정부찬정을 역임하였고, 궁내부특진관을 거쳐 특명전권공사에 배수되었다. 그리고 육군부장에 임명되었으며, 중추원 부의장을 역임하였으나 중추원 찬의로 좌천되었다. 1906년 훈1등에 오르고 원수부찬모관(元帥府贊謀官)이 되었다. 1909년 종1품에 오르고 한일합방에 즈음하여 남작을 받았다.

씨는 방탕하며 무학이다. 그 관직경력의 영달은 민비 전하께옵서 충주에 은거해 계시는 동안 경성(京城)의 왕궁에 밀사로 드나들며 연락을 담당한 공로로 인한 것이었다. 풍채 못지않게 언동이 조잡하여 논할 가치도 없다.

대주가인데 관직에 있으면서 고치지 못했고 금전을 탐내는 탐관오리였다. 현재는 자산을 탕진하고 민병석(閔丙奭) 씨로부터 생활비를 원조받고 있다고 한다.

아들은 5형제인데 모두 방탕하며 징역에 보내야 할 정도이다. 이후의 형세는 추론할 것도 없다.

이왕직 사무관(예식과장), 정5위 훈2등 남작 이향구(李恒九) (본관 우봉, 노론, 서인)

씨는 경성에서 태어났으며 후작 이완용(李完用) 씨의 둘째 아들이다. (정규)학교 출신이며 사숙(私塾)에서 한학을 수양하고 연령 관계상 명문 집안임에도 문과에 급제하지만 시간이 지나 1898년 참봉(參奉)에 임명되었다.

1905년 학부참서관(學部參書官)에 오르고, 정3품에 올라 궁내부비서승(宮內府秘書丞)에 임명되었다. 1907년 종2품에 오르고 궁내부시종(宮內府侍從)이 되었으며, 이태왕 전하 양위 후 덕수궁(德壽宮) 승녕부시종(承寧府侍從)에 전임되었고 후에 칙임사무관에 올

랐다. 궁내대신 이완용 씨를 수행하여 도쿄로 건너가 훈3등 옥일장을 수여받았으며, 1910년 한일합방 후 관제개혁에 즈음해서 용퇴하지만 1912년 다시 이왕직 주임사무관으로 출사하여 제사과장 찬시(祭祀課長 賛侍) 등을 역임하고, 1921년 고등관2등에 오르고, 칙임찬시의 자격으로 주임사무관의 하급직에 취임하였다. 1923년 관제개정에 의해 칙임사무관이 되어 예식과장(禮式課長)에 임명되었으며, 찬시(贊侍)를 사직하고 1924년 황태자 전하의 가례(嘉禮) 때 이완용 후작의 공로를 고려하여 특별히 그 둘째 아들에게 남작을 수여하고, 정기서훈(定期敍勳)에 의해 훈2등 서보장을 수여하였다. 현재 이왕직 예식과장(李王職 禮式課長)에 재직 중이다. 씨의 장남은 현재 도쿄 가쿠슈인(學習院)에 재학 중이며, 씨의 큰형 이승구(李升九) 씨의 양자가 되는 까닭에 장래 이완용 후작의 상속인으로 계를 이어 받을 예정이다. 차남도 동경에 유학 중인데 성적이 불량하고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

자산은 아직 배분을 받지 않았고 이완용 후작과 함께 살고 있어서 따로 적어야 할 것인데 백만 원 이상의 분배는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문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쾌활하며 명문 자손으로 귀족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걸맞지만 평민주의라 하여 사교에 원만하고 사무에 근면하다. 상응하는 순서를 거쳤으나 학식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며 이완용 후작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윤덕영 자작과는 이왕직 내부 권력투쟁을 하여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 한다.

〈출전 : 朝鮮貴族列傳, 『朝鮮貴族略歷』(『齋藤實文書』 100-3-850)〉

3. 조선귀족 관련 기타자료

1) 조선인 수작 표준 난정(難定)(기사)

정부는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새롭게 수작의 사명을 접할 자의 신분과 기타에 대하여 현재 조사 중인데 전 내각대신 이외에 수작할 표준은 그 종관(從官)의 이력을 보고 정할 것인지 문벌을 보고 정할 것인지 혹은 특이한 공을 보고 정하는지 그 표준을 논의해 결정하기에 조금 고심 중이라더라.

〈출전 : 朝鮮人授爵標準難定, 『毎日申報』, 1910년 9월 21일〉

2) 귀족론(사설)

조선민족의 사회제도를 거슬러 보건대 신라, 고려 이전은 아득히 멀 뿐임은 물론하고 이조(李朝) 아래 5백여 년 동안에 문벌을 중시하며, □작(□爵)을 송상하여 존귀함과 큰 벼슬(名公巨卿)의 화려한 갑옷(華胄)이 없으면 벼슬길(仕路)에 나아가기 어려우며 청환요직(淸宦要職)에 임금의 부르심(顯御)이 없으면 가문의 명성을 수립하기 어려운 고로 벼슬아치는 권문세가(閥閱)의 요소가 되고 권문세가는 벼슬아치의 근본 바탕(原質)이 되어 가문(門地)이 한미한 자는 경제를 다스리고 바로잡는(經濟治平) 재목을 갖고 있을 지라도(抱有) 하나의 품계와 반 등급(一資半級)²³⁾을 얻기가 지극히 어려우며 가문의 세도가 대단한(煊赫) 자는 어로숙맥(魚魯菽麥)을 분별하지 못 할지라도²⁴⁾ 고관대작에 오르기가 굉장히 쉬운지라. 이리하여 동서남북 사색(四色)의 문호를 각각 세우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이 계급을 상쟁하다고 그 결과로 명문세족(閥族)은 권위를 남용하여 아랫사람을 소나 말과 같이 잔혹하게 학대하고, 아랫사람은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여 명문세족을 뱀이나 나무의 좀과 같이 추하고 더러운 것처럼 미워하였으니 민족사회의 질서가 어찌 문란하지 아니 하리오.

23) 『소학』 가언편 제9장 “其五, 急於名宦, 罷近權要, 一資半級, 雖或得之, 衆怒群猜, 鮮有存者”에서 인용된 말이다. ‘一資半級’의 의미는 보잘것없는 작은 벼슬을 말한다.

24) 魚魯不辨, 菓麥不辨에서 유래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을 뜻한다.

게다가 조선은 수천 년을 오르내려(上下數千載) 중국의 신복(臣僕)이 되어 감히 천자의 의례를 본떠 사용하지 못함으로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급의 작위를 설치하지 못하였더니 천명이 있는 곳에 나라의 명이 새롭게 세워져 제반 제도를 일신 □□함에 조선귀족령을 재가 공포하게 하옵시는 대조(大詔)가 환□(渙□)함에 본영(本令)을 의지하여 본월 7일 조선총독부에서 후작 이하 백자남 등 작의 봉수식(奉授式)을 거행한 자 76명에 달한지라.

이번 귀족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왕 전하의 의친(懿親)으로 황족의 예우를 누리지 못한 자와 및 문지(門地)와 공로 있는 조선인에게 주는 자인데 각기 작위에 상응하여 내지의 화족령에 의거한 유작자와 동일한 예우를 누리도록 함이니 이는 조선사회제도의 신현상이라 이를 것이오, 또한 세계열국의 사례와 비교하건대 영국과 같은 경우는 그 영토가 동서에 산재하였을지라도 본국과 동일한 귀족의 제도를 영토에 창설한 적이 없고, 특히 스코틀랜드(苏格兰)와 아일랜드(愛蘭)를 합병한 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귀족을 이전과 같이 예우하였으니 이번 조선귀족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귀족과 그 의미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도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특수한 제도로 영작(榮爵)을 받은 자는 조선민족 중에 최고의 지위와 최대의 명예를 향유할지니 위로는 성은의 우악(優渥)하심에 감읍하며, 아래로는 인민의 모범됨을 스스로 다짐하여(自期) 그 덕행과 지성이 사회를 멀리 내다보는 바(瞻望)가 되면 일신과 일가가 대대로 이어지는 영예와 영광(榮耀)을 보존할 뿐 아니라 바로 조선민족의 대표가 되어 메이지(明治) 성세에 태평을 함께 누릴지어늘 근일 항간에 전하는 말을 들은 즉 수작한 제씨 중에 1, 2인이 사작(辭爵)한다 운운하니 이는 일시의 풍설에 불과하나 만약 혹시라도 그러하다면 그 사작의 본의가 무엇인지 바로 질문하고자 하노니 후, 백, 자, 남(侯伯子男)의 은택(寵光)이 있으나 그렇다고 과거시대와 같이 권위가 없음을 비관함이 아니면 사직상소(辭疏)를 제출하던(例呈) 구습과 같이 거짓으로 명예를 취하는 형식(釣名的形式)을 보임이니, 전자로 말하면 이조 시대의 1호령 아래에서 인민을 협박하여 굴복(懃伏)하게 하던 복위(福威)를 일으키지 못 할지라도 지위와 덕망이 사회의 상급에 거하는 등 자살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리니 비관함이 불가하고, 후자로 말하면 오직 문구(文具)를 승상하던 폐습이 오히려 존재함이니 지혜로운 자를 취하지 않는 바인 고로 우리가 특별히 일언을 드리노라.

〈출전 : 貴族論, 『毎日申報』, 1910년 10월 4일〉

3) 조선귀족(사설)

[3-1]

『경성일보』에 「조선귀족」이라 제목을 단 논설 한 편이 있는데 조선귀족을 경계하여 깨우침(警醒)이 지극히 정성어린(懇惻) 고로 그 전문을 번역하여 옮겨 왔노라.

지난번 조선귀족령에 의하여 영작을 받은 자가 차제로 결정됨에 반도가 바라던 바가 물론이오, 나아가 본토에 있는 자라도 각각의 그 영예를 우러러보지 아니하는 자가 없도다.

회상하건대 이 일은 일한병합의 때에 이미 정해진 하나의 큰 은혜인즉 유독 반도를 위하여 경하할 일이 아니라 대일본 전국의 큰 경사라 할지로다. 귀족령에 의거한즉 조선귀족은 이왕가의 족척(族戚)과 일본에 커다란 훈공과 공로가 있는 자를 우선 순서에 승서(陞敍)하였으니 수작자로부터 이를 보면 그 구덕(舊德)과 이전의 공의 표상(表賞)을 받음이오, 반도신민으로부터 이를 보면 일대 의표(儀表)가 되는 자이니 대일본제국이 위정자가 새로이 병합한 토지의 인민을 우대하는 대의도 이에 명백할지라. 이왕 병합하여 일국이 된 이상에는 상호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뜻을 극진히 함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기초라 하노라.

그러나 사물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가 특하면 바로 혀망한 말(動輒則妄語)을 일으켜 왈 병합자로 하여금 병합자의 영예를 받음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며 혹자는 왈 이를 받는 자는 이를 받지 아니 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에 용인하지 못할 바라 하니 이는 오해가 극심함이로다.

아마도 병합이 병합에 의한 것이라 함은 그 일을 아직 정하지 못한 때에 담론하면 가능하거니와 그 일이 이미 정해진 후에 미치면 이를 담론함은 불가하도다. 일한이 합병하여 하나가 되어 제국을 구성하였으니 제국 이외에 조선이 없고 조선을 제하면 제국의 정체를 이루지 못할지니 그간에 하등 구별이 있으리오. 또한 이번에 영작을 받음은 그 사람이 병합의 일에 간여하여 공로가 있다 함이 아니오, 이왕가의 족척이 되며 혹자는 그 일본에 공로가 있음을 위함이니 신 대일본제국이 구한국의 오랫동안 쌓은 덕과 이전의 공(宿德前功)을 표상(表賞)함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의외의 성사라 할지라도 이번 그 합병으로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구한국의 숙덕전공(宿德前功)이 바로 대일본제국의 숙덕전공(宿德前功)이오. 하물며 상호간에 우러러 보는 바를 표현(表顯)함은 바로 제국신

민에게 영예를 보태는 바이니라. 고로 우리는 이번에 구구절절한 담론하는 자를 보고 심히 대략 우매함을 일소(一笑)하노라. (미완)

〈출전 : 朝鮮貴族 『毎日申報』, 1910년 10월 29일〉

[3-2]

유사이래의 사서를 고찰하건대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여하한 국가, 여하한 시대에 영 전총작(榮典寵爵)의 제도가 없으리오마는 특히 그 시세와 경우를 따라 각기 형식이 같지 않을 뿐이라.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그 형식의 다름이 점차 한 가지 법도에 귀결되는 경향이 있더니 금일에 화족제도는 천하만국이 대략 서로 같음을 보는 도다.

이는 국제관계가 더욱 더 친밀하고 국민간 공사(公私)의 교제 또한 대단히 크고 많아짐으로 그 제도도 만국공통적인 것에 이르렀으니 이는 필연적인 추세(勢所必至)이다. 종전에 제정한 조선귀족령은 바로 만국보통전장(萬國普通典章)에 의거하여 절충 제정한 것이오, 동령 제5조에 의거하면 ‘유작자는 그 작에 상응하여 화족령에 의하는 유작자와 동일한 예우를 향유한다’ 하였으니 이는 다만 우리 제국 내의 사정에 그침과 같으나 우리 제국의 예우는 세계 만국과 그 전장(典章)이 모두 동일한즉 조선귀족은 이에 의거하여 또한 전 세계에서 그 영예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즉 조선귀족의 광영이 중외에 보급할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군더더기를 다시 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 바이거니와 이번에 그 책임 역시 중대하다는 점을 논급하고자 하노라. 대저 귀족이나 혹은 화족이라 명칭하는 일 계급은 물론 어떠한 나라에서도 그 역사를 대표하며 그 공적을 표시한 것인즉 세인의 우대를 받는 동시에 그 의표될 자격을 보전하지 아니하지 못할 지니 다시 말해, 그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성의로써 국민을 지도함에 족하고 그 지성과 덕의로써 사회의 사범됨에 족하여야 비로소 그 우대를 저버리지 아니함이라. 이르노니 이번에 새로이 우열(優列)에 승서(陞敍)된 조선귀족이 바로 대일본제국 전부에 대하여 그 우대를 보답하는 자됨은 이미 논의할 여지가 없는 바이거니와 친히 반도상에 서식하는 다수 신민을 위하여 항상 솔선 지도하는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명심할 바인 고로 우리는 그 책임의 심히 중요한 이유를 논급하였노라. (미완)

〈출전 : 朝鮮貴族(續), 『毎日申報』, 1910년 10월 30일〉

[3-3]

종전에 조선귀족령이 발포되고 8월 31일에 우리 화족총대를 궁중으로 초청하여 칙어를 하사하셨는데 그 큰 뜻에 왈 화족은 사민(士民)의 상위에 거하였은 즉 마땅히 복장을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여(履操端肅) 세상의 의표가 되기 위해 노력할지오. 연마하고 삼가 근면하여서(砥礪恪勤) 갖은 정성을 다하되(報效) 항상 몸소 행함을 돌아보고 언행을 삼가 하여 감히 실추를 하지 않아야 함을 단단히 결심할지어다 하였으니 이는 실로 제국 화족된 자의 숙야복옹(夙夜服膺)²⁵⁾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拳拳弗失) 중요한 도리이다. 비록 이일이 어찌 일본 화족 뿐이라 이르리오. 조선귀족 또한 그 도를 가슴깊이 새겨야할 자라 하노라.

또한 영국 기타의 귀족을 보건대 그 자력(資力)이 인민 가운데 빼어나고 그 학문 재간이 또한 우수한 자이어서 정치상에 관한 일로부터 사회만반의 일에 이르기까지 오직 귀족이 담당하는 풍조가 있으니 속된 말(俚語)에 정사는 귀족의 남자가 이를 담당하고 종교 및 자선사업은 귀족의 여자가 이를 담당한다 함은 선(善)이 영국사회의 상태를 형용한 것이라 이를지로다. 그러므로 이는 그 국정에 의한 것이오, 세계 만국이 모두 당연함이 아니라.

현재 우리 본토에는 공가(公家), 무가(武家) 화족으로 정치계나 혹은 사회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자가 심히 희소함은 결국 아국의 역사와 밀접한 때의 정세와 형편이 그리 되도록 한 바인 즉 지금까지 돌연히 영국의 귀족을 배워가기 어려운 바이나 조선귀족에 이르러서는 그 지위와 성망(盛望)과 자력(資力)이 모든 사민(士民) 가운데 탁월한 자가 있으니 이제 연마하고 삼가 근면하여서 그 힘을 다하면 그 정치상 및 사회상에 관한 일은 자연히 귀족으로 집중하여 우리 본토의 공가무가화족(公家武家華族)에 비하면 훨씬 더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니 이는 다시 용의(容疑)하지 아니하는 바이오, 또한 반도신민으로 논할지라도 그 자력과 성망과 지위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솔선 지도 함을 받으면 심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지니 그 학문 기술의 진보와 위생 교육 및 자선 등 제 사업의 정비를 꾀하는 자가 이 귀족을 개의하지 않고 다시 얼마나 구하리오. 고로 우리는 조선귀족에게 치중하여 그렇게 분발해서 정신을 가다듬어(發憤勵精) 요구하는 이유이다. (완)

〈출전 : 朝鮮貴族(續), 『毎日申報』, 1910년 11월 1일〉

25)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을 말한다.

4) 곤궁한 조선귀족, 창경원 매각을 책동(기사)

- 당국은 사건 경과를 주목 중, 문제 다단한 이왕직의 최근

조선귀족의 생활 궁박은 해가 갈수록 심하여 최근에는 거의 극에 달하였는 바 그 중에는 아침을 먹으면 저녁을 걱정할 만큼 곤란한 데도 상당히 있는 바 요사이 궁박에 빠진 귀족들은 연명하고자 각 방면으로 운동 중인 바 작년 봄에 일부 귀족 중에서 연서로 내각에 대하여 이왕직 소관의 창경원(昌慶苑)을 매각하면 140만 원은 될 터요, 다시 황금정(黃金町) 귀족회관(貴族會館)을 15만 원에 팔아서 동경의 화족회관(華族會館) 지부를 설치하고 이것을 조선귀족회관에 충당하여 약 150만 원으로써 곤궁한 귀족을 구하여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더니 요사이 이왕직에는 재정경리의 목적으로 전기 창경원의 경영 일체를 이관한다는 풍설이 이왕직 관계자 귀족 중에서 흘러나왔으므로 일부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그 전 계획과 같이 실현하자고 목하 운동하는 모양이므로 당국자는 극비밀리에 조사 중이라더라.

〈출전 : 곤궁한 조선귀족 昌慶苑 賣却을 策動, 『毎日申報』, 1926년 8월 18일〉

5) 조선귀족(1944)

한일병합 당시 1910년 8월 29일, 황실령 제14호로 조선귀족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작위(爵位)는 화족령(華族令)과 마찬가지로 공(公), 후(侯), 백(伯), 자(子), 남(男)의 5등급이다. 작위를 받은 유작자(有爵者)와 특정 가족은 모두 '조선귀족'의 족칭을 보유한다.

작위는 이왕가의 혈족으로 황족의 예우를 받는 자 및 그 가문 혹은 공로가 있는 한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귀족령에 의한 유작자(有爵者) 및 귀족은 화족령에 의한 유작자 화족과 동일한 예우를 받고 징계처분도 마찬가지이다.

1. 현재의 귀족

제도가 제정됨과 동시에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작을 수여함(依朝鮮貴族令授○爵)'의 형식으로 수작의 은명(恩命)을 입은 자는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으로 총 76명이었으며 현재는 후작 7명, 백작 3명, 자작 17명, 남작 31명 총 58명으로 감소

했다. 공작은 한 명도 수여받은 적이 없다.

후작(侯爵)

현재 유작자 및 관직	습작대수 (襲爵代數)	수작년도	수작자	수작자 이력
이해창(李海昌)	1	1910년	이해창(李海昌)	전 의양군
이해승(李海昇) 귀족회장, 창복회 이사	1	1910년	이해승(李海昇)	전 청풍군
이달용(李達鎔) 왕공족심의회 위원	2	1910년	이재완(李載完)	전 완순군
이병길(李丙吉) 귀족회 이사, 중추원 참의	2	1910년 백작, 1920년 후작	이완용(李完用)	전 총리대신
윤의섭(尹毅燮)	2	1910년	윤택영(尹澤榮)	전 해풍부원군
박찬범(朴贊汎) 총독부 촉탁	2	1910년	박영효(朴泳孝)	전 금릉위
이덕용(李德鎔)	2	1910년	이재각(李載覺)	전 의양군

백작(伯爵)

현재 유작자 및 관직	습작대수 (襲爵代數)	수작년도	수작자	수작자 이력
송종현(野田鐘憲, 노다 아츠 무켄) 창복회 위원	2	1910년 자작, 1920년 백작	송병준(宋秉畯)	전 내부대신
이영주(李永柱)	2	1910년	이지용(李址鎔)	전 내부대신
고중덕(高重德)	4	1910년 자작, 1920년 백작	고영희(高永喜)	전 내부대신

자작(子爵)

현재 유작자 및 관직	습작대수 (襲爵代數)	수작년도	수작자	수작자 이력
이해국(李海菊)	2	1910년	이재곤(李載崑)	전 학부대신
이기용(李琦鎔)	1	1910년	이기용(李琦鎔)	전 완림군
이창훈(李昌薰) 귀족회 이사 겸 간사	2	1910년	이근택(李根澤)	전 군부대신
이홍목(武田光盛, 다케다 미 츠모리)	2	1910년	이병무(李秉武)	전 군부대신

이규원(李圭元) 귀족회 부회장, 창복회 위원	2	1910년	이하영(李夏榮)	전 외부대신
임선재(任宣宰)	3	1910년	임선준(任善準)	전 내부대신
박부양(朴富陽) 군수	2	1910년	박제순(朴齊純)	전 참정대신
민병삼(岩村德太郎, 이와무라 도쿠타로)	2	1910년	민영규(閔泳奎)	전 의정대신
민홍기(閔弘基)	2	1910년	민병석(閔丙奭)	전 궁내대신
권태환(權泰煥) 귀족회 이사	2	1910년	권중현(權重顯)	전 농상대신
민형식(閔炯植)	2	1910년	민영휘(閔泳徽)	전 보국(輔國)
김호규(金虎圭) 총독부 촉탁	2	1910년	김성근(金聲根)	전 참정대신
이택주(李宅柱)	2	1910년	이완용(李完鎔)	전 종정원경
조용호(趙龍鎬)	3	1910년	조민희(趙民熙)	전 승녕부총관
윤강로(尹強老)	2	1910년	윤덕영(尹德榮)	전 보국(輔國)
조원홍(趙源興)	3	1910년	조중옹(趙重應)	전 농상대신
이종승(李鍾承)	3	1910년	이근명(李根命)	전 의정대신

남작(男爵)

현재 유작자 및 관직	습작대수 (襲爵代數)	수작년도	수작자	수작자 이력
이항구(李恒九) 이왕직 장관, 창복회 감사	1	1924년	이항구(李恒九)	이완용 차남
남장희(南章熙)	2	1910년	남정철(南廷哲)	전 내부대신
김덕한(金德漢)	2	1910년	김학진(金鶴鎮)	전 대제학
정천모(鄭天謨) 군속	2	1910년	정한조(鄭漢朝)	전 장례원경
이완종(宮村完一, 미야무라 칸이치) 지례면장	3	1910년	이건하(李乾夏)	전 내부대신
박서양(朴敍陽) 귀족회 이사, 창복회 위원	2	1910년	박제빈(朴齊斌)	전 승녕부 부총관
장인원(張寅源)	2	1910년	장석주(張錫周)	전 법부대신
김영수(光山, 미습작) ²⁶⁾	3	1910년	김영철(金永哲)	전 시종경

26) 사후 습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동훈(李東薰)	2	1910년	이근호(李根皓)	전 법부대신
이능세(李能世) 귀족회 이사	2	1910년	이정로(李正魯)	전 판돈녕
이중환(李重桓) 귀족회 간사	2	1910년	이용태(李容泰)	전 내부대신
민건식(閔原健植)	2	1910년	민영기(閔泳綺)	전 탁지대신
박경원(朴經遠)	2	1910년	박용대(朴容大)	전 법부대신
최정원(崔正源)	2	1910년	최석민(崔錫敏)	전 내장원경
김세현(金世顯)	2	1910년	김종한(金宗漢)	전 판돈녕
김석기(金奭基)	2	1910년	김사철(金思轍)	전 규장각제학
이풍한(李豐漢)	2	1910년	이종건(李鍾健)	전 군부대신
민영옥(閔泳頃)	2	1910년	민상호(閔商鎬)	전 의정부찬정
이인용(李寅鎔)	2	1910년	이재극(李載克)	전 궁내대신
김정록(金正祿)	3	1910년	김춘희(金春熙)	전 시종장
성일용(成一鏞)	3	1910년	성기운(成岐運)	전 농상대신
이창수(李彰洙)	3	1910년	이용원(李容元)	전 학부대신
조중구(趙重九) 농립성 농사시험장 촉탁	2	1910년	조동윤(趙東潤)	전 동궁무관장
조중현(趙重獻)	2	1910년	조동희(趙同熙)	전 농상대신
한상억(韓相億)	3	1910년	한창수(韓昌洙)	전 서기관장
이장훈(李長薰)	2	1910년	이근상(李根湘)	전 궁내대신
이병옥(李丙玉) 총독부 촉탁	2	1910년	이윤용(李允用)	전 궁내대신
민태곤(閔泰崑)	4	1910년	민종묵(閔種默)	전 내부대신
이경우(大森卿弘, 오모리)	3	1910년	이주영(李胄榮)	전 오춘군(鰲春君)
박정서(朴禎緒)	3	1910년	박기양(朴箕陽)	전 비서경
이홍재(李弘宰)	4	1910년	이봉의(李鳳儀)	전 완성군

2. 원(元) 귀족

지금까지 작위를 받은 자는 77명에 이르렀는데 그 중 조선귀족령 제13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해 영광스러운 작위를 상실한 자는 이하 19명이다.

작위	유작자	실작년도	실작이유
남작	김녕(金寧) ²⁷⁾	1911년	조선귀족령 제11조
남작	윤용구(尹用求)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홍순형(洪淳馨)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한규설(韓圭商)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유길준(俞吉濬)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민영달(閔泳達)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조경호(趙慶鎬)	1912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윤치호(尹致昊)	1913년	조선귀족령 제16조
남작	조정구(趙鼎九)	1913년	조선귀족령 제17조
남작	조희연(趙羲淵)	1915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김사준(金思濬)	1915년	조선귀족령 제16조
백작	민영린(閔泳璘)	1919년	조선귀족령 제20조
자작	이용직(李容植)	1919년	조선귀족령 제20조
자작	김윤식(金允植)	1919년	조선귀족령 제20조
남작	김병익(金炳翊)	1921년	조선귀족령 제11조
남작	김가진(金嘉鎮)	1923년	조선귀족령 제11조
남작	민형식(閔炯植)	1931년	조선귀족령 제11조
자작	민충식(閔忠植)	1933년	조선귀족령 제11조
남작	정두화(鄭斗和)	1939년	조선귀족령 제11조

〈출전 : 『恩賞考』, 晴南社創立事務所, 1944년, 100~106쪽〉

27) 김녕(金寧)이라는 조선 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V

1부

II. 조선귀족의 단체

1. 조선귀족회(朝鮮貴族會)

1) 귀족회 조직(기사)

조선귀족 제씨(諸氏)는 금회 귀족회를 조직하는데 그 취지는 위로 지존(至尊)에 대하여 귀족된 책임을 다하고 아래로 일반 인민의 모범을 보일 계획이라더라.

〈출전 : 貴族會組織, 『海洋研究所報』, 1911년 3월 28일〉

2) 망국귀족회(기사)

9월 9일 하오 2시에 박영효, 이완용, 민영휘 등 20명의 귀족들이 대동구락부에 모여 개회식을 행하였고 제일 구역질나는 것은 회장 박영효의 개회취지 설명이라. 소위 황실의 번병(藩屏)이라 사민의 사표라 하는 것이 그 양심이 어찌 부끄럽지 아니할까.

〈출전 : 亡國貴族會, 『新韓民報』, 1911년 10월 4일〉

3) 조선귀족회(사설)

조선귀족 제(諸) 공(公)은 이번에 귀족회를 조직하고 지난 22일에 그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제 공이 이 회를 조직한 이유는 동족간의 친화를 도모하여 위로는 황실의 번병(藩屏)이 되고 아래로는 민중의 의표(儀表)가 되며, 상신상의(相信相倚)하여 귀족된 면목을 발휘하고자 함이라 하니 제 공이 과연 이 목적으로써 이 회를 설립하였다 하면 나는 제 공을 위하여 이 회가 지극히 유익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제 공이 때때로 회합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귀족으로 사회에 임하여 그 처할 도리를 연구하면 스스로 그 품성도 고결(高潔)하게 될 터이니 만약 제 공 중에 귀족된 체면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귀족회는 이에 대하여 적당한 제재를 가할지니 이와 같이 자연히 그 누풍(陋風)¹⁾을 제거함을 얻을 수 있으리로다. 귀족회의 조직은 풍교(風敎)²⁾를 유지함

에도 자못 유효함이니, 제 공이 실로 동족의 체면을 유지하여 황실에 충절(忠節)을 완전하게 하고 민중의 의표가 되고자 하는 각오가 있으면 귀족회의 조직은 결코 도연(徒然)한 것이 아니로다.

다만 내가 제 공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자 하는 바는 함부로 영작(榮爵)을 과시하여 민중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니, 유래로 조선의 양반은 맹목존대(妄自尊大)하여 인민 보기를 십개(十芥)와 같이 하고 걸핏하면, 즉 약자를 능욕하는 누풍이 있어 이로써 민중의 원부(怨府)³⁾가 되며, 또 상류사회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하여 탐주기화(耽酒嗜花)⁴⁾함으로써 영예와 같이 생각하고 인민의 고혈(膏血)을 짜서 그 일생을 방일음탕(放逸淫蕩)으로 보내는 자가 많도다. 그러므로 유래로 조선의 양반은 민중의 의표(儀表)가 아니요, 민중을 고민하게 하는 마족(魔族)이라. 금일 귀족 제 공 중에는 이러한 양반이 결코 없다 할지라도 여러 해 쌓인 누풍이 걸핏하면 제 공을 엄습할 염려가 없지 않으니, 제 공이 깊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유래의 누풍에 빠지기 쉽도다. 제 공은 상호 경계하고 상호 근신하며 맡은 일에 전력을 다하고 경주하여 귀족된 면목을 발휘하여야 비로소 수작(授爵)의 성은(聖恩)에 보답함이라 할 수 있거늘 만약 존대거오(尊大倨傲)⁵⁾하여 그 귀족됨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듯한 일이 있다면 사회의 질타를 받을 뿐 아니라 귀족회는 민중의 주부(呪府)⁶⁾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성상폐하(聖上陞下)께옵서 특히 제 공을 귀족에 반열(班列)케 하신 뜻이 아니니, 귀족 된 제 공은 상시 절절시시(切切偲偲)⁷⁾하여 성은에 보답할 단심(丹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로다.

〈출전 : 朝鮮貴族會, 『毎日申報』, 1912년 1월 24일〉

1) 더럽거나 천한 풍속을 뜻함.

2) 교육이나 정치의 힘으로 백성을 착하게 가르친다는 뜻.

3) 대중의 원한이 쏠리는 단체나 기관을 뜻함.

4) 술을 탐하고, 기생을 희롱하며 즐긴다는 뜻.

5) 벼슬이나 학식이 높고 크다고 해서 성격이나 태도가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뜻.

6) 대중의 저주가 쏠리는 단체나 집단을 뜻함.

7)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한다는 뜻.

4) 귀족과 삼림경영(기사)

- 귀족회관에서 혼다(本多) 임학박사 강화(講話)

조선귀족회에서는 목하 입경 중인 혼다(本多) 임학박사를 초빙하여 20일 오후 4시 반부터 귀족회관에서 강연회를 열었는데 내회자(來會者)는 백작 이완용, 자작 박제순, 자작 조중응, 조진태(趙鎮泰) 씨, 자작 윤덕영, 남작 조동윤, 남작 한창수, 남작 권중현, 사이토(齋藤) 영림창장(營林廠長), 간바야시(上林) 산림과장, 모토오카(本岡) 서기관, 구(具) 경무관 등 50여 명인데 혼다 박사는 ‘귀족과 삼림’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에 걸쳐 대요(大要)가 다음과 같은 강연을 하였더라.

▲ 공채증서(公債證書)의 이자

귀족은 국가의 명예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국가와 함께 영존(永存)하고 또 그 명예를 보유(保有)할 것이오 따라서 국가의 명예를 대표할 귀족의 체면을 유지함에는 이에 상당한 재산을 가질 것은 물론이니 이에 대하여 귀족의 세습재산(世襲財產)이 있음을 필요하다 하는 까닭이라. 종래로 귀족생활의 재원은 공채증서에 의하여 보전하는 것이나 원래 공채증서의 이자라는 것은 일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오 시세의 진보와 함께 이자의 인하(引下) 백배의 경영을 하는 것이 용이할지라. 구주에 있는 귀족 등이 근래 소작농업의 곤난함에 비추어 농업을 바꿔 삼림사업으로 옮기고자 함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시기에 대하여 조선귀족이 연합하여 보식원(普植園)을 설치하고 희망을 원대한 장래에 두고 활약함은 가장 유쾌히 생각하는 바이라 하노라.

〈출전 : 貴族과 森林經營, 귀족회관에서 本多 林學博士 講話, 『毎日申報』, 1915년 10월 23일〉

5)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

조선 총독부 미나미 지로(南次郎) 전(殿)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본 사단의 이사 중 후작 박영효(朴泳孝), 백작 고흥겸(高興謙) 두 명이 돌아가셔서(薨去) 이사 두 명을 보궐 선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동이 있어서 보고함.

신임이사 1940년 4월 30일 취임

경성부 계동정(桂洞町) 142번지
이사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명륜정(明倫町) 3정목(丁目) 2-21
이사 남작 박서양(朴敘陽)

경기도지사 사토 요시쿠니(甘蔗義邦) 전(殿)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회장 자작 민병석(閔丙奭)

본 범인 1940년도 예산서 별지와 같음을 보고함.

194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40년 4월 1일부터 1941년 3월 말일)

〈세입〉

과목	예산액(엔)		전년도 예산액(엔)		비교증감액 △은 감액(엔)		적요
회비금	1,224	00	1,236	00	△12	00	후작 7명 한 명당 4엔, 백작 3명 한 명당 3엔, 자작 17명 한 명당 2엔, 남작 31명 한 명당 1엔으로 함.
보조금	2,640	00	2,640	00	—	—	창덕궁 하사 월액 2백 엔 이건공가(李

							鍵公家), 이우공가(李錫公家)로부터 월액 각 10엔
농장수입	17,100	00	10,000	00	7,100	00	소유토지 수확고
유가증권 수익	582	00	300	00	282	00	조선신탁, 매일신보, 화신(和信)무역 주식회사 배당금
은행예금 이자	650	00	500	00	150	00	은행예금
잡수입	104	00	39	80	64	20	폐품매각, 기타
집세 (월세)	—		1,260	00	△1260	00	병원 및 창고 임대료
소계	22,300	00	15,975	80	6,324	20	—
무산 임업소	25,000	00	18,500	00	6,500	00	무산산림수입
전년도 이월금	339,574	53	16,854	20	322,720	33	예금, 특별당좌예금, 현금
계	386,874	53	51,330	00	335,544	53	—

〈세출〉

과목	예산액(엔)		전년도 예산액(엔)		비교증감 △은 감액(엔)		적요
급여	7,236	00	6,100	00	1,136	00	별지 참조
사무비	1,100	00	700	00	400	00	전화, 전등, 전신, 소모, 도서, 인쇄, 피복비
여비	2,000	00	2,000	00	—	—	회원대표 및 수행원 한 명 동경 왕복 기타
비품비	300	00	—	—	300	00	문방구, 사무탁자 및 의자
경조사비	2,300	00	2,000	00	300	00	경전, 조전, 신사(神社) 떡, 화환, 의연금
집회비	1,000	00	300	00	700	00	총회이사회, 친목회
세금	2,000	00	2,500	00	△500	00	토지건물에 관한 납세 및 기타
토지제물 영선(營繕)	2,500	00	3,500	00	△10,000	00	개답(開答), 전답 방축, 가옥 수리, 비료대 등
잡비	1,000	00	500	00	500	00	장소 임대(室賃) 용기 수선비 기타
유가증권	7,500	00	3,000	00	5,500	00	주권불입금(株券拂入金)
예비금	938	53	330	00	608	53	—
소계	27,874	53	19,930	00	7,944	53	—

건물	200,000	00	—	—	200,000	00	회관건물 및 부동산
토지	150,000	00	10,000	00	140,000	00	농장지소매입
예금	9,000	00	21,400	00	△12,400	00	세입예산의 잉여 예상액을 임시 지출 함.
계	386,874	53	51,330	00	335,344	33	—

〈급여액 내역〉

직원	인원수	월액		연액	
간사	2	160	00	1,920	00
서기	2	200	00	2,400	00
급사	1	20	00	240	00
소사	1	56	00	696	00
주방	1	45	00	540	00
상여	—	—	—	900	00
기증품(비용)	—	—	—	540	00
계	7	483	00	7,236	00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

경기도지사 사토 요시쿠니(甘蔗義邦) 전(殿)

이사 변경에 관한 보고

본 사단의 이사 중 후작 박영효, 백작 고흥겸 두 명이 돌아가셔서(薨去) 이사 두 명을 보궐 선거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이동이 있어서 보고함.

신임이사 1940년 4월 30일 취임

경성부 계동정(桂洞町) 142번지

이사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명륜정(明倫町) 3정목(丁目) 2번지 21

이사 남작 박서양(朴敍陽)

〈출전 : 社團法人朝鮮貴族會長 子爵 閔丙奭 理事變更ニ關スル報告, 1940년 5월 3일〉

6)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1940년 5월 17일

경기도지사

조선총독 전(殿)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한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으로부터 1939년도 사업상황을 보고 제출이 있어서 별지로 전달한다.

— 별지 —

1940년 5월 3일

사단법인 조선귀족회장 자작 민병석(閔丙奭)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전(殿)

법인 목적의 사업 상황, 전년도 중의 처리업무의 요목 및 전년도 중의 경비수입지출금액 및 그 비용항목에 관한 건

앞의 제목 건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법인의 목적인 사업의 상황

본회 정관 제1조 중 회원의 교육을 조성하여 학술, 기술의 연구와 함께 동 제4조 중 (1) 회보의 발행 (2) 학사장려금의 교부 (3) 귀족자제 학자 급여 (4) 학술연구 강연회, (5) 산업사상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본년도 총재산 528,562원 중 사무소의 부지 건물 전세금 및 산림의 통지예금(通知預金), 동산의 장부 가격 382,410원을 공제(控除)할 때는 소작수입을 주로 하는 전대답 가격 28,742원과 배당금 또는 이자를 주로 한다. 유가증권 및 특별당좌예금 17,409원으로 그 수입총액은 연 평균액 22,300원이다. 이에 임시수입을 합산하면 연액 22,500원에 지나지 않고 세출통상경비를 지변(支辨)⁸⁾하면 약 11,000원의 잉여액(剩餘額)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종래 본회는 고정자산을 가졌을 뿐 그 수입액도 근소했던 것에 의해 현재 고정자산의 정리 중에 있다. 기본 재산을 적립하여 그 수입실적을 계산하여 전기(前期)의 사업에 착수하려고 한다. 본년 중에 실시하기에는 어렵다.

– 전년 중 처리업무 요목

본회 정관 제20조에 의해 1939년 7월 31일 제17회 통상(通常) 총회에서 회무 보고를 하고, 1938년도 결산보고, 1939년도 예산을 승인했다. 이사 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정관 제24조에 의해 표결권의 과반수를 가지고 선거한 결과, 후작 박영효(朴泳孝), 후작 이해승(李海昇), 자작 이창훈(李昌薰), 자작 이규원(李圭元), 자작 권태환(權泰煥), 남작 이능세(李能世) 이사 6명이 전부 중임되었으며, 백작 고흥겸(高興謙) 1명이 이사로 당선되었다.

1939년 7월 구(舊)회관을 금 35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은 임시은행 예금으로 예입해 두었다. 본회 방침으로는 이 대금 중 회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잔액은 소작 수입을 주로 하는 토지를 사기로 하였다.

– 1940년 3월 말일 현재 재산목록 및 전년도중의 경비수입지출금 및 비용항목은 별지에 첨부한다.

– 회원 58명

이상

8) 빚을 갚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내주는 것.

193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 (1939년 4월 1일부터 1940년 3월 말일까지)

〈세입〉

과목	예산액(엔)		결산액(엔)		증감액 △은 증액(엔)		적요
각출금 (醸出金)	1,236	00	1,523	00	△287엔	00	매월 후작 4엔, 백작 5엔, 자작 2엔, 남작 1엔임. 미납으로 인해 부족. 419엔은 전년도분 수입고.
보조금	2,640	00	2,640	00	—	—	창덕궁 매월 200엔. 양 공가(公家) 각 10엔
잡수입	500	00	486	□□	13	47	은행예금이자 월세 소유지 수입 무산산림수입 유가증권배당금 기타수입
가수금 (假受金)	—	—	550	00	△550	00	간사 이구원 자작 거마비(車馬費) 및 기타 10엔
전년도 통장예금	11,194	125	11,194	35	—	—	통장예금
전년도 이월금	5,659	85	5,659	85	—	—	특별당좌예금 일구(一口)
회관매각 대금	—	—	350,000	00	△350,000	00	—
계	51,330	00	410,540	78	△359,210	78	—

〈세출〉

과목	예산액(엔)		유용액(엔)		결산액(엔)		증감 ▲은 증액(엔)		적요
급여	6,100	00	—	—	12,350	00	▲ 6,254	00	별지 참조
사무비	700	00	—	—	751	45	▲ 51	43	전화, 전등, 전신, 소모, 도서, 인쇄, 피복비
여비	2,000	00	1,799	55	200	65	—	—	소유지관리출장, 동경왕복 기타

토지건물 납세영선 (營繕)	6,000	00	1,403	55	3,435	25	1,161	22	제 세금, 건물수리, 보험, 토지관리비
집회비	300	00	—	—	154	60	145	40	총회 및 이사회비
적손금액 (吊典義損 金)	2,000	00	—	—	1,233	25	766	75	신□사제전(神□社 祭典), 향전의손금 (香典義損金)
잡비	500	00	—	—	533	87	33	87	수도료, □비(□費), 등기비, 기타
예금견입 고(預金見 込高)	21,400	00	21,400	00	—	—	—	—	예산과목 초월액 및 비품비 가불금은 예 비, 토지
지소 매입금	10,000	00	—	—	29,963	64	19,963	64	예금견입고□□(預 金見込高), 유가증권 과목에서 유용
유가증권	2,000	00	2000	00	—	—	—	—	지소매입(地所買入) 은 포천군 소흘면, 수원군 일왕면, 시흥 군 서이면, 평택군 북면 및 서탄면 토 지임
비품비	—	—	—	—	227	34	227	34	—
가불금	—	—	—	—	72	60	72	60	마산 주암농지비료 대 중
예비금	330	00	—	—	—	—	330	—	—
소계	51,330	00	26,602	88	48,926	63	2,403	37	—
양미 배급부	—	—	—	—	3,039	62	2,039	62	회원배급쌀값 대가 대(代假貸)임
건물	—	—	—	—	20,000	00	20,000	—	회관 건물 전세금
예금	—	—	—	—	330,105	00	33,0105	—	식산은행 사구(四口)
특별당좌 예금	—	—	—	—	9,159	53	9,159	33	한성은행 일구(一□)
현금	—	—	—	—	310	00	310	00	가용고(手許有高)
계	51,330	—	—	—	410,540	78	359,210	78	—

세입

예산액 금 51,330원

결산액 금 410,540원 76전

세출

예산액 금 51,330원

결산액 금 410,540원 78전

위 차액 계액 금 359,210원 78전

〈급여액 내역〉

직원	인원수	예산액(엔)	유용액(엔)	증감액(엔)	결산액(엔)	
간사	2	1인 각 720	00	—	—	480
					—	2명 총 1,200
					00	예산액 잉여고 1,726 엔을 유용하지만 6,254 엔을 초과하지 않음.
서기	2	2,880	00	1,200	00	—
금사	1	240	00	240	00	—
소사	1	660	00	24	00	—
주방	1	480	00	12	—	—
상여	—	800	00	230	—	—
증품비	—	320	00	20	—	—
퇴직금	—	—	—	—	7,500	00
					00	전(前) 간사 박해원 (朴海遠)에게 지급함
계	7	6,100	00	1,726	00	7,980
					00	12,354
					00	—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소관 재산목록 (1940년 3월 말일 현재)

자산부(資產部)

1. 부동산: 금 177,698원 82전

- 산림 9,652평(町) 7단(段) 함경북도 무산군 소재 산 285호
가격 28,956원
- 토지 90,842평(坪) 포천군 소흘면(蘇屹面) 무봉 농장(農莊) 총면적

- 내역 답(畠) 55,340평
 전(田) 32,885평
 대(垈) 2,617평
 가격 17,754원 38전
- 토지 66,964평 시흥군 신동면 우민농장 총면적
 내역 답 51,719평
 전 12,023평
 대 1,552평
 임야 1,670평
 지상건물 초가(草葺) 26간반(間半)
 가격 21,255원 40전
 - 토지 38,393평 시흥군 과촌면 주암 농장 총면적
 내역 답 51,227평
 전 7,166평
 가격 23,014원 50전
 - 토지 20,632평 수원군 일왕면 청계농장 총면적
 - 토지 16,628평 시흥군 서이면 청계농장 총면적
 내역 답 35,306평
 전 1,844평
 대 110평
 지상건물 초가 13간(間)
 가격 36,438원 47전
 - 토지 22,392평 수원군 성호면 동탄면(東灘面) 오산농장 총면적
 - 토지 25,909평 평택군 북면 서탄면(西炭面) 오산농장 총면적
 내역 답 33,961평
 전 11,343평
 대 2,997평
 가격 30,280원 3전

- 건물 대(岱) 211평 경성부 관철정(貫鐵町) 142번지 본회 사무소
지상건물 전부 전세
가격 20,000원
- 동산 금 350,864원 15전
- 책상 5개, 긴의자 4개, 병렬의자 16개, 중국(支那)의자 35개, 식당 탁자 7개, 모자 걸이 3개, 거울 달린 세면대 1개, 환탁자(丸卓子) 2개, 차(茶)탁자 2개, 차상자 1개, 책장 3개, 서류상자 1개, 난로 3개, 본립(本立) 1개, 책꽂이 1개, 벽걸이 시계 3개, 서적 178권, 사진액자 2개, 전화 1대, 금고 2개, 등사판 2개, 식기함 2개, 장부상자 1개, 자전거 1대, 번호기 1대, 대저울(大木枰) 4개, 작은 저울(中木枰) 2개, 토다호(戸田號) 족답(足踏) 선풍기 2개, 토다호 수동(手廻) 선풍기 2개, 쇼와호(昭和號) 족답 선풍기 2개, 쇼와호 수동 선풍기 1개, 서양요리그릇 약간. 총 가격 1,000원

2. 유가증권

- 조선신탁주식회사 500주(五百株)
가격 6,250원
- 매일신보주식회사 30주
가격 750원
- 화신무역주식회사 100주
가격 1,250원

3. 양미(糧米) 칠부도미(七分搗米) 96입(兜)

가격 2,039원 62전

4. 현금

1. 330,105원 통장예금 계좌 4
2. 9,159원 53전 특별당좌예금 계좌 1
3. 310원 보유 현금

이상 합계 528,562원 97전

이상

〈출전 : 京畿道知事, 法人ノ設立及監督ニ關スル件, 1940년 5월 17일, 국가기록원 소장〉

7) 무산군 소재 귀족회 소유 임야 경영방침 보고

귀(貴) 제37호

1941년 10월 3일

조선귀족회장

조선총독부 농림국장 전(殿)

본회 소유 무산 산림은 1932년부터 1941년까지 10년간 회령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에 매각 계약 중에 본년도 만기가 됨에 따라 장래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본회에서 처분하는 조사를 마쳐 총독 각하에게 경과상의 결정여부와 지금까지의 산림처분을 실시할 방침에 대해 보고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산림 매수를 희망하는 자 상당수가 본회의 방침을 잘 알지 못하므로 지방에서 상경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운동하는 자도 있는데 유감천만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하므로 수고스럽지만 본회의 방침에 대한 설명을 깊이 숙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겉봉투〉

조선 총독부 농림국장 전(殿)

경성부 송인정(崇仁町) 81번지

조선귀족회

〈출전 : 茂山郡所在貴族會所有林野ノ經營方針申請ノ件, 1941년 10월 3일, 국가기록원 소장〉

8)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귀 제18호

1942년 4월 8일

회령영림창장(會寧營林廠長)

조선귀족회 촉탁

조선총독 전(殿)

귀족회 모범림에 관한 건

사단법인 조선귀족회 소유 임야에 관해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기(記) —

1. 사업의 경과

국유림지 시설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조선합동탄광주식회사와의 연기(年期) □□ 폐약(弊約)에 대해 1941년 10월 8일 실지조사를 완료, 1941년도분 5,907입방 1, 대금 48,978원을 완납했고, 이와 함께 □□를 마치고 3월 27일로 별목작업을 종료하여 재목을 운반하여 쌓는 일을 실행중임.

연기비(年期費) □□약은 아래의 인도분으로(1941년도) □□ 완료함.

2. 교부금액 및 교부방법

(1) 총 금액

수입(원)		지출(원)		송금액(원)		잔액(원)		비고
60,005	49	3,427	95	50,000	00	6,577	44	—

(2) □□방법

대금납입□(12월 31일부) 귀족회 장소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產銀行) □□에 □금□.

수지(收支) 내역

1. 총수입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요
전기(前期) 이월금	3,466	05
예탁 금리	151	34
나무 처분 대금	48,978	00
계	52,595	39

2. 총보증수입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요
보증금	7,410	00
계		

3. 총지출금

비목(費目)	금액(원)	적 요
봉금 및 월급, 여비	751	74 1인분
차□료(借□料)	60	00 사무소용
산불방지비용	75	00 봄, 가을 산불주의, 경계를 위한 순찰인건비
출장여비	340	81 수목처분조사, 임야순시출장여비
잡비	72	00 삼림보호조합기부, 기타비용
상여	196	00 서기(書記)에 관한 상여
순시원비	155	00 전임 순시 인부 고용, 임야 순찰비
물품구입비	78	90 비품 및 소모품구입
경계 보수비	42	50 경계명시를 위한 인건비
인건비	90	00 임산물 처분 조사 보조인건비
연말 사례금	340	00 촉탁위로금 및 경찰관사례금
임야세	926	00 ○○면 605원 18, 수북면 320원 82
○○○	300	00 하라(原) 촉탁 퇴직수당
계	3,427	95

〈출전 : 貴族會模範林ニ關スル件, 1942년 4월 8일, 국가기록원 소장〉

2. 조선임업조합 보식원(普殖園, 朝鮮普殖園組合)

1) 보식원 설립 관련기사

[1-1]

귀족 보식원 설립

경향(京鄉)을 막론하고 각 관아(官衙) 및 공서(公署)에서 일반 인민을 감독, 지휘하여 식림사상(植林思想)을 고취, 실시함은 일반도 다 아는 바이거니와 귀족 중 민병석(閔丙奭), 윤덕영(尹德榮), 송병준(宋秉畯), 한창수(韓昌洙), 기타 모모 씨 등이 협력하여 동대문 밖 홍수동(紅樹洞) 부근에 광대한 지단(地段)을 선정하여 보식원을 설립하고 각종 삼림(森林)을 종식(種植)하여 일반 인민으로 하여금 모범을 일으키게 할 뿐 아니라 장래의 거대한 이익을 도모할 터이라더라.

〈출전 : 貴族普殖園設立, 『毎日申報』, 1913년 5월 31일〉

[1-2]

청량리의 보식원, 귀족 여러분의 좋은 사업, 청량리의 보식원을 설립

이미 본보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귀족 중 윤덕영, 민병석, 송병준, 한창수, 기타 모모 씨 등이 협의 발기하여 동대문 밖 홍수동 등지에 보식원을 설립한다는 말은 모두 아는 바 이거니와 추후 다시 상세한 내용을 들은즉, 윤덕영 씨의 소유 이천 평이나 되는 지단이 경성부 인창면(仁昌面) 청량리(淸涼里) 부근 동양척식회사 창고 뒤 산록에 있는 바 각종 삼림 종식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지단을 이용하여 일반 인민의 모범적 보식원을 대대적으로 설립하기로 작정하고 바로(近近) 공역에 착수하기로 준비 중인 바 일변 범위를 널리 계획하여 각 도에 1개소씩 배설하기로 또한 결정하였다더라.

〈출전 : 清涼里의 普殖園, 『毎日申報』, 1913년 6월 3일〉

[1-3]

보식원 창립총회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자본금 20만 원으로 다수 조선귀족의 기획에 의한 조선보식원 조합(朝鮮普植園組合) 창립총회는 2일 남산정(南山町) 송 자작 자택에서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합 정관 및 역원 선거를 하였는데 당일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더라.
자작 송병준, 백작 이완용, 남작 이재극, 자작 조중응, 후작 박영효, 자작 민병석,
남작 조동윤, 자작 윤덕영, 민영찬, 심상익, 기타 수명

〈출전 : 普植園創立總會, 『毎日申報』, 1913년 7월 4일〉

[1-4]

귀족 보식원 역원

과반(過般) 조선귀족단(朝鮮貴族團)은 식림사업 경영의 목적으로써 보식원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역원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행하였더라.
조합장 박영효, 부장(副長) 윤덕영, 간사 이완용, 동 송병준, 동 조중응, 동 윤택영,
동 심상익, 상의원장(常議員長) 민병석

〈출전 : 貴族普植園役員, 『毎日申報』, 1913년 7월 9일〉

2) 보식원의 사업과 경영 관련기사

[2-1]

귀족단의 식림 경영, 우선 1만 5천 정(町) 식림

조선귀족의 공동경영에 의한 조선임업조합 보식원은 18일 오후 1시부터 황금정(黃金

町) 귀족회관서 통상총회(通常總會)를 열었는데 출석자는 백작 이완용, 후작 이재각, 자작 윤덕영, 이윤용, 김춘희 양 남작, 기타 십수명이오, 전무간사(專務幹事) 남작 한창수가 사무 보고한 후 정관의 개정을 부의(附議)하여 이왕직(李王職) 대표자 임(林) 회계과장으로부터 동원(同園)의 경영방법에 대하여 희망을 설명받고 동 5시에 산회하였는데 원래 동원은 전(前) 산림과장 사이토 오토사쿠(齋藤音作) 씨 종용 하에 창시(創始)한 것으로 중요한 조선귀족은 대개 가입하여 자본금 10만 원인데 이왕가(李王家)는 500주(株), 이준공(李浚公) 100주, 이강공(李岡公)은 50주를 인수하였고 총독부 원호 하에 조선모범 조림(朝鮮模範造林)을 경영하고 임업발전의 촉진에 자(資)코자 하는데 원 이시가와현(石川縣) 기사(技師) 엔도 야스타로(遠藤安太郎)를 기사장(技師長)으로 하여 우선 1만 5천 정보(町步)의 식림(植林)을 할 예정이오, 또 동(同) 사무소는 묘포(苗圃) 경영 관계상 동대문 밖 청량리에 두었는데 사업의 진보와 동시에 종종 불편을 느끼므로 이번에 귀족회관의 일부로서 그 사무소에 충용(充用)한다더라.

〈출전 : 貴族團의 植林 經營, 假善 一万 五千町 植林, 『毎日申報』, 1915년 9월 21일〉

[2-2]

보식원 10주년 기념

재단법인 보식원에서는 창립 10주년에 상당함으로써 오는 24일 대구 보식원 지부에서 기념회를 개최한다는데 당일은 경성에서는 후작 이완용, 와타나베(渡邊) 고등법원장, 오츠카(大塚) 내무국장과 기타 다수가 입장(臨場)할 터이라더라.

〈출전 : 普植園十週紀念, 『朝鮮日報』, 1921년 4월 12일〉

[2-3]

귀족의 기념식수(紀念植樹), 보식원의 기념식수 거행

화창한 춘광이 산과 들에 흐르는 13일에 조선귀족의 임업조합인 보식원에서는 관악산의 식림지에서 기념식수를 행하였더라.

오전 열한시에 이재각, 윤택영의 두 후작, 이완용 백작, 민병석, 윤덕영, 이재곤, 권중현의 네 자작, 조동윤, 이윤용, 한창수의 세 남작 등을 위하여 마츠나가 경기도장관, 고쿠부 이왕직 차관, 사이토 오토사쿠 씨, 곤노 기사 기타 30여 명의 일행은 조선귀족회관에 집합하여 엔도 보식원 주임의 선도로 여섯 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식수할 땅으로 향하였다. 교외의 춘풍은 벚고 □ 벼들싹을 날리는 아래 연도의 이민은 일행을 위하여 도로의 수리를 하는 사이로 진행하여 시흥군서 이면사무소에 휴게한 후에 안양역의 동편 약 5리 되는 관악산 서록의 식수지에 도착하였다. 평시에는 시문에 붓을 잡던 손으로 활발히 (지)팡이를 잡고 귀족 제공이 몇 개의 벚꽃을 심기 시작한즉 원기 좋은 담소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중에 일행은 이마의 땀을 씻으면서 군막 안에서 오찬을 맞추었다. 이 부근의 백성들은 보식원의 식림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조합을 설시하여 있는데 이 조합의 소임들은 일행의 환영을 위하여 많이 모였는데 마츠나가 도장관, 사이토 씨, 윤덕영 자작은 그들에게 식림사업의 필요한 일과 유망한 일을 간곡히 훈유하고 보식원으로부터 장려금을 증여한 후에 면사무소에서 휴게한 후 각기 토산의 묘목을 가지고 반수는 다시 자동차로, 반수는 오후 7시 20분 남대문 도착의 열거로 경성에 돌아왔다.

〈출전 : 貴族의 紀念植樹, 보식원의 기념식수 거행, 『毎日申報』, 1918년 4월 16일〉

[2-4]

습격을 받은 보식원 출장원

조선귀족단(朝鮮貴族團)으로 조직하여 경영되는 경성 황금정(黃金町) 2정복(二丁目) 보식원 에서는 당국에서 불하를 받아서 식림을 경영하는 중인데 경상북도 경주군 내 국유림에 대하여 지난 19일에 조사하고자 일본순사 1명을 호위하게 하고 출장한 보식원 서기(書記) 오가(大賀)는 순사와 같이 관계 지방민의 습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는데, 아직 상세한 보도는 접하지 못하였으나 짐작하건대 지방민이 국유림 불하에 관하여 귀족 측을 반감케 하자□ 점에서 나온 폭거인 듯하다더라.

〈출전 : 襲擊을 受한 普植園出張員-경주에서, 『毎日申報』, 1920년 5월 22일〉

3) 한창수(韓昌洙), 삼림효용과 보식원

남작(男爵) 한창수(韓昌洙)

만주로부터 조선을 거쳐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자(旅行者)의 감상을 때때로 신문에 전하는바 일단(一端)의 만주여행을 할 때 차창에 비치는 풍물은 모두 적나라한 산이요, 일망(一望)하여 다시 눈을 즐겁게 할 것이 없는 데 반하여 배가 한 번 관문해협에 들어서면 눈 아래 비치는 것은 울창한 산용(山容)이므로 자연히 낙원에 노니는 듯한 감상을 일으키게 한다 함은 거의 일치한 □화(□話)라. 이를 볼 때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산이 높다고 귀한 것이 아니요 수목이 있음으로써 귀한 것이 된다 하는 격언이로다. 원래 산의 역사는 세계 각국도 대략 그 궤적을 하나 같이 하는 바 옛날에는 국토의 전부가 거의 삼림으로 덮여 있던 것인 고로 당시의 도민(徒民)은 삼림으로부터 과실을 얻고 들짐승을 사냥하여 생활하였으나 점차 인구의 증식과 인지(人智)의 발달에 따라 생존경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농업·목축업을 경영함에 이르러 삼림은 이들 생업의 개발에 수반하여 점차 그 구역□ 잠식되고 농경지 또는 목야(牧野)로 변하였으나 인구의 증가는 제한이 없고 토지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자연히 삼림은 그 당시 사회문명의 적으로 간주되어 불(火)과 도끼(斧)의 힘에 의하여 도처가 정복되어 농업, 기타 산업용지가 되었도다. 당연히 이 사회문명의 진보는 하루라도 그침이 없고 재목(材木) 수요는 서서히 전진하여 운반이 편리한 곳에서는 모두 벌채에 이용되므로 삼림은 점차 통행불편의 심상 유곡에만 잔존하게 되며, 목재의 시가는 그 운반거리의 원격(遠隔)에 따라 매년 등귀하는 상태에 이른지라. 이에 비로소 삼림이라는 것이 사회에 필요하여 하루라도 불가결할 것임을 점차 깨닫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즉 삼림산물(森林產物), 직접 소비되는 건축용재 및 신탄연료(薪炭燃料)는 사회가 발달, 진보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목재의 공급이 없으면 철도, 전신, 기타 문명적 공업시설은 하나라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에 인식된 바, 즉 삼림은 문명의 보호자라 하여 그 존재가 희망될 뿐더러 더 나아가 그 번영을 기약함에 이른 것이, 다시 말해, 현재의 상태라. 지금 삼림이 사회공중에 대체 어떠한 효용을 주는 것인가 하면, 그 효용을 직접 및 간접의 하나로 나눌 수 있으리라.

직접 효용이라 함은 삼림의 주산물 되는 목재, 신탄재가 사회에 주는 효용 및 부산물로서 낙지(落枝), 낙엽, 하초(下草), 수실(樹實), 수지균용(樹脂菌茸), 야수(野獸) 등 주산물을 제외한 일체 삼림산물이 주는 효용이라. 예컨대 금일 문명의 이기(利器)로 이용되는 철도, 기선(汽船), 전신, 전화, 전등, 신문, 잡지, 비행선, 비행기와 같은 것은 목재가

없고는 도저히 활동할 수 없는 것이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조석기와(朝夕起臥) 하는 가옥, 생명을 유지하는 식물의 흔분(忻焚) 및 기구(器具)의 징(徵)에 이르기까지 하나라도 삼림산물의 은혜에 입지 않은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만큼 삼림이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접의 효용이라 함은 삼림의 존재로 인하여 공리(公利), 공안(公眼)에 주는 효용이익을 말하는 것이니, 먼저 기후 관계에 있어서 삼림의 존재는 그 지방의 기온의 한열(寒熱)을 알게 하고 기후를 조화하여 우설(雨雪)의 양을 많게 하며, 강박(降雹)의 성립을 막아 피해를 줄이고 또 호우(豪雨) 때에 빗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의 피해를 줄이고, 혹은 과도한 습윤(濕潤)과 건조(乾燥)를 완화하는 등은 그 주요한 것이오, 또 농업지 및 도시촌락에 대하여 방풍(防風)과 방조(防潮)의 작용을 하며, 또 수원(水源)을 함양하여 수량을 윤택하게 하고, 강과 하천에 있어 어류와 수초의 번식을 돋고, 산야에 있어 토양의 붕괴와 하천의 유사(流砂)를 막아 국토를 보안하는 등의 효용이 있으며, 면(面)으로는 삼림은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미균(黴菌)의 발생을 방지하여 불건강지를 건강지로 만들어 위생상의 효과가 심대하며, 또 그 지방의 풍파(風波)를 증가시키고 풍속습관을 선량하게 하여 강건한 신체 및 강인한 정신을 기르는 등 그 효용이익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예로부터 고산지방에서 삼림남벌에 의하여 기상상의 변화를 야기한바, 편조편강(片照片降)의 원인이 되어 한발 또는 홍수의 재앙을 일으켜 농작물을 해(害)치고 인축(人畜)을 손상시킨 예가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올해 6월 남선(南鮮)에서 발생한 호우(豪雨)로 홍수의 피해는 또다시 기억함에 불구하고(不)한 일인 바 그 수원지방(水源地方)에 울창한 삼림이 없었던 것이 그 참해를 한 층 더 크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하리로다. 프랑스(佛國)에서 왕년에 세느강 상류의 무립목지(無立木地)에 대면적의 조림을 행함으로써 기후를 조화하고 수리(水利)의 운용을 진전시켜 산업의 발달을 촉진한 사실과 대조하면 스스로 생각할 바가 있으리로다.

이상은 삼림 효용의 일단을 서술한 것이나 이 외에 사회경제상에 미치는 영향도 자못 중대하니 지금 이를 공사(公私)의 양 방면으로 관찰하고자 함이라. 먼저 공경제(公經濟)에 대하여는 첫째 목재의 무역이니, 현재 서유럽 제국을 목재의 수출국 및 수입국의 둘로 나눌 때 수출국으로는 러시아(露西亞), 핀란드(芬蘭), 스웨덴(瑞國), 노르웨이(那威)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奧匈國) 등이 주된 나라이요, 수입국으로는 영국(英吉利), 독일(獨逸), 프랑스(佛蘭西), 이탈리아(伊太利), 네덜란드(和蘭), 스웨덴, 덴마크(丁抹) 및 스페인(西班牙) 등인 바 그 중 독일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유수의 삼림국이지만 일찍이 화학공예(化學工藝)의 진보로 자국 생산만으로는 부족하여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터라. 우리 일본은 다행히 목재의 수출국이나, 한편으로는 목재 변형품의 수입국이요, 우리 조선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아직도 목재의 수입국이라. 통계에 의한즉 수이출(輸移出)이 무려 15만 8,000여 원이요, 이수입(移輸入)은 무려 171만여 원을 계상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하여 십여 배가 되니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수출입의 균형을 얻는 일이 가장 절실하나, 오히려 일보를 나아가 수출국이 되면 재정경제상에 호영향(好影響)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리로다. 원래 조선은 삼림원야(森林原野)에 풍부하고 삼림경영의 여지가 충분히 있으되 아직도 철도용재, 목건축용재, 기타 공업용재 등을 타지로부터 공급 받음은 심히 유감의 상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삼림이 공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하나로 하여 지방에 임업 노동 및 임산공업노동의 기회를 주어 지방인구의 지지, 증식에 투자하는 일이 심대한 바, 지금 사회문명은 일반에게 인구를 도회에 집중하게 하는 추세이니, 즉 지방의 강건한 국민이 감소하고 도회의 화려한 생활을 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경제상에 가볍게 간과하지 못할 일이라. 그 유래하는 바를 탐구하여 보건대, 대개 일반에게 사회의 진보와 함께 생활비가 증가됨에 비하여 지방에는 십분 노동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되어 이를 지방 인민은 지방에서 생활상의 고통을 피하여 도회로 나가 직업을 얻어 안전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회는 이를 다수에게 행복을 일일이 주지 못하므로 그 중에 극소수가 성공하고 대부분은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하여 필경 불건전한 국민이 됨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 만약 지방 도처의 황폐한 산야에 임업을 하게 하며, 그 지방 주민에게 상당한 직업을 주어 그 생활을 안전하게 하면 이 추세를 가히 저지하는 일이 될 터이오.

다음으로, 사공경제상(私公經濟上)의 관계는 공경제와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례를 들면, 즉 목재, 신탄 등의 풍부함과 염가공급은 일반 인민의 사경제상 양호한 결과를 주고 또 나라, 도, 부, 군, 면, 기타 공공단체의 임업경영에 따른 수입의 증가는 그 재정을 통하여 인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업 및 임업관계의 노동 증가에 의하여 인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각종 방면에서 임업이 발달하는 것은 다대한 이익을 사경제에 미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 임업을 공업의 하나로 볼 때는 농업공업에 비하여 수입 정도가 큰 것은 누구든지 부인함이 불가능한 사실이니, 즉 예로부터 임업경영에 의하여 생산을 흥한 자는 무수히 많은데, 이에 의하여 생산을 잃은 자는 미증유한 일이오, 때로 혹 실패자가 있다고 하나, 이는 임업에 의하여 수입의 증가에 반하여 임업 외의 사업, 예컨대, 광산 혹은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여 차질을 빚은 자이오, 순수한 임업경영자 중에서 실패자가 나온 예는 없으며, 다만 농업에 비하여 불리한 점은 그 수확기에 이르는 데 장기간을 요하는 일

이라. 그러나 임업은 토지의 자연적 생산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즉 묘목을 산지에 심은 후 다소의 수입을 들일 뿐으로 성장하여 자연히 수확기에 이르는 것이요, 또 농업에 부적당한 척박한 토지에도 완전히 임업을 경영할 수 있으니 임업은 국토의 대부분을 최대로 이용하며, 또 자연력을 최대로 이용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도다.

또 삼림은 일국의 성쇠흥망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저 유명한 바빌론(巴比崙)의 옥조영화(玉朝榮華)는 삼림과 함께 멸망하고 북아프리카(北亞弗利加)의 사막은 일찍이 강국이 존재하던 곳으로 되 삼림의 폐멸에 따라 사막으로 변하였도다. 한번 보건대 조선을 여행할 때는 각 부락에 일람(一覽)을 부여할 뿐으로 그 빈부의 정도와 생활 상태를 알게 되나니, 즉 부락의 모든 면 또는 그 부근에 울창한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은 묻지 않아도 부자(富者)의 존재를 반영하여 생활의 풍족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반대로 빈자(貧者)의 부락으로 보아도 감히 오류가 없을 지로다. 민둥산이 많은 것과 비상(非常)하게 광대한 황야를 가진 것은 그 지방의 명예가 되지 아니할뿐더러 삼림의 효익(効益)을 얻음에 위태하므로 국운(國運) 또는 지방의 상황에 악영향을 받아 비참한 역사를 가진 바 되었도다. 대영웅 나폴레옹(拿巴崙翁)과 같은 자도 병마로 인해 생을 마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국운의 신장과 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삼림의 보호와 그 구역 증가가 급선무라는 것을 주창하여 애쓴 것은 이 때문이로다.

삼림이 사회에 미치는 이익은 이상 진술한 바 외에 각종 방면에서 직접과 간접을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에 위대한 효과를 줌으로써 각 문명국은 다투어 그 산림원야를 정리하고 완전한 삼림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입도록 노력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국가사회에 위대한 효과를 주는 삼림의 경영, 즉 임업이라 하는 것은 그 원래의 성질로 보건대 공공단체의 경영에 적합한 것이라. 지금 그 이유를 서술하건대,

1. 삼림은 재산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한 것이오. 그 원자(元資)의 확고부동함으로 용이하게 이를 □에 운반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함.
2. 그 재산은 융통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사회, 경제의 풍조에 따라 이의 이용 방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려움.
3. 임업은 그 관리가 다른 생산업에 비하여 용이함.
4. 매년 균일하고 또 인위적으로 용이하게 증감하기 어려운 일정한 수입을 얻음.
5. 그 자본으로 하여 조림(造林)은 자기의 국유성(國有性)에 의하여 그 이자될 만한 성장량을 항상 원본에 더하는 것으로 거의 두 손을 마주잡고 다액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음.

6. 영구히 보호작업은 삼림 간접의 효용을 일층 크게 함.
7. 그 경학(經學)으로써 임업에 관련되는 각종의 노동 또는 부업에 의하여 지방에 수입을 창출하며, 혹은 자가용 신탄, 하초, 기타의 부산물을 부여하는 등 항상 지방 경제에 기쁨을 주어 사회정책상의 효과를 높임.

등은 임업의 그 특성상 법인, 또는 단체의 경제에 적당한 것을 예증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임업은 다른 생산업과 달리 그 수확기가 길고 자본의 회수가 서서히 돌아옴으로써 이의 경영에는 다액의 자본과 불요불굴의 지구적 노력을 요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삼림은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나에게 직접으로 그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 외에 간접으로 나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는 효능, 즉 무형의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의 경영은 항상 공이익을 도모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후속작업은 완전히 영구무한으로 동업을 계속할 것이 된즉, 이로써 국도, 부, 군, 면, 기타 법인 또는 공공단체와 같이 무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경영에 필적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조선에서 고래(古來) 삼림, 원야가 많은 곳은 그 사용수익을 거의 공동으로 하여 그 소재지 원경민은 흡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산물의 사용수익을 자유롭게 처분하여 왔으므로 심한 경우에는 온전히 그 산야에 의지하여 생활한 관념이 있어 이러한 인습이 오래되었으므로 쉽게 그 폐해를 개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단속 여하는 그 토지 원주민의 이해휴척(利害休戚)⁹⁾에 관한 것이 자못 크도다. 그러한즉 사회, 경제의 진운(進運)은 국토의 대부분을 점유한 산야를 이와 같이 막연히 비생산적으로 방임하는 것을 불허한즉, 적당한 방책으로써 일국, 일지방의 부력을 증진하여 민도의 향상에 투자하지 아니하면 불가한 일이라. 지금 조선에서 임야의 현상을 보면, 전 국토 면적 약 2,200만 정보 중 임야는 약 1,600만 정보로 전 지적(地積)에 대하여 무려 7할 3보(步)를 점하여 세계에 드문 부림국(富林國)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산림정책의 불비와 금령(禁令)의 불급(不及)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은 황폐해지고 척림지(戚林地) 또는 진생(陳生) 및 산생지(散生地)는 겨우 3할 500만여 정보에 불과하여 민동산 황야가 도처에 기복(起伏)하여 눈 가득히 황량함이 지극하고 따라서 산업의 발달을 방해하여 국토의 보안을 해하고 재화(災禍)가 해마다 심하여 이의 복구개선책을 마련함은 초미의 급무라 말할지라. 이에 총독부는 법령을 반포하고 임야 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일반 산야의 보호정리와 증식을 촉구하여 크게 식림장려의 방법을 강구하며, 혹은 보안림(保安林)의 제도를 만들어 벌채개간(伐採開墾), 혹은 방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며, 혹은 다시 세계에 유례가 없는 특전

9) 이로움과 해로움, 편안함과 근심을 뜻함.

(特典)된 국유임야를 대부하여 그 조림 성공자에게 이를 무상 양여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등 백방으로 임업을 장려한 결과, 점차 식림열의 발흥을 초래하여 대자본가, 각종 법인단체나 개인 등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아 조림을 시행하는 자가 속출함에 이르렀다. 우리 조선귀족 간에도 전술한 현상에 비추어 임업조합을 조직하고 보식원이라 칭하여 국유임야의 대부를 받아서 합리적인 임업경영을 행하니 이로써 그 기초를 공고케 함이요, 이로써 그 경영을 통하여 사소하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공하고자 함이 있음은 실로 시세에 필적한 수요(須要)의 계획이라 할지로다.

원래 보식원은 그 시작이 총독 각하의 권장에 의한 것이요, 그 사업의 성질은 누누이 설명함과 같이 사회의 공리공익에 영향을 주며, 장래 유망한 사업이 되는 것과 투자의 안전한 것 등에 의하여 점차 개전의 기운을 더하고 지금은 이왕직(李王職) 및 양 공가(公家)를 위시하여 조선귀족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기타 다시 명망가 및 유지가의 찬성, 가입이 있음으로써 그 기초가 더욱 공고해져 사업의 현전(現展)을 기대할 만한 것이 됨에 경하 드리는 바로다.

요컨대 임업은 그 경영자 자신에게 이익이 됨은 물론이요, 그 수리(收利)가 털끝만큼이라도 해 되는 일이 없고, 직간접으로 국가와 사회에 다대한 효익을 부여하는 것인즉, 사회, 경제상에 특히 유익한 사업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귀족사업조합 보식원에서 특히 임업경영을 기도함과 그 전도가 유망하여 더욱 발전함을 흔행(欣幸)하며, 또 그 주주 일반이 합력, 분투하여 시근종태(始勤終怠)¹⁰⁾하여 공휴일궤(功虧一簣)¹¹⁾의 탄식이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장래의 광영이 있을 성공을 기원하는 바로다.

〈출전 : 男爵 韓昌洙, 森林效用과 普植園, 『毎日申報』, 1916년 10월 1일〉

10) 처음에는 부지런히 하나 나중에는 게으름을 이르는 말.

11) 쌓는 공도 최후의 한 삼태기 흙을 놓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거의 성취한 일을 중지함을 이르는 말.

3. 창복회(昌福會)

1) 조선귀족 구제금 사용방도 결정(기사)

- 이자만 따져 쓰기로 되어, 창복회를 조직키로

가난하여 귀족의 체면을 지킬 수 없는 귀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독부에서 250만 원을 내어 놓았다 함은 이미 보도된 바이거니와, 그 구제방법은 조직을 창복회라 하고 귀족 측으로는 박영효(朴泳孝) 씨 이하 다섯 사람이 임명되어 그 기금의 연리 15만 원 중 1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이 말이 아닌 35명의 귀족에 대하여 매월에 100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으로는 학자대금(學者貸金)과 특별교무금으로 사용할 터인데, 학자대금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제를 둔 귀족이 학비의 지변(支辨)¹²⁾이 어려울 때, 매월 얼마씩 대여하였다가 학업을 마친 후에 상환하게 하는 것이며,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관혼상제 등 특별한 때에 임시 교부하는 것이라더라.

〈출전 : 朝鮮貴族救濟金 使用方途 決定, 『東亞日報』, 1929년 12월 1일〉

2) 귀족구제재단 창복회 사무개시(기사)

- 이사장은 고다마(兒玉) 정무총감, 사무간사는 후지나미(藤波) 씨

종래 총독부 당국의 현안이던 조선귀족구제회는 250만 원의 재단으로 창복회를 조직하고 9월 중에 등기되었다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오는 15일부터는 총독부 내 일실을 사무실로 정하고 사무를 취급하게 되었는데, 전무간사로는 이번 대이동에 퇴관한 후지나미 통역관이 임명되었다 하며, 또 동희의 역원은 아래와 같더라.

이사장 고다마(兒玉) 정무총감

이사 박영효(朴泳孝) 후작,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12) 원문에 ‘지판’으로 되어 있으나, 지변의 잘못된 표기인 듯 함. 지변(支辨)은 빚을 갚으려고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내줌을 뜻함.

위원 윤덕영(尹德榮) 자작, 고희경(高羲敬) 백작, 한창수(韓昌洙) 남작
감사 민병석(閔丙奭) 자작

〈출전 : 貴族救濟團 昌福會 事務開始, 『毎日申報』, 1929년 12월 4일〉

3) 전(前) 종로경찰서 청사 창복회에서 대부(貸付) 요청(기사)

- 그러나 허가는 되지 않을 듯, 총독부에선 불허가 방침

북부시가에서 가장 번화한 종로 네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종로경찰서 자리는 한미(韓米)전기회사로, 일한가스(瓦斯)전기회사로, 종로경찰서로, 지금은 경찰서로 이사가고 우중충한 한해(閑骸)를 남겨놓고 있다. 건물은 음침하지만 자리가 요충(要衝)이라 이곳을 소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원래 위치도 좋거니와 면적이 상당히 넓어 시가로 20만 원 상당하는 곳이오, 차용(借用)만 하더라도 가장 적게 쳐도 한 달에 500원 이상은 내어야 될 곳이라 교섭이 되지가 않아 말만 나다가는 파열되고 만다고 한다. 최근에는 귀족구제기관인 창복회에서 대부를 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역시 성립되지 못한 모양이라 한다. 창복회의 목적은 귀족구제기금이 150만 원을 은행에 맡기고 연 5푼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어떤 기관을 창복회 소속으로 조직하여 빈민구제의 사회사업을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는 취지이나 총독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모양이라 한다.

〈출전 : 前鍾路警察署廳舍 昌福會에서 貸付願 『東亞日報』, 1930년 2월 11일〉

4)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 진행상황 보고

1. 9월 28일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 허가함. (별지 기부행위 참조)
2. 임원 및 직원의 임명
현재 임원 및 직원은 아래와 같음.

이사장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이사	조선 총독부 내무국장	이마무라 다케시(今村武志)
이사	조선 총독부 재무국장	하야시 시게조(林繁藏)
이사	후작	박영효
감사	자작	민병석
위원	백작	고희경
위원	자작	윤덕영
위원	남작	한창수
간사	—	다카타케 히미요시(高武公美)
간사	—	가미오 카츠하루(神尾弌春)
간사	—	후지나미 요시즈라(藤波義貫)
총탁	—	다나카 겐타로(田中健太郎)

3. 10월 10일 등기 사무 완료함.
4. 설립 아래 임원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전 번까지 네 번이며, 협의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 (1) 192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정 (별지 참조)
 - (2) 1929년도 경비충당을 위해 3만 5,000엔 기채(起債) 건
 - (3) 처무세칙설정 (별지 참조)
 - (4) 교부금 지급자 및 지급액 결정 (별지 참조)
5. 11월 29일 본부(本府)에서 기금 250만 엔을 교부받아 예금은행을 조선은행(朝鮮銀行),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產銀行),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및 한성은행(漢城銀行)으로 결정하여 각각 분할 예입함.
6. 11월 30일부로 이사장으로부터 각 관계귀족에 대해 12월부터 사업개시의 취지를 통지함.
7. 12월 2일 본년도 경비에 충당할 3만5천 엔을 조선은행에서 차입하는 계약을 완료함.
8. 위에 근거하여 12월분 교부금 지급은 다음 10일경으로 예상하고 현재 준비 중.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5) 교부금 지급의 건

1930년 1월 28일

재단법인 창복회 이사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조선 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전(殿)

교부금 지급 건

본회 기부행위 제4조에 의해 1월분 교부금 본월 22일 별지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보고함.

조선귀족 명부

1929년 12월 조사

주소	훈등급	작	이름	1월분 교부금
경성부 승인동 81	정3위 훈1등(瑞)	후작	박영효(朴泳孝)	
경성부 관철동 62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250
경성부 간동(諫洞) 97	종3위 훈1등(旭)	후작	윤택영(尹澤榮)	
경성부 사직동 262	종3위	후작	이해창(李海昌)	250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홍제외리 201	종3위	후작	이해승(李海昇)	
경성부 가회동 30	종4위 훈3등(旭)	후작	이달용(李達鎔)	
경성부 옥인동 19	종5위	후작	이병길(李丙吉)	
경성부 원남동(苑南洞) 9-2호	—	백작	이영주(李永柱)	200
東京府芝区白金三光町 251	종3위 훈1등(瑞)	백작	고희경(高義敬)	
		백작	송종현(宋鍾憲)	
경성부 경운동 89	정3위 훈1등(桐)	자작	민병석(閔丙奭)	
경성부 옥인동 47	정5위 훈1등(旭)	자작	윤덕영(尹德榮)	
경성부 합동(蛤洞) 27	정5위	자작	이규원(李圭元)	170
경성부 옥인동 2	종3위 훈1등(瑞)	자작	조민희(趙民熙)	170
경성부 인사동 198	종3위	자작	민영휘(閔泳徽)	
경성부 통의동 21	정4위 훈1등(旭)	자작	권중현(權重顯)	
경성부 종로 6-12	정4위 훈1등(旭)	자작	이재곤(李載崑)	
경성부 제동 84-2	정4위	자작	이완용(李完鎔)	170
경성부 정동 18	종4위	자작	이기용(李基鎔)	170
경성부 송현동 48-1	종4위	자작	민충식(閔忠植)	170

경성부 안국동 64	정5위	자작	조대호(趙大鎬)	170
경성부 입정정(笠井町) 272	정5위	자작	이창훈(李昌薰)	
강원도 원주군 건등면 문막리(文幕里)	정5위	자작	이충세(李忠世)	170
경성부 필운동 278	정5위	자작	이홍묵(李鴻默)	
충청남도 천안군 수신면 동창리 212	정5위	자작	임선재(任宣宰)	170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상리(東幕上里) 277	종5위	자작	민병삼(閔丙三)	170
경성부 무교정 11	종5위	자작	박부양(朴富陽)	170
경성부 인사동 192		자작	김호규(金虎圭)	
경성부 가회동 16	정4위 훈1등(瑞)	남작	한창수(韓昌洙)	
경성부 통동 31	정4위 훈2등(旭)	남작	민상호(閔商鎬)	
경성부 가회동 8	정4위 훈1등(桐)	남작	이윤용(李允用)	
경성부 숭인동 61-14	정4위	남작	김종한(金宗漢)	150 할증 50
경성부 수하동 31	정4위	남작	김사철(金思轍)	
경성부 경운동 89	정4위	남작	민형식(閔炯植)	150 할증 50
경성부 옥인동 19	종4위 훈2등(瑞)	남작	이항구(李恒九)	
경성부 적선동 83	종4위	남작	박기양(朴箕陽)	150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 적루리 86	종4위	남작	이원호(李原鎬)	150
경성부 홍파동 129	정5위	남작	조동희(趙同熙)	150
경성부 관철동 142	정5위	남작	이종건(李鍾健)	
경성부 창신동 96-2	정5위 훈2등(瑞)	남작	이규환(李圭桓)	150
경성부 통의동 107	정5위	남작	남장희(南章熙)	150
경성부 근농동 45	정5위	남작	정천모(鄭天謨)	150
경성부 삼청동 120	정5위	남작	김덕한(金德漢)	150
경상북도 김천군 석현면 작만리 775	정5위	남작	이완종(李完鍾)	150
경기도 포천군 주내면 재의리 266	정5위 훈5등(瑞)	남작	박서양(朴敍陽)	
경성부 마포동 15	정5위 훈6등(瑞)	남작	장인원(張寅源)	150
경성부 숭인동 22-1	정5위	남작	이능세(李能世)	150
경성부 입정정(笠井町) 150	정5위	남작	김영수(金英洙)	150
경성부 효자동 69	정5위	남작	김교신(金敎莘)	
경성부 황금정 2-65	정5위	남작	이동훈(李東薰)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510	정5위	남작	정두화(鄭斗和)	

경성부 충신동 55	정5위	남작	이기원(李起元)	
경성부 누상동 122	정5위	남작	이중환(李重桓)	150
경성부 무교정 80	정5위	남작	성주경(成周絅)	150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동막상리(東幕上里) 283	정5위 훈6등(瑞)	남작	민건식(閔健植)	150
경성부 창신동 91	정5위	남작	박경원(朴經遠)	150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소정리 410	종5위	남작	민규현(閔奎鉉)	150
경성부 익선동 18	종5위	남작	최정원(崔正源)	150
경성부 원남동 66	종5위	남작	이인용(李寅鎔)	
경성부 통동 144		남작	조중구(趙重九)	150
경성부 관철동 58		남작	이장훈(李長薰)	

계 5,500엔

조선귀족 이동표

작(爵)	1910년 10월 7일 수작자(授爵者)	그 후의 이동사항	1929년 11월 1일 현재	비고
후작	6	증1	7	백작에서 승작한 자 1명 추가
백작	3	증2 감2	3	자작에서 승작한 자 2명 추가. 후작으로 승작한 자 1명, 실형으로 인해 실작한 자 1명 감소
자작	22	증1 감4	18	백작으로 승작한 자 2명. 형에 처해져 작위를 잃은 자 2명 감소
남작	45	증1 감13	33	신 수작자 1명 추가. 작위를 반납한 자 7명, 반환을 명받은 자 1명, 실형 2명, 사자(嗣子) 습작자 3명 감소
계	76	—	61	—

참고>

- 백작에서 후작으로 승작자 : 이완용
-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작자 : 송병준, 고희경
- 새로이 작위를 수여받은 자 : 남작 이항구
- 작위를 반납한 자 : 남작 이용구, 남작 홍순형, 남작 한규설, 남작 유길준, 남작 민영달, 남작 조경호, 남작 조희연

- 작위 반납을 명받은 자 : 남작 조정구
- 실형으로 인한 실작자 : 백작 민영린, 자작 이용식, 자작 김윤식, 남작 윤치호, 남작 김사준
- 귀족 사자(嗣子)로서 작위를 습작한 자 : 남작 김석진, 남작 김병익, 남작 김가진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6)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1929년 12월 3일

재단법인 창복회 이사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조선총독 자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전(殿)

재단법인 창복회 사무상황 보고의 건

최근 조선귀족 구제를 위한 재단법인 창복회 설립을 위해 다음의 내용과 같은 본회의 사무의 진행상황을 별지에 붙이니 참고하길 바라며 보고함.

재단법인 창복회 기부행위

제1장 명칭 및 사무소

제1조 본 법인은 이를 재단법인 창복회라 칭하고 그 사무소를 경성부 광화문통 1번지 조선 총독부 내에 둔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 본 법인은 조선귀족의 가정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기부행위에 있어서의 조선귀족이란 조선귀족령에 의해 작위를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조선귀족으로서 가산정리 및 혹은 자제교육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저리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제4조 조선귀족으로서 그 가계가 궁핍한 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급여한다.

전 항의 교부금 급여의 필요 여부 및 그 금액은 해당 귀족의 가계를 조사하고 결정한다.

제5조 조선귀족으로서 화재, 질병, 사망 등의 원인으로 지출이 필요해 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급여하도록 한다.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6조 본 법의 자산은 조선 총독부의 출자에 의한 기금 및 이것에서 생성된 이자, 그리고 그 이외의 수입으로 한다. 전 항의 자산 중 기금은 소비할 수가 없다.

제7조 기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관리한다.

1. 우편 저축 혹은 조선 총독이 지정한 은행, 또는 신탁회사의 예금 또는 신탁
2. 공채의 응모 또는 매입
3. 조선 총독부가 인가한 유가증권의 응모 또는 매입

제8조 조선귀족에 대한 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대부금, 그리고 일반경비는 본 법인의 기금으로부터 생긴 이자 및 그 외의 수입을 가지고 이를 충당한다.

제9조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년 이것을 조정한다.

결산은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조정한다.

제11조 매년도 지출에 대해 수입 잉여가 생길 경우에는 따로 적립해두는 것으로 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제12조 앞 조항의 적립금은 필요할 경우에는 세입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3조 본 법인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이사 3명 이상 5명 이내

감사 한명

위원 5명 이내

이사 중 한 명을 이사장으로 하고 조선 총독부 총감의 직에 있는 자를 이에 충당한다.

이사장 이외의 이사, 감사 및 위원은 조선 총독이 이를 임면한다.

제14조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사무를 대신한다.

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5조 본 법인의 사무에 종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간사 및 서기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5장 회의

제16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의사는 따로 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의 가부를 정하고 동수의 경우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보칙

제19조 본 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잉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재단법인 창복회 1929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세입〉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차입금	-	35,000	본 연도는 기금이자수입이 없어서 기금을 예입한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린다.
잡수입	-	10	예금이자 및 타 수입
-	-	-	-
합계	-	35,010	-

〈세출〉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사무비	—	880	비품비 100엔 소모품비 125엔 통신운반비 125엔 잡비 30엔 제 급여 500엔
회의비	—	450	회의용 제 잡비
교부금	—	31,230	기부행위 제4조 보통교부금 29,300엔 기부행위 제5조 특별교부금 2,000엔
예비비	—	2,450	
합계	—	35,010	

— 참고 —

재단법인 창복회 1930년도 세입 세출 개산(概算)

〈세입〉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기금수입	—	177,000	기금 2,500,000엔에 대한 연 5분, 17개월분
잡수입	—	200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전년도이월	—	500	—
합계	—	177,700	—

〈세출〉

관(款)	항(項)	금액(金額)(엔)	부기(附記)
사무비	—	2,400	비품비 240엔 소모품비 300엔 통신운반비 300엔 제 잡비 60엔 제 급여 1,500엔
회의비	—	1,000	회의 제 잡비
교부금	—	80,150	기부행위 제4조 보통교부금 70,150엔 기부행위 제5조 특별교부금 10,000엔
대여금	—	50,000	연도 말 대부금의 이자는 익년도 수입

차입금액	—	36,750	원금상환 35,000엔 이자상환 1,750엔 (3,5000엔에 대한 5분1개년도)
예비비	—	7,400	—
합계	—	177,700	—

재단법인 창복회 처무세칙(處務細則)

제1장 총칙

제1조 조선귀족으로서 조선귀족령에 의해 그 예우가 정지 혹은 금지된 자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급여 및 대부를 하지 않는다. 단 조선귀족령 제8조의 신체 혹은 정신에 중환이 있거나 재산상의 사유로 인해 귀족의 체면에 관한 사고로 인해 예우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한다.

제2장 교부금

제2조 자금의 사용용도는 가산 정리 및 자제의 교육에 필요한 자금에 한한다.

제3조 교육자금 대부금은 무이자로 한다.

가산정리자금대부금의 이율은 연5분 이내로 한다. 단 1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을 실시한다.

제4조 대부기간 및 대부금액은 신청자의 실정을 조사하여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단 대부금액은 아래의 제한을 초과할 수가 없다.

1. 가산정리자금 5천 원 이내
2. 교육자금 학생 1인당 1개월 50원 이내

제5조 자금대부는 무담보로 하며 적당한 연대보증인 2인 이상을 세운다.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 전이라 하여도 대부금을 회수한다.

1. 이자 및 원금을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2. 다른 채무에 차압이나 가처분 혹은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한다든가 사용한 경우
4. 조선귀족의 예우가 정지 혹은 금지된 경우

제7조 교부금의 변제(辨濟)방법은 아래의 세 종류이다.

1. 일시변제 : 기일을 정하고 한 번에 변제하는 것
2. 월부변제 : 매월 일정 혹은 매일 일정의 금액을 분할 변제하는 것
3. 특별변제 : 대부를 받는 자의 사정에 의해 특별변제 방법에 의한 것

제8조 자금대부 후 재단법인은 수시로 대부자금의 운용 및 사업실시 혹은 학업성적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제3장 교부금

제9조 교부금의 지급액은 아래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자문을 구해 매월 이를 결정한다. 단, 60세 이상인 자에 한해서는 지급액의 3할을 증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0원 미만의 소수점은 사사오입한다.

후작	월액	300원 이내
백작	월액	250원 이내
자작	월액	200원 이내
남작	월액	150원 이내

제10조 교부금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특별한 사정에 의해 수령자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는 미리 본인으로부터 그 취지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부금을 받는 자로서 교부금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교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도 있다.

제12조 특별교부금의 지급액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에 의해 결정한다.

(1929년 11월 21일 결정)

조선귀족 명부

1929년 11월 1일 현재(동 작위의 서열은 위(位)로 구분한다)

관직	위훈(位勳)	작	이름
중추원부의장	정3위 훈1등(瑞)	후작	박영효(朴泳孝)
육군소장예우	종3위 훈1등(桐)	후작	이재각(李載覺)

—	종3위 훈1등(旭)	후작	윤택영(尹澤榮)
—	종3위	후작	이해창(李海昌)
—	종3위	후작	이해승(李海昇)
—	종4위 훈3등(旭)	후작	이달용(李達鎔)
—	종5위	후작	이병길(李丙吉)
중추원고문	종3위 훈1등(瑞)	백작	고희경(高羲敬)
동 참의(秦待)	종4위	백작	송종현(宋鐘憲)
—	—	백작	이영주(李永柱)
동 고문	정3위 훈1등(桐)	자작	민병석(閔丙奭)
중추원고문	정3위 훈1등(旭)	자작	윤덕영(尹德榮)
예우 정지	종3위 훈1등(瑞)	자작	조민희(趙民熙)
	종3위	자작	민영휘(閔泳徽)
중추원고문	정4위 훈1등(旭)	자작	권중현(權重顯)
—	정4위 훈1등(旭)	자작	이재곤(李載崑)
—	정4위	자작	이완용(李完鎔)
—	종4위	자작	이기용(李基鎔)
—	종4위	자작	민충식(閔忠植)
육군보병소위	종4위	자작	조대호(趙大鎬)
—	종4위	자작	이창훈(李昌薰)
—	정5위	자작	이규원(李圭元)
—	정5위	자작	이충세(李忠世)
—	정5위	자작	이홍묵(李鴻默)
—	정5위	자작	임선재(任宣宰)
—	정5위	자작	민병삼(閔丙三)
—	종5위	자작	박부양(朴富陽)
—	—	자작	김호규(金虎圭)
이왕직장관(고등관1등)	정4위 훈1등(瑞)	남작	한창수(韓昌洙)
중추원 참의(勅使)	정4위 훈1등(旭)	남작	민상호(閔商鎬)
중추원고문	정4위 훈1등(桐)	남작	이윤용(李允用)
—	정4위	남작	김종한(金宗漢)
—	정4위	남작	김사철(金思轍)
—	정4위	남작	민형식(閔炯植)
이왕직사무관(고등관1등)	정4위 훈2등(瑞)	남작	이항구(李恒九)
중추원 참의(勅使)	종4위	남작	박기양(朴箕陽)
—	종4위	남작	이원호(李原鎬)
—	종4위 훈2등(瑞)	남작	이규환(李圭桓)

—	종4위	남작	남장희(南章熙)
—	종4위	남작	김덕한(金德漢)
—	종4위	남작	정천모(鄭天謨)
—	정5위	남작	이완종(李完鍾)
예우 정지	정5위	남작	조동희(趙同熙)
—	정5위	남작	이종건(李鍾健)
—	정5위 훈5등	남작	박서양(朴敍陽)
—	정5위 훈6등	남작	장인원(張寅源)
—	정5위	남작	이능세(李能世)
—	정5위	남작	김영수(金英洙)
—	정5위	남작	김교신(金敍莘)
—	정5위	남작	이동훈(李東薰)
—	정5위	남작	정두화(鄭斗和)
—	정5위	남작	이기원(李起元)
—	정5위	남작	이중환(李重桓)
—	정5위	남작	성주경(成周綱)
중추원 참의(秦待)	정5위 훈6등(瑞)	남작	민건식(閔健植)
—	정5위	남작	박경원(朴經遠)
—	정5위	남작	최정원(崔正源)
—	종5위	남작	민규현(閔奎鉉)
—	종5위	남작	이인용(李寅鎔)
—	종5위	남작	조중구(趙重九)
—	—	남작	이장훈(李長薰)

〈출전 : 昌福會關係書類 중에서, 『齋藤實文書』 100-7-853〉

7) 귀족보호자금으로 궁민구제설 대두(기사)

- 2백 5십만 원의 거액으로, 귀족보호보다 궁민구제필요 타고, 각 방면
여론 구체화

조선의 귀족들을 구제하는 기관으로 1929년 당시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시대에

국채(國債) 250여 만 원의 빚을 얻어 창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하고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등 67명의 귀족 중 생활이 곤란한 40여 명에 대하여 매월 그 작위별(爵位別)로 후작에 300원, 백작에 250원, 자작에 200원, 남작에 150원씩의 생활을 보조하여 오던 것인데, 최근 총독부 당국은 기보한 바와 같이 부채정리(負債整理), 적자보전(赤子補填)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바 귀족자금으로서 그 부채가 250여 만 원, 그에 대한 연이자(年利子)도 물론 적지 않아 총독부에서는 이 자금으로서 차라리 농촌세민의 구제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설이 대두(擡頭)하게 되었다.

〈출전 : 貴族保護資金으로 窮民救濟說 擡頭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1일〉

8) 보호받는 까닭에 도리어 나태생활(기사)

- 창복회 폐쇄설 유력, ‘비난의 표적’이라 하여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총독부의 부채 총액은 4억 3,000여 만 원 중 귀족구제자금 250여 만 원도 재정난의 이때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29년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당시에는 귀족구제의 필요를 인정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현하 대세에 비추어 그 귀족구제란 필요하다기보다 오히려 오용(誤用)함을 느끼게 하고 소위 구제받는 귀족들은 그 돈만 믿고 일하는 것도 없이 나태한 유한계급(有閑階級)으로서 그 구제의 본의가 없어 그 구제는 바야흐로 비난의 표적이 되어 있으므로 그 구제의 폐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출전 : 保護받는 까닭에 도리어 懶怠生活,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1일〉

9) 창복회 폐쇄설(시평)

조선귀족의 구제기관으로 1929년 이케가미(池上) 정무총감 당시에 창복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총 자금 250만 원을 국고에서 차입하여 빈궁에 빠진 약 40명의 조선귀족에게 생활비를 급여해 왔는데, 현재 4억 3,000여 만 원의 거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 총독부의 재정 상태는 그 부채정리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어 이 자금을 차라리 세농구제(細農救

濟)¹³⁾ 저리용통자금에 전용하자는 의견이 당국자 간에 대두하는 것 같다.

조선귀족이란 합병 때 그들의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작록(爵錄)의 후은을 받아 특수한 지위를 보전하고 있으나 세습재산제와 같은 보장이 없는 까닭으로 그들의 생활도 일반사회의 추세에 따라 상당한 도태를 당한 결과, 현재 귀족의 2/3나 되는 40명이 구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공로를 생각하고 그들의 지위를 돌아볼 때에 감개 깊은 이 케가미 전 정무총감은 차마 그대로 방기할 수 없어 조직해 놓은 창복회가 오늘날에 존폐의 문제에 이르렀다는 것은 피구제자인 귀족들이야 그들의 사활문제니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케가미 씨로서도 상심됨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해타산에 밝은 정책 문제에 들어서는 그들의 구제가 애초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하물며 현재와 같은 재정난으로서 가당키나 한 것이라.

사회정책이란 원래 계급적 불평을 완화하는 일시의 수단이지만 이 귀족구제는 이 점으로도 신통치 못한 것이니, 다만 어떠한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봉건사상을 이용함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이만한 사상적 영향을 주는 데도 문제 되지 않는다. 그들을 구제한다는 결과가 오직 그들의 나타(懶惰)한 의뢰심을 조성시켜 생활력을 감퇴시킬 뿐이다. 그들 자신에게도 유해무익한 일이다. 창복회 폐쇄설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든지 간에 사실 자체는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기억하는 바로는 세농구제 저리용통안도 귀족구제안과 선후하여 성립된 것이나 이들을 비기어 정책의 경중은 어떠하며 실제의 효과는 어떠할까. 세농구제의 효과란 오늘에 족히 들 바가 없으니 문제가 너무 크고 넓어서 귀족구제와 같은 효과를 못 낸 것인가. 귀족구제자금을 세농구제자금으로 전용(轉用)하기에만 그쳐서는 재정 정리상 일조(一助)가 될지 모르겠으나 종래의 성적을 미루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실로 의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귀족구제의 무의미함을 당국으로서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오늘날의 재정상 현상이 앞으로 다른 사회정책 사업까지도 축소시키고야말 형세를 간취(看取)¹⁴⁾하게 되는 것이다. 연래 경제공황이 심각해짐을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회정책을 요구함이 절실히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해진 것을 알게 된다.

〈출전 : (時評)昌福會閉鎖說, 『朝鮮中央日報』, 1933년 11월 2일〉

13) 세농(細農)은 매우 가난한 농가, 혹은 소규모 영세농을 뜻함.

14) 보아서 내용을 알아차림.